主要國의 金融그룹現況과 政策的 示唆點*

韓國租稅硏究院

---

*본고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 및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금년중 작성예정)의 기초자료로 준비된 것이며, 집필자의 개인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둠.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 1

Ⅱ. 金融專業企業그룹에 대한 一般的 考察 ····· 6

1.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定義 ····· 6
2. 金融그룹 形成의 背景 ····· 7
3. 金融그룹의 組織形態 ····· 10
   가. 完全結合 ····· 10
   나. 子會社의 設立 ····· 11
   다. 持株會社의 設立 ····· 11
   라. 關係會社의 形成 ····· 12
   마. 合作會社의 設立 ····· 12
   바. 공동판매협정 ····· 12
4. 金融그룹의 長點 ····· 13
   가. 規模 및 範圍의 經濟 實現 ····· 13
   나. 金融機關間 競爭促進 ····· 15
   다. 業務多角化에 따른 危險分散 ····· 15
5. 金融그룹의 문제점 ····· 16
   가. 競爭力集中 深化 ····· 16
   나. 利害相衝 ····· 17
   다. 그룹 關係會社들간의 危險傳播 ····· 18
   라. 組織의 肥大化에 經營統制 弱化 ····· 19
   마. 監督上의 어려움 加重 ····· 20

Ⅲ. 美國의 金融資本 現況 ····· 21

1. 槪觀 ····· 21
2. 金融機關間의結合 ····· 22
3. 銀行과 大企業間의 結合 ····· 26
4. 大型 銀行持株會社의 構造 ····· 27
5. 銀行의 經營權 ····· 29
6. 銀行持株會社의 非銀行業務 進出 ····· 30
7. 銀行持株會社의 長點 ····· 33
8. 銀行持株會社 形成이 市場競爭度에 미치는 效果 ····· 34
9. 銀行持株會社 形成이 銀行子會社의 危險度에 미치는 效果 ····· 35

Ⅳ. 日本의 金融資本 現況 ····· 38

1. 金融資本의 形成 ····· 38
2. 都市銀行의 所有構造와 金融機關과의 結合 ····· 40
3. 銀行과 企業間의 結合 ····· 42
4. 銀行資本과 産業資本의 具體的 結合形態 ····· 43
   가. 株式所有 ····· 43
   나. 銀行融資 ····· 44
   다. 人的結合 ····· 49
5. 銀行의 非銀行業務 進出 ····· 50

Ⅴ. 獨逸 兼業銀行의 經營 ····· 56

1. Universal Banking 現況 ····· 56
2. 3大銀行의 經營 ····· 61
   가. 株主構成 ····· 61
   나. 意思決定機構 ····· 62
   다. 業務多角化 ····· 63
   라. 銀行과 企業間의 關係 ····· 65

Ⅵ. 英國 主要銀行의 經營 ····· 68

1. 英國의 兼業銀行現況 ····· 68
2. 英國 4大銀行의 經營 ····· 73
   가. 株主構成 ····· 74
   나. 意思決定機構 ····· 76
   다. 業務多角化 ····· 77
   라. 銀行과 企業間의 關係 ····· 78

Ⅶ. 金融專業企業그룹 育成에 관한 政策的 示唆點 ····· 81

1. 金融專業企業그룹 育成의 必要性 ····· 81
2.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導入方向에 대한 示唆點 ····· 84
3. 金融專業企業그룹 所屬銀行의 同一人 所有持分限度 ····· 89
4. 金融專業企業그룹所屬 非銀行子會社의 逐行可能業務 ····· 93
5. 金融專業企業그룹 形成時 豫想되는 問題點과 對策方向 ····· 98

〈參考文獻〉 ····· 101

〈附　　錄〉 ····· 104

表 目 次

〈表 Ⅰ- 1〉 主要國의 世界 100大 및 500大 銀行 現況 ····· 1
〈表 Ⅰ- 2〉 銀行規模 國際比較 ····· 2
〈表 Ⅰ- 3〉 韓國과 日本의 銀行 收益性 比較 ····· 2
〈表 Ⅰ- 4〉 銀行 生産性 關聯 指標 比較 ····· 2
〈表 Ⅱ- 1〉 主要國 金融그룹의 遂行可能業務 ····· 8
〈表 Ⅱ- 2〉 銀行産業에서의 規模 및 範圍의 經濟性에 관한 實證分析 結果比較 ····· 14
〈表 Ⅲ- 1〉 銀行持株會社의 比重 推移 ····· 22
〈表 Ⅲ- 2〉 NY 市中銀行의 大株主 構成 ····· 23
〈表 Ⅲ- 3〉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大株主 現況 ····· 24
〈表 Ⅲ- 4〉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및 大株主 比重 ····· 24
〈表 Ⅲ- 5〉 大型銀行·生命保險社間의 直接的·間接的 結合關係 ····· 25
〈表 Ⅲ- 6〉 美國의 主要 大型商業銀行의 理事會 構成 ····· 30
〈表 Ⅲ- 7〉 銀行持株會社에 認可된 非銀行業務 ····· 32
〈表 Ⅲ- 8〉 銀行形態에 따른 倒産比率 比較 ····· 37
〈表 Ⅳ- 1〉 日本 主要 銀行그룹의 株主現況 ····· 41
〈表 Ⅳ- 2〉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 ····· 43
〈表 Ⅳ- 3〉 株式所有關係로 본 金融機關의 企業集團소속 企業에의 依存率 ····· 45
〈表 Ⅳ- 4〉 大企業 및 中小企業의 資金調達 構造 ····· 46
〈表 Ⅳ- 5〉 貸出金 依存率 現況 ····· 47
〈表 Ⅳ- 6〉 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에의 借入金 依存率 推移 ····· 48
〈表 Ⅳ- 7〉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依存率 ····· 49
〈表 Ⅳ- 8〉 日本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 ····· 51
〈表 Ⅳ- 9〉 金融改革法상의 子會社 業務取扱範圍 ····· 52
〈表 Ⅳ-10〉 業種間 FIRE WALLS의 主要內容 ····· 53
〈表 Ⅴ- 1〉 獨逸의 銀行 및 店鋪數 推移 ····· 58
〈表 Ⅴ- 2〉 獨逸의 銀行그룹現況 ····· 59
〈表 Ⅴ- 3〉 獨逸 3代銀行 現況 ····· 61
〈表 Ⅴ- 4〉 獨逸 主要銀行의 理事會 構成 ····· 63
〈表 Ⅴ- 5〉 獨逸의 金融子會社 現況 ····· 64
〈表 Ⅴ- 6〉 3大銀行의 金融綜合化 强化 現況 ····· 65
〈表 Ⅵ- 1〉 Big Bang이후의 英國銀行들의 兼業化 現況 ····· 71
〈表 Ⅵ- 2〉 英國의 金融그룹 現況 ····· 72
〈表 Ⅵ- 3〉 英國의 4代銀行 現況 ····· 73
〈表 Ⅵ- 4〉 英國 4大銀行의 損益 現況 ····· 74
〈表 Ⅵ- 5〉 英國 主要銀行의 所有構造 現況 ····· 75
〈表 Ⅵ- 6〉 主要 英國銀行의 理事會 構成 ····· 76
〈表 Ⅵ- 7〉 英國 主要銀行의 純利子收入 및 非利子收入 推移 ····· 77
〈表 Ⅵ- 8〉 英國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 ····· 80
〈表 Ⅶ- 1〉 銀行産業의 市場集中度 國際比較 ····· 85

〈表 Ⅶ- 2〉 主要國 銀行所有에 관한 規制內容 ····· 92
〈表 Ⅶ- 3〉 國內 主要 金融機關의 子會社 保有 現況 ····· 94
〈表 Ⅶ- 4〉 業種 進出方式 比較 ····· 97

圖 目 次

[圖 Ⅴ- 1] 獨逸의 銀行制度 ····· 57
[圖 Ⅵ- 1] 英國의 銀行制度 ····· 69
[圖 Ⅶ- 1] 主要 證券會社의 資本金 및 大株主 1人 持分率 現況 ····· 86

I. 問題의 提起

- 범세계적인 금융의 自律化·國際化 趨勢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낙후된 金融産業의 競爭力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생각됨.

- 현재 우리 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자산 및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부실채권의 과다보유, 외형위주의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수익기반이 취약하며, 금융기법의 낙후, 신금융상품개발 부진, 전문인력의 양성 미흡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 선진 외국금융기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o 93년 'The Banker'지의 세계 1,000대 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상업은행이 세계에서는 162위에 그치고 있으며, 13개 시중은행의 자산을 합쳐도 세계 23위 은행보다 작은 실정임. 또한 예금은행 중 5대은행의 행당 평균 자본은 일본 5대 은행 평균자본의 1/10.1, 미국 5대 은행자본의 1/4.3에 불과함.

  o 예금규모등 외형위주의 경쟁에 치중하면서 경영합리화·신상품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대금리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음.

- 이처럼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이 능동적으로 해당 금융시장에서의 입지강화를 통한 활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도하에 실물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戰略産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表 I-1〉 主要國의 世界 100大 및 500大 銀行 現況
(資本金 基準)

(單位: 個)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 일	이태리
100대 은행	-	26	12	9	10	9
500대 은행	16	97	77	15	39	38

資料: The Banker 誌 ('93.7)

〈表 I-2〉 銀行規模 國際比較(1990년말)

(單位: 百萬 달러)

	행당 평균자본		행당 평균자산	
	금 액	對한국배수	금 액	對한국배수
한 국	1,656	1	24,941	1
미 국	4,979	3.0	119,394	4.7
서 독	5,821	3.5	175,341	7.0
영 국	7,338	4.4	160,910	6.4
일 본	13,595	8.2	411,302	16.4
프 랑 스	9,428	5.6	253,337	10.1
대 만	801	0.4	23,197	0.9
홍 콩	1,386	0.8	33,263	1.3
싱 가 포 르	1,102	0.6	10,934	0.4

資料: 김종운(1992)

〈表 I-3〉 韓國과 日本의 銀行 收益性 比較

(單位: %)

	한 국(시은)				일 본(도시은)			
	83	85	88	91	83	85	88	91
자기자본 당기순이익율	3.8	3.5	6.1	6.1	11.4	10.4	11.9	4.4*

* 일본의 경우 BIS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자본 증대와 주가하락 및 부실여신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최근에 들어 자기자본 당기순이익율이 크게 하락함.
資料: 한국은행.

〈表 I-4〉 銀行 生産性 關聯 指標 比較 (1991년)

(單位: 百萬원)

	한국(5대 시은)	일본(도시은행)	외은 지점(52개 지점)
직원 1인당 예수금[1]	1,096	11,897	961
직원 1인당 세전이익[2]	9.7	51.2	97.8

註: 1) 원화 및 외화 예수금, 수입부금, CD, 금융채권,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 포함
2) 법인세 차감전 이익
資料: 한국은행, 일본 전국은행협회연합회

ㅇ 금융기관들이 公共性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利潤極大化動機에 입각한 영업활동을 자율적, 효율적으로 영위하는 企業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 정부도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낙후가 자금배분의 非效率性과 자금의 한계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실물부문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自律化措置를 취해 옴.

ㅇ 市中銀行의 民營化, 은행의 인사·예산 등 內部經營의 自律性 提高,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한 각종 規制의 폐지 혹은 완화, 정책금융의 축소 및 통화관리방식의 간접규제로의 전환 모색 등을 추진해 옴.

ㅇ 그러나 대규모의 정책금융 및 은행부실채권의 존재, 통화관리를 위한 창구지도의 존속, 금리 규제, 금융기관의 수용능력 미흡 등 제반여건의 不備로 인해 이들 자율화조치는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1981-83년에 추진된 시중은행의 民營化過程에서 대기업에 의한 시중은행의 私有化를 방지하기 위해 同一人이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8/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민영화된 시중은행들을 주인없는 은행으로 만들어 자율화시대에 상응하는 經營權의 效率的 行使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음.

ㅇ 이들은 소유권의 民間移轉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주식소유의 제한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책임있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은행주식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ㅇ 또한 대기업의 은행지배에 의한 與信偏重現象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監督(여신관리 포함)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租稅나 公正去來審議 등을 통해 大企業의 不公正去來를 규제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大企業이 私利를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은행경영의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적도 없었음을 근거로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반대함.

ㅇ 이들은 株式이 과도하게 分散이 되는 경우 은행 경영자가 株主보다는 자신의 厚生을 극대화하기 위해 危險度가 높은 收益極大化 經營方式보다는 수익은 낮지만 보다 안정적인 경영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장기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곤란하게 하는 代理人 問題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책임경영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오히려 逆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반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이나 금융당국의 경우 대기업에 의한 은행지배로 자금배분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信用制度의 維持와 預金者保護라는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現行 銀行株式 所有制限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ㅇ 株主 1인의 持分限度를 현행 8%수준에서 그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운영될 경우 금융자율화로 支配株主의 經營權 및 人事權에 대한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公共的 性格이 강한 銀行과 私的 利益을 추구하는 大企業들간의 利害가 상충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봄.

  ㅇ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의 존재와 낮은 금리로 인해 아직도 特惠的 性格이 강한 은행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預金保險制度 없이 정부가 은행의 존립을 보증하는 현 상황하에서는 大企業의 經營不實化로 인해 은행이 倒産의 危機에 처하게 되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救濟金融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함.

- 금융기관의 所有構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그 기관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그 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ㅇ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소유집단은 일반적으로 經營의 果實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所有 金融機關의 자금조달과 배분에도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

  ㅇ 우리의 경우 특히 기업에 대한 財産權의 상당부분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所有集中이 富의 偏在以上의 經濟力集中問題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금융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이해상충문제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음.

  ㅇ 銀行 所有制限의 기본목적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은행경영에 과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은행경영이 大株主의 이해를 지나치게 고려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공공성이 저하되거나 은행경영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병·전환을 통한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거나,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문화를 시도하거나, 또는 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생산성 제고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우선 專業主義를 지향해온 우리 금융산업의 경우 業種間 相互進出을 통해 收益源의 多邊化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 각종 금융기관의 고유업무기반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들을 대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각자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전문화하여 固有業務의 基盤을 강화해 나가면서 附隨業務 및 兼營可能業務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규제완화 및 관련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經營者들이 변화하는 金融環境속에서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수익전망을 근거로 수립된 장·단기 전략에 따라 顧客의 需要에 부응하는 다양한 金融商品을 적극적으로 開發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資金을 收益性이 높은 부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責任經營의 姿勢를 견지하는 것임.

-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의 출현은 은행경영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은행소유구조의 변화만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더구나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産業資本의 銀行所有를 허용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성장과정이나 경제력집중의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동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는 금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市中銀行의 寡占株主로 되어 있는 大企業들이 은행경영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4-95년중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권의 효율적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金融專業企業그룹을 육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新경제5個年計劃 金融改革部門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95년중에 금융전업기업군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전업기업군의 경우 소유지분한도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은행·기업·정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美國·日本·獨逸·英國의 金融資本 現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들이 金融專業企業그룹의 형성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함.

II. 金融專業企業그룹에 대한 一般的 考察

1.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定義

- 금융그룹 (financial conglomerates)에 대한 定義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주식소유를 매개로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업들이 동일그룹내의 금융기관(複數 가능) 을 통해 대규모로 다양한 金融業(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음 [Koguchi(1993)].

  ㅇ 금융그룹내의 여러 회사들은 株式의 保有나 경영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공동판매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ㅇ 대부분의 경우 그룹내의 기업이 일부 非金融業務를 영위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

- 主要國의 금융그룹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룹의 구조나 수행업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ㅇ 미국의 금융그룹은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분리(은행의 비금융기업 주식보유금지)와 州間業務規制를 회피하기 위해 大型 銀行持株會社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단일 혹은 複數 銀行子會社가 중심이 되어 주로 은행업이나 이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非銀行業務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ㅇ 일본에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持株會社의 형성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대전후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의 株式相互保有와 人的結合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축적되어 왔음. 대형 都市銀行들의 大株主는 동일 및 다른 기업집단소속 생명보험회사들이며, 非銀行業務에 대한 進出은 엄격히 규제되어 왔으나 93년 4월이후 업종별로 子會社 설립을 통해 증권업, 신탁업에 제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

  ㅇ 독일에서는 19세기의 산업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를 은행들이 직접투자 혹은 신용공여 형태로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4개의 대형은행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대형은행들은 이차대전후 10여개 지역은행으로 분리되었다가 1958년에는 3대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음. 독일은행들은 겸업주의하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기업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함으로써 해당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겸업주의를 지향하지 않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도 이전에 존재하던 異種金融機關들의 法的 區分이 제거되면서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그룹소속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증권관련업무*를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더구나 EC 단일 금융시장의 형성에 대한 기대는 유럽 금융기관들의 통합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증권의 인수·중개, 상호기금(mutual funds)의 판매 및 관리를 포함한 증권투자관리 (portfolio management), 투자자문 및 이와 관련된 市場調査, 市場情報 전달 등

- 主要國 금융그룹은행들의 수행가능업무를 살펴보면, 대체로 신용업무나 금융자문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증권관련업무는 많은 나라에서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업무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 대리인·중개인을 통해서만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II-1> 참조]

○ 금융그룹이 부동산, 운송, 기타 상업업무 등 非金融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소수이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회사를 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2. 金融그룹 形成의 背景

- 代替性이 높은 다양한 金融商品들이 출현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금융수요도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주요 국가나 大企業 借入者들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본시장에 직접 의존하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남.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은행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조합 (product mix)을 개발·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음.

○ 더구나 고객들이 물가상승율의 변화에 따른 실질금리의 변동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낮은 금리의 저축성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高收益을 실현할 수 있는 非銀行 金融機關의 대체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은행들은 이러한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짐.

〈表 Ⅱ-1〉 主要國 金融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遂行可能業務

	지급결제 서비스		기타 신용 업무			증권 관련 업무			금융 자문 업무	기금 운용업무		보험				비 금 융 업 무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주택/ 소비자 금융	팩터링	리싱	보증	증권인수	증권딜링	증권중개		신탁기금	연금기금	인수	내리인	중개	운송	여행사	부동산	기타상업 입무	산업
호 주	B	B	B	B	B	B	B	B	B	B	AFF	AFF	INS	INS	INS	No	AFF	No	No	No
오스트리아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B	B	B	B	B
벨 기 에[1]	B	B	B	B	B	B	B	B/AFF	B/AFF	B	AFF	AFF	INS	INS	INS	AFF	AFF	AFF	AFF	AFF
캐 나 다[2]	B	B	B	B	B	B	AFF	AFF	AFF	B	AFF	B	INS	INS	INS	No	No	B	No(L)	No
덴 마 크	B	B	B	B	B	B	B	B	AFF	B	AFF	AFF	INS	INS	INS	L	L	L	L	L
핀 랜 드	B	B	B	AFF	AFF	B	B	B	B	B	AFF	AFF	INS(L)	INS(L)	INS(L)	AFF	AFF	AFF	AFF	AFF
프 랑 스	B	B	B	B	B	B	B	B	AFF	B	AFF	AFF	INS	INS	INS	AFF	AFF	AFF	AFF	AFF
독 일[3]	B	B	B	B	B	B	B	B	B	B	AFF	B	INS	INS	INS	B	B	B	B	AFF
그 리 스	B	B	B	AFF	AFF	B	AFF	AFF	AFF	L	AFF	No	INS	INS	INS	AFF	No	No	No	No
아일랜드	B	B	B	B	B	B	B	B	AFF	B	B	B	INS(L)	INS(L)	INS(L)	No	No	No	No	No
이 태 리[1]	B	B	B	B	B	B	B	B/AFF	B/AFF	B	AFF	-	INS	INS	INS	No	No	No	L	No
일 본[4]	B	B	B	B	B	B	AFF(L)	AFF(L)	AFF(L)	AFF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룩셈부르크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L	No	No	L	L
네덜란드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No	B	B	B/AFF	L
뉴질랜드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B	B	B	B	B
노르웨이	AFF	AFF	B	B	B	B	AFF	AFF	AFF	AFF	AFF	AFF	INS	INS	INS	No	No	AFF	No	No
포르투갈[1][5]	B	B	B	B	B	B	B	B/AFF	B/AFF	B	B/AFF	AFF	INS	B	INS	AFF	AFF	AFF	AFF	AFF
스 페 인[6]	B	B	B	B	B	B	B	B	B	B	-	AFF	INS	INS	B	AFF	AFF	AFF	AFF	AFF
스 웨 덴	B	B	B	B	B	B	B	B	B	B	AFF	AFF	INS	B	INS	No	No	INS	No	No
스 위 스[7]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B	B	B	B	B
터 어 키[8]	B	B	B	B	AFF	B	B	B	B	B	B	B	INS	B	INS	B	B	AFF	AFF	B
영 국	B	B	B	B	B	B	B	B	B	B	B	B	INS	INS	INS	B	B	B	B	B
미 국[9]	B	B	B	B	B	AFF	AFF(L)	AFF(L)	B	B	B	B	No(L)	No(L)	No(L)	No	AFF	No(L)	No	No

註: 1) 증권딜링 및 증권중개업무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affiliate를 설립해야 함.
2) 은행의 리싱업무는 금융리싱만 허용(카-리싱 제외),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가능,
은행의 보험업무는 계열사 또는 독립 보험업자의 한정된 보험상품을 판매 가능, 기타상업업무는 극히 제한됨.
3) 상업은행은 민영은행 및 저축은행, 협동조합을 포함(특별한 제한이 있는 특정신용기관 제외).
4)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는 국채에 대한 인수 및 딜링 업무임, 신탁은행은 기금운용 서비스 제공 가능, 1993년 봄부터 은행들의 자회사를 통한 증권업무 허용.
5) 은행의 직접적인 폐쇄식(closed-end) 신탁기금업무 허용.
6) 신탁기금에 대한 규제 없음, 기타신용업무는 일반대출금을 의미함, 비금융업무는 상업 또는 산업관련 회사에 의해서만 수행가능.
7)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의됨.
8) 투자은행의 리싱업무 직접 허용, 은행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보험대리인업무 허용.
9)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상해보험 및 신용생명보험 또는 지방채보증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소유가능.

* 업무 허용 표시
B : conglomerate에 속한 은행이 직접 제공가능.
AFF : 은행의 계열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제공가능.
AFF(L):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열회사를 통해 제공가능.
INS : conglomerate에 속하는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 브로커/대리인을 통해서만 제공가능.
INS(L):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험계열사를 통해 제공가능.
L :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됨.
No : 수행 불가능.
No(L) :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나 간혹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됨.

資料: Kazuhiko Koguchi (1993), pp.39~46.

- 금융자유화의 진행으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완화됨에 따라 전통적 은행업무에 주력해 온 은행들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들의 은행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에 당면하게 되어 수익성이 악화됨.

  ㅇ 정부가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 이전보다 시장기구의 역할에 보다 더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금융시장간, 금융기관간의 통합이 촉진됨.

  ㅇ 預貸市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도가 보다 높은 신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預貸마진이 축소되거나 不實債權의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 불·독·일·네덜란드에서는 預貸마진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미·영·캐나다에서는 利子收入은 늘었으나 대손충당금의 급증으로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대단히 커짐 [Koguchi(1993)].

  ㅇ 따라서 은행들은 이자수입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해짐.

- 이상의 변화들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게 되자, 은행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의 성장전망이 높은 분야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非傳統的인 業務에 다투어 진출하려 함.

  ㅇ 실제로 많은 은행들은 利子收入의 둔화를 보전하기 위해 1980년대말에 들어 직접, 혹은 子會社를 통해 증권관련업무를 크게 확대하여 왔음.

  ㅇ 이들 업무는 은행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많은 경우 자산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도 手數料收入을 가져다 주므로 資産利益率 (ROA)나 自己資本比率 維持에 도움이 됨.

  ㅇ 그러나, 1980년대말의 證市不安定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가 반드시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Koguchi(1993)].

- 한편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銀行資産의 質 低下와 流動性危機를 해결하기 위해 證券化現象이 심화되고, 주요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의 하락,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 등에 힘입어 債券·株式市場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관련업무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

  ㅇ 이와 함께 상호기금·연금기금의 관리나 투자자문서비스 등 증권관련업무와 국가간 經常 및 資本去來의 규모확대 및 다양화에 수반되는 換·信用리스크 등 각종 危險을 회피하기 위한 派生金融商品 (derivatives) 에 대한 需要도 크게 증대됨.

- 아울러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 국제금융부문의 시장참가자 과다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더 한층 압력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대형은행간, 혹은 대형은행과 중소금융기관간의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 및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함.

  ㅇ 합병을 통한 市場占有度의 제고, 인원감축 및 불필요한 점포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대규모신용 공여능력 확보, 합병기관들의 상호업무 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함.

  ㅇ 더구나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988년 7월이후 BIS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합병이 자기자본 확충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 이와 함께 금융그룹의 형성을 통해 업무영역의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범위의 경제 또는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됨.

  ㅇ 금융서비스별로 수요의 장기적 증가가 다른 양상을 보여 異種 金融機關들이 서로 다른 성장전망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분야를 찾기 위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함.

  ㅇ 금융그룹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 실현으로 대고객 제공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one-stop banking을 통해 고객의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량고객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ㅇ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및 情報 노하우(knowhow)를 금융그룹차원에서 共有活用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3. 金融그룹의 組織形態 [Koguchi(1993) 참조]

가. 完全結合 (complete integration)

- 금융그룹내에서 각기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계열기업들의 資源을 가장 신축적으로 共有할 수 있어 특정 금융상품 조합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반면, 금융그룹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非競爭的 行爲나 利害相衝, 계열기업(들)의 財政難이 그룹내 여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contagion risks) 등이 가장 큼.

-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완전결합형태의 금융그룹 형성을 허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나. 子會社(subsidiaries) 設立

- 기존 금융기관을 매수하여 子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被買受機關의 전문인력, 자본, 고객 등을 획득함으로써 신규회사설립에 비해 창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금융그룹이 서로 다른 업무를 한 회사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특정업무를 별도의 子會社 설립을 통해 영위하는 것이 다음의 점에서 유리할 수 있음.

  ㅇ 금융전업군이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경영자들이 子會社에 대한 채무를 持分參加에 한정하는 것을 선호함.

  ㅇ 법인소득세 면에서 독립적인 子會社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존재함.

  ㅇ 은행·보험·증권업은 영업방식이나 인사제도가 相異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 곳에서 영위할 경우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ㅇ 별도의 子會社설립시 고객들에게 子會社에 제공된 비밀정보가 母會社에 의해 사용되는 이해상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그러나, 금융그룹이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자본소요가 크고, 매수후에 被買受機關의 결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병후 두 기관의 기업문화가 相異함에 따른 諸般問題가 발생할 수 있음.

- 非銀行 子會社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母銀行(parent bank)이 금융그룹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該當子會社에 대한 투자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母會社의 公的 安全網 (official safety net)이 子會社에까지 간접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다. 持株會社 (holding companies) 設立

- 持株會社를 형성할 경우 관계회사들을 다양한 형태로 持株會社의 산하에 둘 수 있있으며, 한 持株會社가 다른 持株會社를 子會社로 둘 수도 있는 등 조직상의 신축성이 강함.

- 法的 獨立性이 子會社보다 강하므로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子會社設立의 경우보다 고객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본조달이 子會社의 경우보다 다소 용이할 수 있으며, double leveraging을 하는 경우 자본소요액이 子會社設立의 경우보다 작을 수 있음.

- 단점으로는 子會社의 경우보다 持株會社所屬 會社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약화되며, 따라서 범위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이 子會社의 경우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소유가 法的으로 금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은행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非銀行 계열회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줄어들 것임.

라. 關聯會社 (affiliates) 形成

- 은행이 子會社가 아닌 단순한 持分參加의 형태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경우로 子會社의 경우보다는 관련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는 하나, 지분참가율이 최대주주가 될 정도로 높을 경우 관련회사의 전문인력과 해당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은행이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협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낮은 율의 持分參加(minority participation)를 통해 관련회사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음.

마. 合作會社 (joint ventures) 設立

- 소유권의 면에서는 子會社設立의 경우와 동일하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점에 차이가 있음.

  ㅇ 다른 국적의 기업간, 혹은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간에 흔히 이루어지며, 합작상대방의 상품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음.

바. 공동판매협정 (sales and marketing agreements)

-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태로 반드시 주식보유에 의한 소유·지배관계의 형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종종 持分參加에 의해 상호 관계가 증진되는 경우도 있음.

  ㅇ 은행은 단지 협정을 맺은 회사의 상품 판매에만 관여하고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상품생산과정이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음.

金融그룹의 長點

ㅏ. 規模 및 範圍의 經濟 實現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형고객의 유치 가능, 都賣金融市場에서의 市場占有度 提高 등을 통해 規模의 經濟를 달성할 수 있음.

- 한 그룹이 여러 종류의 관련된 금융상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부문(전산시스템, 지점망,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그룹내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 상품들을 독립된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시너지」효과에 의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ㅇ 금융상품간의 보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보완적 성격의 금융상품들을 한 곳에서 제공할 경우 고정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보다 용이하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가능성도 증대됨.

  ㅇ 또한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 고객유지비용을 공동부담하거나 그룹내 기관들간에 고객에 관한 情報를 어느 정도 共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미미한 실정임.

  ㅇ 은행의 경우 그다지 크지 않은 일정수준의 규모까지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規模의 經濟가 소멸되거나 不經濟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일부 산업(도매금융업, 증권산업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산업에서는 市場參加機關이 과다한 편이며 경기부진으로 인해 고객의 수도 감소세에 있어 동 산업에서의 합병이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하지만 금융상품간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고 은행·보험·증권관련 업무등이 점차 동일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의 형성이 전반적인 효율성의 제고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그룹내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관련상품들을 공동판매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데 따르는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oguchi(1993)].

〈表 II-2〉 銀行産業에서의 規模 및 範圍의 經濟性에 관한 實證分析 結果比較

研究者	主要 結論
Murry & White [1983] Gilligan & Smirlock [1984]	o 모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 o 預金規模 2,500만달러 이하의 銀行에서는 規模의 경제가 그 이상은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首藤惠 [1985]	o 規模의 經濟는 존재하며 도시은행과 상위지방은행은 그 정도가 큼. o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粕谷宗久 [1986]	o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나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음. o 도시은행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1975, 76, 80, 81년 제외). o 지방은행은 1983년까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4년에는 존재함.
Gilligan, Smirlock & Marshall [1987]	o 規模의 經濟는 소규모에서 존재함. 預金規模 2,500만달러 이상의 단점은행, 5,000만달러 이상의 지점은행에는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o 範圍의 經濟는 존재함.
Kolari & Zardloohi [1987]	o 規模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o 貸出과 總預金을 생산물로 한 경우에 範圍의 經濟가 존재함.
Berger, Hanweck & Humphery [1987]	o 소규모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나 대규모에서는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o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Mester [1987]	o 中規模銀行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나 기타 規模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o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高橋豊治 [1988]	o 도시은행은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하며 지방은행은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 o 範圍의 經濟는 모두 존재하지 않음.

資料: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간의 합병·매수와 과제』, 1990.11., pp. 20-22.

나. 金融機關間 競爭促進

- 금융그룹이 신규로 特定市場에 진출함으로써 個別 金融市場에서의 市場參加者數를 늘리거나 旣存參加者를 계열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 金融機關間 競爭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ㅇ 競爭的 市場이 형성될 경우 거래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 소비자 가격의 인하, 생산 및 경영상의 非效率 제거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임.

  ㅇ 금융산업에 존재하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립된 新規進入者보다는 금융그룹에 소속된 회사들이 기존 기관을 매수하여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foothold entry)가 많으며, 이 때 해당계열회사가 금융그룹의 認知度(reputation)를 배경으로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할 경우 該當市場에서의 전반적인 競爭度가 증가할 수 있음.

다. 業務多角化에 따른 危險分散

- 수익흐름 사이에 相關關係가 낮거나 負의 相關關係를 갖는 業務를 동시에 한 금융그룹에서 영위함으로써 개별금융업무수행에 따른 수익흐름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금융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짐.

- Litan(1985)은 非銀行業務의 收益變異係數가 은행에 비해 작고 兩 業務로부터의 收益의 相關係數가 (-)라면 은행과 非銀行機關과의 합병은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음.

  ㅇ 그러나 그의 실증분석결과는 대상분석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Boyd and Graham(1988)은 銀行持株會社가 생명보험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도산위험이 줄어드나, 증권회사나 부동산회사와 결합할 때에는 도산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았음.

  ㅇ 이는 신규업무가 은행업보다 위험도가 높다면 業務多角化에 따른 利點을 상쇄해 버림으로써 도산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Boyd, Graham과 Hewitt (1993)는 非銀行資産의 비중이 큰 합병일 수록 위험이 증가하며, 금융자유화조치에 의해 대형 非銀行金融機關들이 소형은행을 매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금융그룹의 업무다각화에 의한 위험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5. 金融그룹의 問題點

가. 經濟力集中 深化

- 금융그룹이 형성되면 금융시장전체가 이전보다 少數의 大型機關 지배하에 놓임으로써 시장전체의 競爭度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ㅇ 市場에서의 競爭度 저하는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금융자원의 편중배분, 금융중개의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장전반의 경제적, 분배적 효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에 들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금융시장간의 상호진출 증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 국가간 금융서비스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해 일국 금융시장에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게 축소됨.

  ㅇ 또한 금융산업의 각부문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종래의 市場集中度 指數(CRn, HHI 등)가 실제의 集中度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 더구나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自國金融機關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합병이나 금융그룹형성을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시장내에서 혹은 금융산업간에 대규모의 합병·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옴.

  ㅇ 또한 금융당국이 특정부문의 競爭度를 높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한 결과 금융그룹의 형성이 촉진된 경우도 존재함 (예: 유럽 및 캐나다에서의 증권시장 개혁).

- 합병·매수의 증가로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요 금융그룹의 市場占有度가 상승하였지만, 이들 나라에 있어서도 대형 금융그룹이 자신의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현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Koguchi(1993)].

  ㅇ 그러나 대형 금융그룹의 市場獨占 및 非競爭的 行爲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利害相衝 (conflict of interest)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혹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경우 이해상충이 야기될 소지가 발생함.

  ㅇ 이해상충은 금융기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서비스와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발생함.

  ㅇ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의 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 그룹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을 경우 예금자, 차입자, 해당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운데 어느 한편의 이익을 다른 한편의 이익에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됨.

- 公共政策의 관점에서는 이해상충이 업무다양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고객그룹의 특정수요에 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效率性 側面과 방만한 경영이나 과도한 위험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安全性 및 健全性 側面, 그리고 投資者保護를 약화시킨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利害相衝問題에 대한 대응책은 나라마다 相異하며, 大別하여 두가지 相反되는 接近方法이 제시되고 있음.

  ㅇ 금융기관이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가능한 한 법적,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

    . 미·일·캐나다에서는 최근까지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업무(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兩者間의 株式所有를 不許함.

  ㅇ 시장에 경쟁이 충분히 존재하는 한 市場原理의 作用 (market discipline)이 좋은 금융관행을 발전시키고 금융기관 자신들로 하여금 이해상충의 여지를 줄일 내부경영체계를 정비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

  실제로는 이해상충문제의 해결을 市場機構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금융그룹소속 회사들간에 고객의 거래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Chinese Wall을 설치

○ 이해상충에 의해 피해를 본 고객이 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 窓口나 節次(complaints procedures)를 마련

○ 엄격하고 구체적인 經營公示義務를 부과하거나, 대내적, 혹은 외부인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 당국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제정

다. 그룹 關係會社들간의 危險傳播 (contagion risks)

- 일반인들이 금융그룹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룹 소속회사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다른 관계회사들(특히 은행)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자율화로 금리자유화 폭이 확대되고,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각종 新金融商品이 출현하면서 금융경영리스크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

  ○ 특히 非銀行業務의 리스크가 은행업무의 리스크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그룹내의 非銀行部門의 不實이 은행부문의 안전성을 해칠 경우 그룹전체의 부실화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 위험은 금융그룹소속회사들간에 금융상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런 연계성이 없더라도 처음에는 금융그룹의 한 부분에 국한된 어려움이 그룹전체의 안전성, 건전성에 대한 인식 (public confidence)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信認度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公的 安全網 (official safety net)이 금융그룹의 非銀行會社에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더구나 市場이 公的 安全網의 금융그룹전체에 대한 확대를 인지할 경우 금융그룹 소속 非銀行 子會社(affiliates)와 公的 安全網 밖에 있는 독립적인 非銀行會社들간에 경쟁상의 不衡平이 발생할 것임.

- 연결거래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룹내 한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부문들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그룹소속 회사들간에 방화벽 (firewalls)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나, 방화벽의 효율적 작용은 금융그룹 형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것이며, 또한 긴급사태시에는 이러한 방화벽들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代案으로 금융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그룹소속회사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룹소속회사들의 자본금 규모를 重視하는 경향이 나타남.

  ㅇ 자본비율이 높은 은행만 子會社를 통해 새로운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일부 나라에서는 금융그룹에 대해 BIS의 자기자본비율보다 높은 비율의 自己資本을 유지하도록 요구함.

- 이와 아울러 감독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금융그룹소속 회사들이 각기 어떤 당국의 감독을 받는가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감독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ㅇ contagion risks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감독당국이 금융그룹에 속하는 여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들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감독당국들이 금융그룹의 전반적 위험부담수준 (risk exposure)의 평가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교환, 主監督機關 設定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라. 組織의 肥大化에 따른 經營統制 弱化

- 조직의 비대화로 금융그룹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범위와 영업활동수준에 대한 經營陣의 統制가 어려워지거나, 경영진이 그룹의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ㅇ 그룹전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개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기가 어려움.

  ㅇ 또한 서로 다른 업종간에 기업문화나 위험도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경영통제의 약화는 규제를 받지 않는 관계회사에 의한 비정상적 거래나 과도한 위험부담, 이전가격 조작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마. 監督上의 어려움 加重

- 우선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나 현행 감독체계가 相異하기 때문에 금융그룹전체에 대한 건전경영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금융그룹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조직의 복잡화·불투명화로 인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전체의 經營의 健全性이나 危險度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ㅇ 금융그룹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나 위험집중에 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의 불투명성을 강화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ㅇ 다양한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복잡한 기관일수록 조직구조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double gearing에 의해 각 계열회사의 자본의 합계가 그룹전체의 통합자본규모를 상회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관계회사를 이용하여 leverage를 허용수준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음.

    . 한 기업에 대한 한도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 기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또는 다른 약정들을 모회사 및 자회사들에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금융그룹이 독립 금융기관들에 비해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신종 파생금융상품들을 취급하는 규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그룹의 위험도를 평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감독당국간의 협조와 조화가 필수적이며, 또한 감독당국이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직의 불투명성 증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Ⅲ. 美國의 金融資本 現況

1. 槪觀

- 미국에는 20세기 초에도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金融資本이 존재하여 왔으며, 이들 금융자본은 戰後 IMF체제하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해 옴.

  ○ 8대 주요금융자본그룹은 Morgan 그룹, Rockefeller 그룹, First National City Bank 그룹 (이상 뉴욕 거점), Mellon 그룹 (피츠버그 거점), Cleveland 그룹 (클리블랜드 거점), Chicago 그룹 (시카고 거점), Bank of America 그룹, Du Pont 그룹임.

- 소수의 은행이 금융자원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은 과다한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의회는 금융자본의 비대화를 막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음.

  ○ Sherman Antitrust Act(1890), Clayton Antitrust Act(1914)의 제정에 의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줄이는 모든 형태의 계약이나 기업결합을 금지하였으며, Glass-Steagall Act(1933)에서는 상업은행업무를 투자은행업무와 분리시킴으로써 은행이 산업자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

  ○ 이에 더하여 The McFadden Act(1927)가 州間支店設置를 통한 營業活動(interstate branching)을 금지하자, 大型銀行들은 이러한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銀行持株會社(bank holding companies)*를 형성하여 지역적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거나 收益源을 다양화함으로써 조달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은행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해 왔음.

    * 單一 혹은 複數會社의 주식 또는 기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당해 회사 또는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

- 銀行持株會社의 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6월말 현재 상업은행의 61.0%가 은행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업은행 총자산에서 은행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2%에 달함.

- 의회에 제출된 여러 보고서들은 상업은행업 또는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경제력의 집중이 종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表 III-1〉 銀行持株會社의 比重 推移

	회 사 수				자 산 비 중(%)			
	은행지주회사			독립은행	은행지주회사			독립은행
		복수 BHC	단일 BHC			복수 BHC	단일 BHC	
1970	1,406(11.1)	142(1.1)	1,264(10.0)	11,254(88.9)	54.6	18.3	36.3	45.4
1975	1,708(13.5)	289(2.3)	1,419(11.2)	10,959(86.5)	61.6	31.5	30.1	38.5
1980	2,905(23.1)	361(2.9)	2,544(20.2)	9,667(76.9)	78.5	36.4	42.1	21.5
1985	5,946(53.8)	869(7.9)	5,077(45.9)	5,111(46.2)	92.1	74.5	17.6	7.9
1990.6.	5,854(60.9)	942(9.8)	4,912(51.1)	3,750(39.0)	93.2	74.4	18.8	6.9

註: ( )안은 구성비(%)임.

資料: FRB

2. 金融機關間의 結合

- 상업은행주식의 대부분을 다른 상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음 [Patman Report (1966)].

  ○ 은행들은 은행신탁부를 통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서로 주식을 共有하고 있으며, 이것은 은행간 협조관계나 은행경영진 지위의 상호보전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어 옴.

    . New York의 대형 6행은 공통의 機關大株主로서 대규모 주식소유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간접적인 중역겸임을 통해 친밀한 人的 結合關係를 맺고 있음.

    . Clayton Act에 의해 聯準 加盟銀行의 중역 및 간부직원은 국립은행과 주립은행의 동일직을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 이후 대형은행사이의 직접적인 人的 結合關係는 없어짐.

  ○ 대은행들은 신탁부를 통해 많은 중소은행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은행과 대형 생명보험회사간에도 많은 직접적, 간접적 重役兼任關係가 존재함 [Metcalf Report(1974-78)].

〈表 Ⅲ-2〉 NY 主要 市中銀行의 大株主 構成

	Citicorp				Chase Manhattan Corp.				Manufacturers Hanover			
	대 주 주	A %	B %	C %	대 주 주	A %	B %	C %	대주주	A %	B %	C %
	J.P.Morgan	2.29	2.78	2.78	Citicorp	1.35	2.13	2.13	Delaware Mgnt.	2.82	3.08	3.08
	Prudential Ins.	2.38	2.38	5.16	FN Bankshares	1.76	1.77	3.90	Continental Corp.(2)	2.71	2.71	5.79
	First National Boston	1.77	2.06	7.22	Teledyne	1.23	1.23	5.13	J.P.Morgan	0.11	2.63	8.41
	Price T.Rowe Association	0.26	1.90	9.12	Mfg. Hanover	0.93	1.19	6.32	Citicorp	1.56	2.31	10.72
	TIAA/CREF (1)	1.86	1.86	10.98	Calif. Pub. Emp. Ret. Sy.	1.19	1.19	7.50	TIAA/CREF	2.01	2.01	12.73
	Babson David L&Co.		1.56	12.54	Boesky Ivan F & Corp.	0.98	0.98	8.48	AmeriTrust	1.86	1.98	14.71
上6주주		8.56	12.54	12.54		7.43	8.48	8.48		11.06	14.71	14.71
次24위(18주주)		11.84	14.66	27.20		9.42	12.07	20.55		12.20	16.99	31.70
기타 207주주		19.08	23.59	50.79	115주주	10.88	14.40	34.95	109주주	9.39	13.34	45.04
다른 조사대상회사와의 중역겸임건수	직접	49주				24건				21건		
	간접	871				504				504		
그룹내에서의 간접적인 중역겸임건수												
Citicorp		-				33				26		
Chase Manhattan Corp.		33				-				22		
Manufacturers Hanover		26				22				-		
J.P.Morgan		35				19				23		
Chemical NY		27				17				22		
Bankers Trust		21				15				13		

1980년	J.P.Morgan				Chemical New York				Bankers Trust			
	대주주	A %	B %	C %	대주주	A %	B %	C %	대주주	A %	B %	C %
①	National Detroit	2.45	3.72	3.72	Connecticut General	0.48	1.76	1.76	Citicorp	2.73	3.84	3.84
②	Price T.Rowe Association	1.04	3.18	6.90	Teledyne	1.60	1.60	3.36	American General Ins	1.69	1.69	5.53
③	FN Boston	1.84	2.50	9.40	Gulf & Western Inds.	1.46	1.46	4.82	FMR	1.49	1.66	7.20
④	Chase Manhattan	1.79	2.39	11.79	Bankers Life	1.35	1.35	6.17	Maryland National	0.28	1.49	8.69
⑤	Bankamerica	1.07	1.62	13.41	Citicorp	0.18	1.13	7.29	Institutional Corp	0.88	1.14	9.83
⑥	Continental Corp	1.50	1.50	14.91	Firestone Pension pl.	1.08	1.08	8.37	Continental Corp(1)		0.88	10.71
상위6주주		9.68	14.91	14.91		6.14	8.37	8.37		7.07	10.71	10.1
7~24위(18주주)		11.14	16.87	31.78		9.59	12.6	20.53		3.49	7.64	18.35
기타 174주주		18.72	23.83	56.61	48주주	4.04	5.35	25.88	39주	2.23	2.75	21.10
다른 조사대상회사와의 중역겸임건수	직접	31건				24건				16건		
	간접	625				588				476		
그룹내에서의 간접적 중역겸임건수												
Citicorp		35				27				21		
Chase Manhattan Corp.		19				17				15		
Manufacturers Hanover		23				22				13		
J.P.Morgan		-				25				9		
Chemical NY		25				-				26		
Bankers Trust		9				26				-		

註: A는 주주에 의결권이 있는 것만. B는 지주전부. C는 B의 누적비율. (1)중역겸임건수 1건. (2) 중역겸임건수 2건. (3) # 표는 중 회에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資料: *Ribicoff Report* Vol.1. pp.33-34. *CDE Stock Ownership Directory Banking & Finance*, 1980. [松井和夫(1986)에서 인용].

〈表 Ⅲ-3〉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大株主 現況(1993年 3月 31日 現在)

(單位: %)

CITI CORP

주주명	지분율
FIDELITY MGMT & RES CORP	7.10
WELLINGTON MGMT CO	5.64
ABDULAZIZ AL SAUD(INSIDER)	4.45
BERNSTEIN SANFORD C & CO	2.98
BRINSON PARTNERS INC	2.98
MICHIGAN STATE TREASURER	2.55
WELLS FARGO INST. TR NA	1.99
MORGAN J P & CO INC	1.89
BANKERS TRUST N Y CORP	1.84
DODGE & COX	1.27
STATE STREET RESR & MGMT	1.05
COLLEGE RETIRE EQUITIES	1.02
11	31.78

CHEMICAL BANKING CORP

주주명	지분율
MANUFACTURERS HANOVER CO(INSIDER)	7.18
BARROW HANLEY MEWHINNEY	4.42
BERNSTEIN SANFORD C & CO	3.01
LINCOLN CAPITAL MGMT CO	2.32
WELLS FARGO INST. TR NA	2.06
BANKERS TRUST N Y CORP	1.87
MILLER ANDERSON & SHERRERD	1.74
TCW MANAGEMENT COMPANY	1.69
THOMSON ADVISORY GRP LP	1.68
LAZARD FRERES & CO	1.62
ALLIANCE CAPITAL MGMT	1.48
DELAWARE MANAGEMENT CO	1.47
SCUDDER STEVENS & CLARK	1.35
SHEARSON LEHMAN BROTHERS	1.27
COLLEGE RETIRE EQUITIES	1.22
PHOENIX MUTUAL LIFE INS	1.18
MICHIGAN STATE TREASURER	1.11
LYNCH & MAYER INC	1.11
AETNA LIFE & CASUALTY CO	1.09
19	38.90

BANKAMERICA CORP

주주명	지분율
OPPENHEIMER & CO, L.P.	2.50
JANUS CAPITAL CORP.	2.04
WELLS FARGO INST. TR NA	2.04
BANKERS TRUST N Y CORP	1.77
BARROW HANLEY MEWHINNEY	1.64
ALLIANCE CAPITAL MGMT	1.62
MORGAN J P & CO INC	1.49
BERNSTEIN SANNFORD C & CO	1.45
IDS FINANCIAL CORP.	1.32
AGGREGATE OF 178 OWNERS	1.01
COLLEGE RETIRE EQUITIES	1.02
11	17.90

NATIONSBANK CORP

주주명	지분율
NATIONSBANK CORPORATION	3.69
JANUS CAPITAL CORP.	3.08
ELLIS ALPHEUS L(INSIDER)	2.25
FIDELITY MGMT & RES CORP.	2.11
JEFFERSON PILOT CORP.	2.08
WELLS FARGO INST. TR NA	1.98
DELAWARE MANAGEMENT CO	1.79
BANKERS TRUST N Y CORP	1.61
INDEPENDENCE INVT ASSOC.	1.57
ALLIANCE CAPITAL MGMT	1.39
AGGREGATE OF 179 OWNERS	1.29
MORGAN J P & CO INC	1.37
ENGEMANN ROGER & ASSOCS.	1.35
MILLER ANDERSON & SHERRERD	1.22
COLLEGE RETIRE EQUITIES	1.10
15	27.88

J P MORGAN & CO INC

주주명	지분율
CAPITAL RESEARCH & MGMT	4.91
BANKERS TRUST N Y CORP	2.19
WELLS FARGO INST. TR NA	2.01
BOSTON COMPANY INC	1.97
JENNISON ASSOC CAPITAL	1.81
WELLINGTON MGMT CO	1.23
SCUDDER STEVENS & CLARK	1.22
CAPITAL GUARDIAN TRUST	1.20
RITTENHOUSE FINL SVCS	1.18
AGGREGATE OF 308 OWNERS	2.43
COLLEGE RETIRE EQUITIES	1.12
MELLON BANK CORPORATION	1.01
12	22.28

CHASE MANHATTAN CORP

주주명	지분율
BERNSTEIN SANFORD C & CO	5.75
BARROW HANLEY MEWHINNEY	5.37
CHASE THRIFT INCENTIVE PL(INSIDER)	2.25
WELLINGTON MANAGEMENT CO	2.18
BANKERS TRUST N Y CORP	1.93
WELLS FARGO INST. TR NA	1.93
INVESCO FUNDS GRP INC	1.85
MERRILL LYNCH ASSET MGMT	1.62
BRINSON PARTNERS INC	1.59
INDEPENDENCE INVT ASSOC.	1.16
BOSTON COMPANY INC	1.03
OHIO STATE TEACHERS RETM	1.01
COLLEGE RETIRE EQUITIES	1.00
13	27.67

BANKERS TRUST NEW YORK CORP

주주명	지분율
CAPITAL RESEARCH & MGMT	7.41
WELLINGTON MANAGEMENT CO	6.84
BARROW HANLEY MEWHINNEY	4.94
WELLS FARGO INST. TR NA	2.04
DELAWARE MANAGEMENT CO	1.98
MICHIGAN STATE TREASURER	1.82
BANKERS TRUST NY CORP PAR(INSIDER)	1.75
BANKERS TRUST NY CORP(INSIDER)	1.75
MILLER ANDERSON & SHERRERD	1.60
BOATMEN'S BANCSHARES INC	1.46
TEXAS TEACHER RETIRM SYS	1.33
GSB INVESTMENT COUNSEL	1.32
ARK ASSET MGMT CO INC	1.24
BERNSTEIN SANFORD C & CO	1.23
MELLON BANK CORPRATION	1.22
BOSTON COMPANY INC	1.20
MORGAN J P & CO INC	1.17
17	40.30

BANK OF NEW YORK CO INC

주주명	지분율
FIDELITY MGMT & RES CORP.	6.38
JANUS CAPITAL CORP.	6.03
CAPITAL RESEARCH & MGMT	4.40
BEACON CAPITAL MGMT CO	3.68
CAPITAL GROWTH MGMT	3.68
BANK OF NEW YORK	3.22
MORGAN J P & CO INC	2.66
LAZARD FRERES & CO	2.37
MERRILL LYNCH ASSET MGMT	2.34
INVESCO FUNDS GRP INC	1.93
INVESTORS RESEARCH CORP	1.81
WELLINGTON MANAGEMENT CO	1.74
BARROW HANLEY MEWHINNEY	1.60
BANKERS TRUST N Y CORP	1.40
BOSTON COMPANY INC	1.32
COLLEGE RETIRE EQUITIES	1.15
WELLS FARGO INST. TR NA	1.15
THOMSON ADVISORY GRP LP	1.13
BEAR STEARNS & CO. INC.	1.12
DREYFUS CORPORATION	1.09
20	50.20

〈表 Ⅲ-4〉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및 大株主 比重(1993年 3月 現在)

(單位: %)

	CITI CORP	CHEMICAL BANKING CORP	BANKAMERICA CORP	NATIONBANK CORP	J P MORGAN & CO INC	CHASE MANHATTAN CORP	BANKERS TRUST NEW YORK CORP	BANK OF NEW YORK CO INC
기관투자가 총수 (비 중)	296 (54.60)	380 (69.10)	424 (56.00)	389 (56.02)	566 (62.25)	257 (57.59)	296 (70.37)	260 (77.76)
5%이상 소유자 (비 중)	4 (33.32)	2 (10.28)	1 (6.50)	0 (0.00)	1 (7.58)	2 (11.12)	3 (21.25)	1 (21.40)

〈表 III-5〉 大型銀行·生命保險社간의 直接的·間接的 結合關係

(1976年末 現在)

	은행지주회사										생명보험회사					
	Bankamerica	Bankers Trust	Chase Manhattan	Chemical Bank	Citicorp	Continental Illinois	First Chicago	Manufacturers Hanover	J.P. Morgan	Western Bancorp	Aetna Life	Equitable Life	John Hancock	Metropolitan	NY Life	Prudential
Bnakamerica		0	2	2	3	3	6	2	2	7	0	0	1	4	5	2
Bankers Trust	0		7	24	14	4	5	11	6	1	0	6	3	3	0	8/1
Chase Manhattan	2	7		16	18	6	10	27	17	0	3	3/1	4	16/1	9	10
Chemical Bank	2	24	16		24	13	15	32	15	3	5	10	3	12/2	18/2	6
Citicorp	3	14	18	24		8	10	26	30	6	8/1	7/1	4	22/1	7/1	14
Continental Illinois	3	4	6	13	8		42	4	3	2	1	3	1	10	1	1
First Chicago	6	5	10	15	10	42		8	9	3	1	3	0	14/1	5	2
Manufacturers Hanover	2	11	27	32	26	4	8		25	3	4	5	5	12	21/3	8
J.P. Morgan	2	6	17	15	30	6	9	25		1	3/1	8	2/1	19/1	6/1	4/1
Western Bancorp	7	1	0	3	6	2	3	3	1		0	2	1	0	4	4

註: 3/1은 직접적 중역겸임 1건, 간접적 중역겸임 3건을 의미하여, 하나의 숫자만 있는 경우는 간접적 중역겸임만의 건수를 가리킴.

資料: U.S. Senate, *Interlooking Directorates Among the Major U.S. Corporations* 1978, p.120. [松井和夫(1986)에서 인용].

3. 銀行과 大企業間의 結合

- 대형은행의 신탁부는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해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Fitch and Oppenheimer(1970), Kotz(1978)].

  ㅇ 8개 금융자본그룹에 속하는 대은행이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은행신탁업무의 대은행으로의 집중이 일반 은행업무의 집중보다 더 진척되어 있음 [Patman Report (1966)].

  ㅇ 1968년 4월 현재 은행신탁부자산의 64.4%가 주식에 투자되고 27.4%는 채권에 투자됨.

- 대형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는 투자선인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중역파견, 회사측 간부직원과의 협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함 [Metcalf Report(1974-78)].

  ㅇ 기관투자가의 持株比率은 1956년말의 24.5%에서 1966년말 29.8%, 1976년말에는 39.7%로 상승하였음.

  ㅇ 중역겸임을 통한 人的 結合關係를 맺고 있는 은행과 기업의 대부분(약 85%)의 경우 은행은 신탁부를 통해 해당기업의 주식도 보유함으로써 持株關係와 融資關係가 동시에 존재함.

- 두개이상의 금융자본그룹에 관계되는 대은행이 특정기업의 경영에 공동참가하고 금융적 이해를 같이하는 현상도 볼 수 있음.

- E.S. Herman(1981)은 종래의 은행의 기업지배설에 대해 대은행과 대기업은 융자 등 본래의 금융업무를 통해 결합되지만, 兩者의 관계는 지배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등한 互惠的 關係라고 주장함.

  ㅇ 대형 상업은행이 주로 신용공여를 기초로 하여 이익집단*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공통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공통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련의 회사집단 (Paul Sweezy)

  ㅇ 대기업에 대한 대형은행의 주요한 영향력의 원천은 주요한 貸付者로서의 지위로부터 나오며, 機關大株主로서의 지위는 대형은행의 영향력을 보강하는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요인으로 간주함.

ㅇ 대기업에 대한 대형은행의 영향력, 지배력을 억제하는 요인

1)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상업은행 등의 통합화의 진전과 전국적 시장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수의 증가
2) 해외에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다국적 기업의 증대
3) 보험회사, 연금기금, 금융회사 등 은행이외의 대부기관의 중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대부기관으로서의 상업은행 지위의 저하
4) 상업은행의 지배 밖에 있는 CP시장의 발전

ㅇ 은행이 기업에 중역을 파견하는 것은 은행과 기업간의 상업은행 업무를 통한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은행 신탁부의 주식소유에 기초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봄.

ㅇ 그러나 대기업의 주도적인 내부경영진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결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몇몇 의사결정영역에 있어서는 은행 등 외부관계자에 의한 부분적, 잠재적 지배력(latent power)이나 억지력(power to constrain)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함.

4. 大型 銀行持株會社의 構造

- 1970년에 개정된 銀行持株會社法 <Section 2(a)>에 의하면,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법인은

ㅇ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거나 또는 1인 이상의 개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ㅇ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임원의 과반수를 선출하는 권한을 보유하거나

ㅇ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영 혹은 정책결정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를 행사하고 있다고 FRB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됨.

- 은행지주회사는 구조면에서 대단히 유연한 경영조직체이므로 조직형태가 상당히 다양함.

ㅇ lead bank로 불리는 중핵적인 은행이 존재하며, 이 은행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계은행들(affiliated banks)이 群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가짐.

ㅇ 관계은행들은 lead bank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게 됨.

ㅇ 단수 혹은 복수의 銀行子會社와 함께 非銀行子會社(複數라도 무방)가 銀行子會社와 대등한 위치에서 은행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ㅇ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 은행지주회사 조직은 중앙집권적인 경영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一元的인 경영방침이 관련은행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침.

ㅇ 지주회사는 법률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산하 子會社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자회사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게 됨.

ㅇ 각 銀行子會社의 일상업무는 해당은행의 경영자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은행지주회사는 은행경영자의 임명, 자산·부채관리, 예산통제, 장기 경영계획등을 통해 이들 산하은행(들)을 관리함.

- 銀行子會社의 통합적 운영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영형태와 기구임.

ㅇ 단일은행지주회사의 기구는 銀行子會社와 表裏一體의 관계에 있으며, 복수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의 업적이 지주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銀行子會社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ㅇ 복수은행지주회사에서 은행자회사의 경영에 간여하는 경로

1) 은행자회사의 경영자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은행자회사의 이사회에 지주회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임원을 파견함.

2)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의 간부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를 발족시켜 경영계획의 작성, 중요영업안건의 승인여부를 담당하게 함.

3)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 간부직원의 인사승인권을 가짐.

- 복수은행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에 대한 통제는 이외에도 특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이루어짐.

ㅇ 자산·부채관리 (재무성 증권(TB), 연방기금의 취득·운용·처분 등)
ㅇ 코레스계약 (채권 매입, 예금 등)
ㅇ 자산취득 (지점신설 포함)

ㅇ 넓은 의미의 융자방침의 결정도 지주회사의 권한에 속하지만, 이를 은행자회사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재량권의 범위는 지주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 복수은행지주회사는 은행자회사들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자회사와의 연대를 강화함.

  * 자료처리, 광고, 시장조사, 신탁, 국제업무등이 지주회사본부나 lead bank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품의 구매나 보험가입 등도 지주회사가 일원적으로 처리함.

- 銀行子會社의 자주적 裁量에 위임되고 있는 業務

  1) 예대 금리 및 수수료율의 결정
  2) 대출신청의 개별심사와 일정한도까지의 금액의 융자의 결정
  3) 하급간부직원과 일반행원에 대한 人事

- 외형상의 기구조직을 통한 통제의 강약과 실제의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집권화의 정도와 은행자회사의 업적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5. 銀行의 經營權

-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진, 외부중역진, 대주주인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 대주주 등이 지배그룹을 이루며, 특정 대형 금융기관과 특정 대형기업이 중역을 서로 파견하고 있어 양쪽 지배그룹의 지위를 보강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기관투자가는 은행주식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지배목적보다는 투자의 채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미국 7대은행지주회사의 기관투자가 持株比率은 1993년 3월 현재 54 - 70 %에 이르고 있음.

  ㅇ Bankamerica Corp. 의 경우 지분율 5%이상의 대주주가 없으나, Citi Corp.와 Bank of NY Co.는 5% 이상의 대주주가 4명(혹은 기관)임.

  ㅇ 최대주주를 제외하면 大株主의 지분비율이 2-3% 정도가 대부분임.

  ㅇ 대주주의 지분은 경영진과 대주주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경영진의 지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임.

- 미국 은행들의 경영권은 理事會(대형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로부터 창출됨 [김 동원(1993)].

  ○ 미국식 이사회방식은 외부이사가 70-80%를 차지하며, 최고경영자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내부이사는 물론 외부이사의 선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특징임.

  ○ 銀行長은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의 은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지명됨.

  ○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외부이사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가 이사회의 구성을 장악하는 등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表 III-6〉 美國의 主要 大型商業銀行의 理事會 構成 (1992年末 現在)

(單位: 名)

	Chase	Citicorp	Bank America	J.P. Morgan	Bank One
이 사 수	23	18	26	15	13
내 부	5	4	5	6	4
외 부	18	14	21	9	9
외부이사 구성					
기 업	13	9	16	6	7
학 계	3	3	1	2	2
언 론 인	1	-	-	1	-
변호사 자문업	1	-	4	-	-
공 익 기 관	-	2	-	-	-
이사추천위원회	6[1]	6[1]	5[1]	3[1]	-

註: 1) Citi Corp를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전부 외부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資料: 김 동원 (1993), p. 37.

6. 銀行持株會社의 非銀行業務 進出

-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子會社 容認業種은 은행지주회사법 Section 4(c)(8) 에 의거하여 연방준비이사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복수은행지주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는 금융, 신탁, 혹은 보험에 관련된 성격을 갖는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Section 4(c)⑥), 단일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음.

ㅇ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에서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非銀行業務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 은행이 전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② 은행의 전통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취급할 능력이 있는 업무, ③ 앞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업무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을 제시함.

ㅇ 금융당국 및 의회는 고객의 편의 증대와 금융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1970년대 초까지는 대형은행들이 단일은행지주회사 형성을 통해 非銀行業務에 자유로이 진출하는 것을 대체로 허용*하였으나, 이후 지주회사 형성에 따른 公的利益보다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결합에 따라 야기될 사회적 비용 (집중의 심화, 경쟁감소, 이해상충, 불건전 금융관행 조장 등)의 증대에 보다 관심을 가짐으로써 1974년 중반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이른바 "go-slow policy"를 채택함.

* 은행지주회사가 非銀行子會社 설립신청을 낸 후 45일 이내에 거부되지 않으면 설립이 가능하였음.

ㅇ 은행의 非金融企業 주식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Glass-Steagall Act 제20조를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방화벽(fire walls)을 적절히 설치하여 유지하는 한 총수입의 10%까지를 증권거래로부터 획득하는 非銀行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은행이 신규로 非銀行業務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관련회사를 포함한 연결베이스로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됨.

- 막강한 금융기능을 가진 거대은행이 단일지주회사를 형성하여 다른 업종에 자유로이 진출하여 conglomerates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에서는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企業에의 出資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다만 은행업무 또는 복수의 은행을 경영 또는 지배하는 업무에 정당하게 부수되는 업무와 같이 은행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해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보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됨.

ㅇ 非容認 非銀行業務活動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분리하도록 규정함 (Section 4(e)).

- 은행지주회사가 非銀行業務에 진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ㅇ 특정 금융상품시장에서의 기존 경쟁도를 저하시키거나 잠재적 경쟁가능성 제거

ㅇ 금융자원의 축적에 의해 시장독점력을 남용할 가능성 존재

ㅇ 경쟁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와의 경쟁에 은행고객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등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

〈表 III-7〉 銀行持株會社에 認可된 非銀行業務

Regulation에 의해 인가된 업무	FRB의 행정명령에 의해 인가된 업무	FRB 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업무
1. mortgage banking, 소비자금융, 상업대출, credit card, factoring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3]	1. 여행자수표의 보증 및 판매[3)5)]	1. mutual fund와 보험의 복합판매에 의한 보험료 이체 서비스
2. 근로자은행	2. 地金銀 및 銀貨의 매매[1)3)]	2. 신용공여를 수반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
3. 대부 및 기타 융자업무[1)]	3. 일정한도내에서 액면제한이 없는 money order판매[1)3)]	3. 정액정기보험의 판매
4. 신탁회사[1)]	4. 地金銀·金銀貨의 선물중개업무[1)]	4. 거주용부동산 브로커업무
5. 투자 및 금융자문[1)]	5. 특정 聯邦債·州債, 地方債의 인수[1)]	5. 現金輸送車業務
6. 동산 및 부동산 리스 자금의 전액대부	6. 어음지급보증[1)3)]	6. 토지개발
7. 지역공공복지사업에의 투자[1)]	7. 소비자금융상담[1)2)]	7. 부동산융자 신디케이트의 조직
8. 금융 및 경제관련 정보처리업무[1)]	8. 소액지불수단의 발행	8. 일반컨설팅업무
9. 주로 신용공여에 관한 보험대리점업무 또는 중개인업무[1)]	9. 부동산담보차입의 수속 대행	9. 재산관리전반
10. 신용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의료보험의 인수	10. 선물중개업무	10. 컴퓨터데이타의 마이크로화 서비스
11. 금융관련 증서서류 기록 처리 및 배달서비스[1)]	11. 유가증권 할인중개업무	11. mortgage 보증보험의 인수
12. 비계열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업무	12. 경영부진 S & L 의 경영	12. S & L 의 경영[3)]
13. 액면 천달러 이하의 money order, 여행자수표 및 저축채권의 판매업무[1)6)]	13. 투자회사법 제12조회사의 경영	13. 여행대리점의 경영[1)2)]
14. 부동산 및 개인재산의 감정평가업무	14. 외국은행업무에 수반되는 고객계정에 의한 증권매매	14. 손해보험의 인수
15. 여행자수표의 발행과 판매	15. Delaware 州法은행을 통한 한정목적의 해외상업은행업무에의 종사	15. mortgage 상환보험의 인수
16. 상업용 부동산담보차입수속 대행	16. 비거주용 부동산평가, 조언 및 브로커업무	16. 은행자회사의 당좌계정과 연결된 채권의 발행
17. 증권브로커업무	17. 중소기업대부에 관한 대손충당금의 공동운용[1)6)]	17. 부동산에 관한 상담서비스
18. 국채 및 단기시장증권의 인수·매매업무	18. Rhode Island 州에서의 저축금융기관의 경영	18. 신용등급조사
19. 외국환매매의 자문 및 거래서비스	19. New Hampshire 州에서의 저축금융기관의 경영	19. BHC 자기계정에 의한 외국환선물의 재정거래
20. 선물중개업무	20. 외국환 업무관련 정보제공 및 업무대행	20. Philadelphia증권거래소에서의 프랑스 프랑옵션거래 전문업무
21. 금융선물옵션관련 투자자문	21. 금융면의 feasibility 조사	
22. 地金銀·외국환의 옵션거래 자문	22. 기업평가서비스	
	23. 공공요금의 평가서비스	
	24. 신용카드의 확인 및 분실·도난카드 통지서비스	
	25. 지방채 브로커업무	
	26. 종업원복지상담	
	27. 지방채지수선물·주식지수선물의 주문집행 및 청산	
	28. 조세납부관련 서비스	

註: 1) 국법은행에 대한 인가업무,
2) FRB가 은행업무에 밀접히 관련된 업무로 인정하지만 점진정책의 일환으로 매수신청을 기각한 것.
3) 케이스별로 인가되지 않은 것도 있음.
4) 저축금융기관의 경영은 Rhode Island, Ohio, New Hampshire 와 California의 각 州에서 용인되고 있음.
5) Regulation Y(1971.8)이후의 regulation에 의해 인가된 것.
6) 이후 금액이 10000달러로 변경됨.

資料: G.C.Fischer(1986)

○ 계열자회사의 영업확대 도모를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 조장 가능

○ 은행지주회사의 자원이 非銀行業務 확대에 사용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한 은행자회사를 지원할 능력 축소

○ 지나치게 위험하거나 景氣를 많이 타는 非銀行業務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이 부문에서의 손실에 의해 지주회사의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 존재

- 非銀行子會社의 경영책임자는 銀行子會社의 간부직원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 非銀行子會社 임원의 절반이상은 은행지주회사 또는 lead bank의 임직원에 의해 겸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非銀行子會社의 자주적인 재량권한은 은행자회사에 비해 작음.
. 지주회사본부와 비은행자회사간에는 간부급 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됨.

7. 銀行持株會社의 長點

- 금융자본의 대표적 형태로서의 은행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 기존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고객의 수요충족에 기여

○ Federal Reserve Act Section 23 (a)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통해 가장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로 자금을 투입 가능

○ 은행이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관련자회사를 통해 수행가능

○ 州間支店設置規制하에서 은행이 지역적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신장

. 은행지주회사는 다른 州所在 은행의 진출을 허가하는 州에 한해 그 州의 銀行子會社를 매수하여 他州로의 영업지역 확대 도모 가능

○ 금융시장에의 신규진입, 금리·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

○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금융자원의 풀링 및 우수한 경영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효율성 제고

○ 소규모의 독립은행보다 전산화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가능

○ 非預金 負債 등 개별 독립은행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資金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조달상의 신축성 증가

○ 은행에 대해서는 自社株 매입이 금지되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의 10%까지 自社株 매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自社株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敵對的 買受企圖를 저지하고자 하는데 기여

○ 子會社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금은 과세소득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며, 지주회사가 배당금을 이자지급에 사용할 경우 동 금액의 損金算入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稅制上의 利點 존재

8. 銀行持株會社 形成이 市場競爭度에 미치는 效果

- 은행지주회사 형성은 대체로 관련 州의 예금집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 예금집중도의 증가는 잠재적 진입자의 수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높이며, 소수의 담합에 의해 시장에서 비경쟁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을 통해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소규모은행의 매수를 통해 지역시장에 진출 (foothold entry)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점설치 규제가 엄격한 州에서 시장집중도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상품의 도입이나 기존서비스의 확대는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銀行子會社와 기존 독립은행간의 가격 및 非價格競爭을 확대시킴으로써 관련시장의 競爭度를 높이는 결과를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미미함.

- 아뭏든 은행지주회사의 증가가 미국전체의 市場集中度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둔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은행업 또는 은행업과 非銀行業에서의 集中度를 위험수준이상으로 끌어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100대 대형은행들이 국내 민간신용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6년의 15%에서 1974년에는 26%로 증가한 것이 부분적으로는 동 기간동안의 은행지주회사의 성장에 기인하였지만, 다음의 요소들도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1) 대형은행들이 非預金負債 (연방기금, 유로달러 차입, 기타 단기차입, 장기채권)에의 의존도를 높임.

2) 총 금융부문신용중 은행신용의 비중이 증대됨.

3) 대형은행들의 M&A 활동이 크게 확대됨.

9. 銀行持株會社 形成이 銀行子會社의 危險度에 미치는 效果

- 상호의존가설(dependence hypothesis)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은행(들)과 非銀行子會社들을 연계하여 볼 것이며, 따라서 지주회사의 중요한 子會社가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은행자회사로 하여금 동 회사를 지원하도록 할 것으로 봄.

- 은행지주회사는 소속 銀行子會社에 대한 公的 信賴度 (public confidence)의 저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사소속 회사들의 도산방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문제가 발생한 은행자회사를 구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은행자회사로 하여금 高收益性 추구를 위해 과다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정책을 취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지주회사는 모회사나 非銀行子會社로부터 銀行子會社로 위험을 전가하거나 은행자회사로 하여금 은행지주회사의 확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당국의 안전망(safety net)이 은행지주회사소속회사들로 확대될 경우 은행지주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 리스크 프레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가능성이 반드시 대형 은행지주회사소속 은행자회사가 독립은행보다 과다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중소규모 은행자회사가 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음.

- 은행지주회사는 독립은행이 규제로 인해 취급할 수 없는 非銀行業務중에서 상업은행업무보다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좋은 곳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銀行子會社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지주회사는 기존은행을 매수하기 위해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며, 따라서 은행매수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을 보다 위험도가 높은 방향으로 운영하거나, 은행자회사에 대해 경영 및 기타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높은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은행자회사의 경영자들은 모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독립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은행지주회사 소유주들은 은행만이 아니라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며, 가장 높은 기대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기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은행자회사의 영업 포지션이 독립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음.

-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이 비슷한 규모의 독립은행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지주회사가 자본시장에서 독립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이하게 장기부채를 발행한 후 이에 의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공급하는 이른바 double leveraging을 하는 것에 기인함.

ㅇ double leveraging은 은행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위험을 전가시키며,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은행자회사의 자본비율 충족이나 子會社의 확장을 위해 과다한 부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음.

- 이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이고 은행이 지주회사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므로 非銀行業務 취급에 따른 위험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Jessee 와 Seelig(1977)는 일부 州에서 은행지주회사소속 은행이 독립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은 영업정책을 채택하였지만 은행자회사의 위험부담은 州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業務進出 擴大가 은행자회사의 危險度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동 분석의 대상이 된 27개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業務比重 평균은 7.91%에 지나지 않았음.

-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業務進出에 따른 금융상품간, 지역간 업무다양화가 수익흐름의 안정화를 가져와 위험도를 줄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미미함.

ㅇ Heggestad(1975)는 일부 허용 非銀行業務(리스, 부동산금융, 보험대리인, 투자자문회사)의 수익성이 은행수익성과 負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은행지주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한 업무의 수익성은 은행수익성과 正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봄.

ㅇ Jessee(1976)는 상품다양화가 은행지주회사 수익성의 분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함.

- 또한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업무를 결합하여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성, 자본비용 절약, 우수한 경영자원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수익성이 제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증거는 별로 없음.

- 馬淵紀壽 (1987)는 은행지주회사 소속 銀行子會社의 倒産比率이 독립은행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도산한 은행지주회사 은행들도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았음을 들어 은행지주회사의 형성이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도산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봄.

〈表 III-8〉 銀行形態에 따른 倒産比率 比較 (1983年)

(單位 : 個, 百萬달러)

		합계	도산은행	도산비율(%)
BHC 은행	은행수	7,701	4	0.05
	총자산	20,178	1.6	0.008
	총예금	15,310	1.5	0.01
독립은행	은행수	6,764	31	0.46
	총자산	3,240	37.9	1.17
	총예금	3,113	26.8	0.86

資料: 馬淵紀壽, 「アメリカの 銀行持株會社」, 東洋經濟新報社, 1987.3., p.216.

- 1991년 3월 재무성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금융제도개혁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사업회사에 대한 진출도 허용하여 금융서비스 지주회사 (Financial Services Holding Companies:FSHC)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악화로 인해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非銀行業務에의 진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신종 非銀行業務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날로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은행지주회사의 非銀行業務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영업전반의 危險度를 적절한 수준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감독을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Ⅳ. 日本의 金融資本 現況

1. 金融資本의 形成

- 2차대전후 일본에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독점기업들간에 주식의 상호보유에 의한 금융자본의 결집강화가 도모되어 왔음.

  ㅇ 특히 최근에는 계열화의 진전에 따라 거대기업의 社外投資의 비중이 증대됨.

  ㅇ 또한 동경증권 제2부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法人株主, 특히 금융기관 주주의 진출이 현저해짐.

- 이차세계대전후 10년간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본 은행제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짐.

  ㅇ 일본제국주의의 대외침략의 금융적 支柱 역할을 수행해 온 식민지은행, 特別戰時機關이 폐쇄되고 저축은행과 일부 특수금융기관이 보통은행으로 전환되어 일본정부의 특별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

    . 1946년 9월 戰時金融金庫, 資金統合銀行, 南方開發金庫, 全國金融統制會와 朝鮮銀行, 대만은행이 폐쇄됨.

    . 일본저축은행이 協和銀行으로(48년7월), 靑森貯蓄銀行(49년1월), 日本勸業銀行, 北海道 拓殖銀行, 日本興業銀行(이상 50년4월)이 보통은행으로 전환됨 (단, 日本興業銀行은 52년 長期信用銀行으로 다시 전환).

- 각종 금융기관의 보통은행으로의 전환에 의해 도시은행이 강화되고 이에 의해 현행 도시은행제도의 기초가 확립됨.

  ㅇ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 독점자본은 戰後 미국점령하에서 일본 독점자본 부활의 금융적 중추로서 재벌해체시에 있어서도 집중배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후 독점기업에의 계열융자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

  ㅇ 점령군이 재벌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외된 이유로는

    . 재벌소유의 상업은행주식이 몰수되어 일본정부당국자나 총사령부기관에 분할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제도의 붕괴를 우려함.
    . 집중배제정책의 성공이 재벌해체후 새로이 형성되는 회사들의 금융적인 건전성에 크게 의존함을 인식함.

. 당시 일본 대기업의 차입금에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음.
. 금융기관을 집중배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新 銀行法과 독점금지법이 은행측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이와 동시에 도시은행만으로는 독점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각종 전문금융기관이 설립되어 도시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무진회사의 상호은행으로의 전환, 시가지신용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신용금고로의 전환 (이상 51년) 등 중소기업금융기관의 구조가 개편되고, 동경은행의 외국환은행으로의 발족 (52년), 일본장기신용은행 (52년) 및 일본부동산은행 (57년)의 설립이 이루어짐.

  ㅇ 중소기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통은행업무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용창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은행의 기업금융을 보완하도록 함.

  ㅇ 지방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은 계열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뿐만 아니라 도시은행에 대한 콜(call)자금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ㅇ 따라서 戰後의 일본 금융기관의 전문화(직능분리화)는 독점적 은행자본의 독점기업에의 융자집중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6대 도시은행은 같은 계열의 금융기관, 기업집단과 함께 6대 금융자본그룹을 형성하고 그룹내 각사 상호간의 주식보유의 강화, 社長會의 결성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열기업간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해 옴.

  ㅇ 1964년이후 경기후퇴·독점기업의 설비과잉 등에 의해 자금수요가 완만해지고 1967년 후반에 국제수지악화를 계기로 금융긴축정책이 실시되자 독점적 금융기관 상호간, 독점적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금융기관간, 그리고 중소기업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됨.

  ㅇ 더구나 1960년대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외환·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독점자본간의 경쟁과 대립이 한층 격화됨.

  ㅇ 일본의 금융자본그룹들은 국내시장에서의 지배체제의 확립, 해외시장에서의 유리한 지위 확보 등을 위해 자본축적·집중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위한 격렬한 경쟁을 전개함.

  ㅇ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독점적 은행의 지위강화,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계열화가 진행되었고, 각 금융기관의 자본축적이 강화되었음.

- 196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산업재편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합병은 금융기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야기함.

  ㅇ 중화학·유통·금융 등 각 부문에서 계속적으로 거액의 설비투자를 행하여 기술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기업규모를 대형화하였으며, 중심이 되는 기업수를 줄여 거대 독점기업그룹에 의한 독점지배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옴.

  ㅇ 이 과정에서 기업의 합병·통합, 업무제휴, 공동투자, 설비공동이용, 생산 및 설비조정, 가격협정, 주식지분 강화를 포함한 계열화 및 여타형태의 기업결합 등 다양한 기업집중화 현상이 전개됨.

  ㅇ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金融電算化를 기초로 한 금융업무의 다양화, 업무제휴의 다양화, 同種·異種 金融機關간의 합병·전환의 법제적 보장 등을 통해 집중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 都市銀行의 所有構造와 金融機關間의 結合

-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호보유형태로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도시은행의 경우 5%를 초과하는 大株主는 거의 없으며, 은행주식이 지분율 5% 범위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분산되어 있음.

  ㅇ 6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형은행들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소속 생명보험회사가 최대주주로 되고, 2-3개의 다른 기업집단소속 생명보험회사들이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1% 내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ㅇ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달함.

  ㅇ 이들 대형 도시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주식보유비율과는 관계없이 은행회장이 행사하며, 회장의 지위는 후임자 지명 등을 통해 승계됨.

- 기업집단에 있는 은행은 주거래은행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동원·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대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계열화해 감.

  ㅇ 지방은행, 상호은행, 심지어는 신용금고까지 계열화하여 주식취득, 임원파견, 대출선변경 등을 유도함.

  ㅇ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도 같은 기업집단내의 기업에의 융자 혹은 주식취득을 우선시켜 이들이 대형은행의 역할을 보완하도록 함.

〈表 Ⅳ-1〉 日本 主要 銀行그룹의 株主現況(1993年 3月末 現在)

(單位: %)

第一勸業		さくら銀		三和銀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朝日生命*	4.46	太陽生命	3.50	日本生命*	4.51
日本生命	3.77	日本生命	3.50	明治生命	3.21
長銀	2.86	三井生命*	3.50	大同生命	3.04
第一生命	2.85	第一生命	2.95	第一生命	2.44
明治生命	1.83	トヨタ	2.56	トヨタ	2.21
日債銀	1.37	東芝	1.48	新日本製鐵	1.75
富國生命*	1.36	三井信託*	1.26	帝人*	1.68
川崎製鐵*	1.25	三井海上*	1.06	東洋信託*	1.56
日清紡績	1.20	明治生命	1.02	日立製作所*	1.43
日本通運*	1.03	持株會	0.95	日本通運*	1.42
三菱商事	1.02	三井不動産*	0.93	ダイハツ工業*	1.38
清水建設*	0.98	東レ	0.91	クボタ	1.38
石川島播磨重工*	0.92	長銀	0.89	長銀	1.15
日產火災*	0.92	三井物産*	0.88	大阪カス	1.13
東京海上	0.89	興銀	0.85	國際興業	1.04
日立製作所*	0.83	安田生命	0.84	大林組*	0.98
旭硝子	0.82	川崎製鐵	0.81	興亞火災	0.96
旭化成工業*	0.81	新日鐵	0.80	太陽生命	0.94
神戸製鋼	0.78	東洋信託	0.79	阪急電鐵*	0.94
伊藤忠商事*	0.77	安田信託	0.77	日債銀	0.88

富士銀		三菱銀		住友銀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安田生命*	4.90	明治生命*	5.80	住友生命*	6.08
第一生命	2.92	東京海上*	4.34	日本生命	4.45
日本生命	2.92	第一生命	3.53	松下電器	2.73
安田火災*	2.31	日本生命	3.17	住友信託*	2.62
新日本製鐵	2.11	三菱重工	3.03	三洋電機	2.01
日產自動車*	1.85	太陽生命	1.83	第一生命	1.86
安全信託	1.65	三菱信託*	1.83	鹿島建設	1.79
日本セメント*	1.64	三菱商事*	1.75	住友海上*	1.77
大成建設*	1.56	新日本製鐵	1.56	住友商事*	1.76
日本鋼管*	1.54	旭硝子*	1.49	新日本製鐵	1.69
日動火災	1.47	三菱電機*	1.46	クボタ	1.50
クボタ	1.47	三菱地所*	1.11	旭化成	1.39
日立製作所	1.24	麒麟麥酒*	1.01	住友金屬*	1.37
農林中金	1.18	日本郵船*	0.94	武田藥品	1.21
丸紅	1.15	日債銀	0.79	近藤紡績所	1.17
日清紡績	1.04	味の素	0.72	太陽生命	1.15
帝人	0.95	近鐵	0.71	小松製作所	1.15
日債銀	0.89	富國生命	0.65	日本電氣*	1.12
小松製作所	0.87	長銀	0.63	日本板硝子*	1.11
旭硝子	0.84	第百生命	0.57	住友化學*	1.06

あさひ銀		東海銀		東京銀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大株主名	構成比
千代田銀行	4.00	トヨタ	4.98	明治生命	5.78
安田銀行	3.37	千代田生命	3.82	日本生命	5.39
第一生命	2.83	日本生命	2.73	第一生命	4.94
日本生命	2.41	粵島	2.66	太陽生命	2.74
第百生命	2.18	第一生命	2.24	三菱商事	2.04
松下電器	1.63	明治生命	2.24	あくら銀	1.77
三洋電機	1.63	住友生命	1.73	三菱信託	1.68
朝日生命	1.58	朝日生命	1.65	三菱銀	1.55
住友生命	1.33	近藤紡績所	1.23	三井信託	1.55
興銀	1.20	千代田火災	0.99	東京海上	1.52
鹿島建設	1.13			農林中金	1.51
明治生命	1.05			新日鐵	1.48
日產自動車	1.01			住友生命	1.40
太陽生命	0.98			安田信託	1.35
日本火災	0.87			住友商事	1.22
日動火災	0.86			興銀	1.13
三井信託	0.81			長銀	1.11
日興證券	0.79			トヨタ	1.11
あさひ銀	0.78			富士銀	1.16
日債銀	0.75			日產	1.05

註: *)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임.

資料: 日本金融通信社, 「日本金融名鑑 上卷」, 1993. 9.

3. 銀行과 企業間의 結合

- 대규모 기업집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금융자본의 구조는 기업집단별로 제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며, 세계적 기업의 발전 등에 의해 兩者간의 융합형태도 변화됨.

  ㅇ 독점기업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더욱 고도화되고 독점기업의 규모가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생산과 자본의 축적·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산업부문별로 금융자본그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은행과 산업의 독점체의 융합·유착의 내용이 생산과정으로부터 유통과정으로 발전하고 더구나 국가기관과의 결합, 국제적인 자본결합을 포함하여 더욱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음.

- 1949년 법인간 상호주식 보유가 가능해지자 은행을 중심으로 과거의 재벌그룹에 소속되었던 기업들이 상호주식보유에 의해 새로이 기업집단을 형성함.

  ㅇ 이러한 법인주주화경향은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됨.

  ㅇ 더구나 일본의 OECD가입(1964년)후 1966년 1차 자본자유화계획이 시행되자 일본기업들은 외국기업에 의한 자본잠식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주도하에 안정주 정책을 시행하여 유동성이 큰 개인 주식보유비율을 감소시키고 대신 유동성이 작은 법인주주의 持分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킴.

- 새로이 형성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기관은 계열기업 주식의 상당부분을 보유하면서 또한 계열기업에 대한 주요 신용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

- 이차대전이후 일본의 산업자금공급에 있어서는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른바 간접금융구조가 형성되어 옴.

- 도시은행은 일본 금융자본 금융과두체제에 있어 독점적 은행자본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ㅇ 三菱, 三和, 三井, 富士, 住友, 第一 등 6대 도시은행은 각자의 계열기업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의 대부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계열의 다른 금융기관들(신탁은행, 生保·損保會社)에 의한 계열융자 비중도 상당히 높았음.

  ㅇ 이들 대형 도시은행들은 서로 다른 도시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동융자를 제공함.

〈表 Ⅳ-2〉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1990年 3月末 現在)

	三井	三菱	住友	芙蓉	三和	第一勸銀
都市銀行	三井銀行	三菱銀行	住友銀行	富士銀行	三和銀行	第一勸業銀行
信託銀行	三井信託銀行	三菱 信託銀行	住友信託銀行	安田信託銀行	東洋信託銀行	-
生命保險會社	三井生命	明治生命	住友生命	安田生命	日本生命	朝日生命 富國生命
損害保險會社	大正海上火災	東京海上火災	住友海上火災	安田火災海上	-	日產火災海上 大成火災海上
證券會社	-	-	-	-	-	日本勸業角丸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를 통한 기업집단의 형성과 기업집단내 주거래은행제도의 정착은 경영권 안정, 그룹내 기업간의 상호보조를 통한 보험 체제 구축, 대리인 비용의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이우관(1993)].

  ○ 은행들은 기업들에 신용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을 감시·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였음.

  ○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에 필요한 대단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이나 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

4. 銀行資本과 産業資本의 具體的 結合形態

- 산업자본과 은행자본과의 독점적 결합인 금융자본의 형성계기로는 주식소유, 은행신용공여, 그리고 人的 結合 등을 들 수 있음.

가. 株式所有

- 주식소유에 의한 참여제도에 의해 親會社-子會社-孫會社 형태의 계열을 형성하고 下方支配的인 關係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자본에의 자본집중이 진전되어 옴.

  ○ 주식소유형태에 있어서 개인·친척에 의한 소유보다 기관투자가에 의한 주식소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 특히 거대 상업은행이 기타 제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산업기업과의 융합을 강화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집단전체의 平均持株率보다는 여전히 높음.

○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77년 독점금지법 제11조가 개정되어 持株制限比率이 5%(보험회사는 10%)로 낮춰진데 기인하는 바가 큼.

○ 1989년(1981년) 현재 금융기관별 6대기업집단 평균 持株率은 도시은행이 4.3%(5.1%), 生保 4.1%(4.3%), 신탁은행 2.7%(2.7%), 損保 1.9%(2.1%)의 順으로 되어 있음.

○ 또한 각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持株率의 합계를 각 금융기관수로 나눈 금융기관의 株式依存率은 1989년 현재 도시은행이 22.68%, 신탁은행 23.48%, 損保 23.84%이며, 금융기관 전체의 평균 의존율은 22.48%에 이르고 있음.

- 금융기관은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동일기업집단의 계열기업과 주식을 상호 소유하고 있음.

○ 기업집단내의 금융기관이 동일기업집단의 계열기업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數의 比率(주식소유관계율)은 기업집단마다 거의 100%에 가까우며, 동일기업집단내의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수의 비율도 90%이상이 대부분임.

나. 銀行融資

- 독점적 은행은 은행자본의 축적·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독점기업과의 융합을 강화함.

○ 계열융자체제의 根幹이 되는 것은 기업집단체제이며, 은행이 기업집단내에서 동일집단소속 기업들에 대해 계열융자를 하는 형태를 취함.

∴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던 은행도 계열융자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집단을 형성해 감.

○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의 차입·결제, 예금의 예입, 換서비스의 의존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특정한 은행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은행은 산업기업과의 지속적인 화폐·신용거래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영업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신용의 신축적 조절을 통해 산업기업에의 통제를 증대함.

○ 기업집단소속 은행은 계열기업 혹은 非系列企業과 대출과 예금의 상호거래를 하며, 법인예금의 대부분이 양건예금이기 때문에 이의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

〈表 Ⅳ-3〉 株式所有關係로 본 金融機關의 企業集團소속 企業에의 依存率

(單位 : %

企業集團名 年度 金融機關別		三井	三菱	住友	旧財閥系企業集團平均	芙蓉	三和	一勸	銀行系企業集團平均	六大企業集團平均
都市銀行	81	21.4	27.3	28.2	25.3	29.40	26.9	2..5	26.6	26.0
	87	28.47	25.81	23.46	25.91	27.65	24.93	22.56	25.05	25.48
	89	21.46	24.60	18.59	21.55	26.80	23.02	21.63	23.82	22.68
信託銀行	81	24.9	31.6	32.1	29.5	29.6	26.8	-	28.2	29.0
	87	32.19	29.24	31.70	31.04	28.52	24.17	-	26.35	29.15
	89	23.03	25.34	26.35	24.91	24.64	18.03	-	21.34	23.48
損害保險會社	81	33.3	20.7	27.3	27.1	22.0	-	36.5	29.3	27.95
	87	32.82	21.39	25.77	26.66	17.64	-	31.26	24.45	25.78
	89	26.86	21.13	23.22	23.74	16.97	-	31.02	24.00	23.84
證券會社	81	-	-	-	-	-	-	11.1	11.1	11.1
	87	-	-	-	-	-	-	13.74	13.74	13.74
	89	-	-	-	-	-	-	11.4	11.4	11.4
金融機關平均	81	26.53	26.53	28.87	27.31	27.00	26.85	23.70	25.85	26.58
	87	31.16	25.48	26.98	27.87	24.60	24.55	22.52	23.89	25.38
	89	23.78	23.69	22.72	23.40	22.80	20.53	21.36	21.56	22.48
各企業集團의 株式保有率	81	23.13	36.93	36.57	32.21	18.80	19.95	17.50	18.75	25.48
	87	21.35	36.04	29.40	28.93	17.11	17.05	14.92	16.36	22.65
	89	19.46	35.45	27.46	27.46	16.39	16.46	14.60	15.82	21.64

註: 1. 金融機關의 株式依存率

$$= \frac{\text{各金融機關에 대한 同一企業集團소속 企業各社의 持株率의 合計}}{\text{各 金融機關의 數}}$$

2. 企業集團平均은 各企業集團 比率의 單純平均임.
3. 金融機關平均은 金融機關別 比率의 單純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 그러나 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한 融資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임.

  ㅇ 기업이 계열융자만에 의존할 경우 主去來銀行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임.

  ㅇ 또한 은행측에서 보더라도 모든 자금을 계열융자로 돌릴 경우 여유자금이 있는 한 계열기업획득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계열독점기업이 경영난에 빠질 경우 그 위험을 은행혼자 부담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은행들은 계열관계를 확정하여 주거래은행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 다른 은행들과 분야협정을 체결하여 계열기업이 資金調達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들어 대기업은 내부자금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주식과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여감으로써 은행에 대한 차입의존도를 급속히 저하시키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보통사채 및 보증채 발행에 대한 보증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私募債의 알선자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ㅇ 또한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은행대부의 중요성이 1980년대에 들어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表 Ⅳ-4〉 大企業 및 中小企業의 資金調達 構造(期間平均, %)

기 간	1957-74	1975-79	1980-84	1985-89
	대기업(자본금 10억엔 이상)			
內部資金	28.0	38.3	42.9	43.5
借 入 金	35.5	30.0	21.4	15.2
企業間信用	17.1	11.2	8.1	0.0
證券發行	7.3	16.4	17.8	29.4
社 債	3.0	6.8	5.0	12.8
增 資	4.2	9.6	12.8	16.6
	중 소 기 업			
內部資金	31.2	38.3	42.3	37.4
借 入 金	37.1	30.0	40.1	54.4
企業間信用	20.0	23.2	11.6	8.0
證券發行	1.7	-0.5	-0.4	-11.1
社債	0.0	0.0	0.0	-5.4
增資	1.6	-0.5	-0.4	-5.6

資料: 大藏省, 『法人企業統計年報』[堀內昭義(1993), p.9]

- 도시은행 및 신탁은행이 대출관계를 맺고 있는 동일기업집단소속 기업의 비율은 6대 기업집단 평균으로 각각 97.97%와 95.59%에 이르고 있음.

  ○ 각 기업집단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금총액에서 동일기업집단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3.13%로서 1981년의 7.2%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

  ○ 기업집단별로는 모든 기업집단의 대출금의존율이 1981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졌지만, 1987년에 비해서는 三井, 三菱, 第一勸銀 그룹은 높아진 반면, 다른 기업집단에서는 동 비율이 낮아짐.

  ○ 금융기관별로는 신탁은행이 5.43%로 가장 높으며, 生保 4.45%, 損保 3.24%, 도시은행 2.69%의 순으로 낮아짐.

〈表 Ⅳ-5〉 貸出金 依存率 現況

(單位 : %)

企業集團名 年度 金融機關名		三井	三菱	住友	旧財閥系 企業集團 平均	芙蓉	三和	一勸	銀行系 企業集團 平均	六大企業 集團平均
都市銀行	81	5.2	6.0	5.3	5.5	6.2	8.9	9.3	8.2	6.9
	87	4.00	3.37	2.49	3.19	2.74	4.65	3.43	3.59	3.41
	89	3.13	2.72	1.61	2.39	1.94	3.22	3.61	2.95	2.69
信託銀行	81	6.1	8.5	6.3	7.0	8.2	12.2	-	10.0	7.9
	87	3.59	4.12	1.38	3.05	3.65	6.99	-	5.09	3.70
	89	5.36	6.31	4.07	5.28	4.99	6.73	-	5.73	5.43
生命保險會社	81	12.8	11.0	5.0	8.6	8.3	3.6	10.9	6.1	7.1
	87	5.76	1.01	2.52	1.78	7.32	2.97	10.36	5.88	3.78
	89	8.67	5.84	1.45	4.28	5.54	2.84	8.66	4.56	4.45
損害保險會社	81	16.2	11.7	10.8	12.6	4.5	-	5.0	4.6	9.7
	87	4.23	4.24	2.31	3.85	2.52	-	4.47	2.96	3.57
	89	8.10	2.13	1.35	3.36	1.90	-	7.04	3.30	3.24
合計	81	6.2	7.3	5.6	6.4	6.8	8.2	9.5	8.1	7.2
	87	4.01	2.81	2.18	2.90	3.17	5.85	4.04	4.31	3.52
	89	4.19	3.63	1.98	3.15	2.58	3.49	4.12	3.12	3.13

註: 1. 貸出金 依存率

$$= \frac{\text{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同一企業集團소속 企業에의 貸出金}}{\text{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貸出總額}} \times 100$$

2.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총차입금 중 동일 기업집단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6대기업집단 평균이 17.48%로 1982년의 17.52%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

  ㅇ 기업집단별로는 住友가 26.58%로 가장 높고, 第一勸銀이 12.1%로 가장 낮으며, 三菱 및 三和를 제외한 4대 기업집단에서는 동 비율이 1987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고 있음.

- 각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借入先 금융기관을 보면, 모든 기업집단에 있어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보다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하여 1989년 현재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총차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ㅇ 또한 은행계 기업집단에서도 동일기업집단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보다도 다른 기업집단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表 Ⅳ-6〉 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에의 借入金 依存率 推移

(單位 : %)

企業集團名 / 年度 / 項目		三井	三菱	住友	旧財閥系企業集團平均	芙蓉	三和	一勸	銀行系企業集團平均	六大企業集團平均
長期借入金	81	17.77	23.19	26.52	22.07	14.83	17.64	8.57	13.10	16.57
	87	18.70	21.82	24.99	21.60	16.56	15.95	9.34	13.00	16.05
	89	22.07	21.03	25.50	22.26	16.93	15.50	10.79	13.59	16.68
短期借入金	81	20.00	21.36	25.19	21.99	17.66	20.00	14.33	17.03	18.78
	87	23.96	19.36	23.86	22.04	19.88	18.56	13.02	16.30	18.29
	89	26.04	15.99	27.32	21.12	21.75	18.20	13.12	16.34	18.12
合計	81	18.62	22.42	25.94	22.04	16.01	18.72	11.16	14.85	17.52
	87	21.64	20.48	24.35	21.84	18.34	17.50	11.41	14.88	17.32
	89	23.99	17.95	26.58	21.61	19.46	16.99	12.10	15.11	17.48

註: 1. 借入金依存率

$$= \frac{\text{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text{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 合計}} \times 100$$

2. 1981년은 上場企業 및 生命保險會社만을 대상으로 함.
3.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表 Ⅳ-7〉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依存率(1989年)

(單位 : %)

借入先名 \ 企業集團名		三井	三菱	住友	旧財閥系企業集團平均	芙蓉	三和	一勸	銀行系企業集團平均	六大企業集團平均
長期借入金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22.07	21.03	25.50	22.26	16.93	15.50	10.79	13.59	16.68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20.06	19.46	9.38	17.83	22.50	21.16	29.68	25.39	22.69
	其他 金融機關	56.41	55.07	63.31	57.11	58.50	57.30	56.05	56.95	57.01
	其他	1.47	4.43	1.81	2.81	2.08	6.04	3.48	4.07	3.62
短期借入金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26.04	15.99	27.32	21.12	21.75	18.20	13.12	16.35	18.12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23.93	13.71	7.98	15.35	23.57	23.65	22.30	22.98	20.14
	其他 金融機關	49.54	31.14	63.09	42.86	53.74	51.62	56.06	54.15	49.96
	其他	0.49	39.16	1.60	20.67	0.94	6.53	8.53	6.53	11.78
長·短期合計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23.99	17.95	26.58	21.61	19.46	16.99	12.10	15.11	17.48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21.93	15.95	8.55	16.42	23.06	22.53	25.53	24.06	21.27
	其他 金融機關	53.08	40.47	63.18	49.04	56.00	54.18	56.06	55.41	53.08
	其他	0.99	25.63	1.69	12.93	1.48	6.31	6.32	5.42	8.16

註: 1. 借入金依存率은 各 項目에 속하는 借入先으로부터의 借入金이 企業集團 所屬 企業의 借入金의 合計에서 정하는 比率임.
2.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의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다. 人的 結合

- 독점기업들에 있어서의 重役의 相互兼任은 주식소유나 융자관계등과 결합되어 금융자본의 융합강화 및 기업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금융기관이 동일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임원을 파견하는 것은 기업집단별로 양상은 다르나,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소속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1989년 현재 6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중 49.5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동일 기업집단내의 도시은행으로부터의 임원파견을 받아들이고 있음.

○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임원중 도시은행으로부터 파견된 임원의 비율이 51.6%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1社당 파견인수는 0.77명으로 많지 않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人的關係의 정도도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며, 동 관계의 强度를 표시하는 은행의 파견회사비율이나 파견 임원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5. 銀行의 非銀行業務 進出

- 일본의 『私的 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1947. 4.14 제정, 1977년 개정) 제11조는 금융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무진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국내회사 발행주식의 5% (보험회사는 10%) 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동 주식보유한도는 1953년 개정법에 의해 5%에서 10%로 높아졌다가 1977년 법개정시 다시 5%로 낮춰짐.

  ○ 은행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미국의 Federal Reserve Act Section 23 A와 같은 子會社 수행가능업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100% 子會社 방식으로 원하는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함.

  ○ 은행이 子會社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子會社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여야 함.

- 단,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재벌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소유에 의한 국내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이 純粹持株會社*는 금지하지만 事業持株會社**적 기업-은행 복합그룹의 형성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특정형태의 사업활동을 영위함이 없이 회사의 주식소유에 의해 해당회사의 경영을 관리·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表 Ⅳ 8〉 日本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1993年 6月 30日 現在)

(單位: %)

第一勸銀			さくら銀			三和銀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第一勸銀ハート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さくら事務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三和オペレーションビジネス	100	業務代行
第一勸銀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さくらオフィスサービス	100	〃	三和オペレーションビジネス東京	100	〃
第一勸銀オフィスサービス	100	〃	さくら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三和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第一勸銀不動産調査センター	100	〃	さくらスタッフサービス	100	〃	三和ビジネスサービス東京	100	〃
			さくら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三和モーゲッジサービス	100	〃
第一勸銀信用開發	5.0	信用保證	さくら新宿代理店	100	〃	三和インターナショナルオペレーションサービス	100	〃
			さくら西銀代理店	100	〃	三和スタッフサービス	100	〃
東京リース	4.9	リース						
センチュリーリーシング·システム	4.4	〃	東日本總合信用	5.0	信用保證	三和信用保證	5.0	信用保證
			宇都宮總合信用	5.0	〃			
第一勸業投資顧問	5.0	投資諮問	三菱保證キャピタル	5.0	〃	三和投資顧問	5.0	投資諮問
			さくら投資顧問	5.0	投資諮問			
第一勸業經營センター	5.0	經營相談				三和ビジネスクレジット	5.0	融資 振當證券 리스
第一勸業總合研究所	5.0	經濟研究所	さくら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5.0	融資 集金代行			
			三井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5.0	〃			
第一勸業情報システム	5.0	計算受託				三和キャピタル	5.0	創業投資
日本オー·シー·アール	5.0	情報開發	さくら總合研究所	5.0	經濟研究所	三和總合研究所	5.0	經營相談
							5.0	經濟研究所
第一勸業ハウジングセンター	5.0	住宅貸出	さくらソフトウェアサービス	5.0	소프트웨어			
			さくらケーシーエス	5.0	〃	三和システム開發	100	소프트웨어
第一勸業ファクタリング	5.0	팩토링	さくらコンピュータサービス	5.0	情報處理			
						三和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	5.0	VAN 情報處理
第一勸業カード	5.0	信用카드	さくらカード	5.0	카드業務			
ユニオンクレジット	5.0							
			さくら抵當證券	5.0	抵當證券販賣	三和カードサービス	5.0	카드業務
ハートファイナンス	5.0	消費者金融				ジェーシービー	5.0	〃
東京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5.0	創業投資	さくらキャピタル	0.0	經營技術指導			
日實販	5.0	證券販賣						

富士銀			三菱銀			住友銀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富士ビジネス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ダイヤモンドテクノサービス	100	信用保證	住友オフィス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富士ビジネスエイジェンシー	100	〃	ダイヤ信總	100		住銀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富士キャリアビューロー	100	〃	ダイヤモンド事務サービス	100		住銀モーゲージサービス	100	〃
富士銀厚生サービス	100	〃	菱信ダイヤモンドエージェンシー	100		住友リターサービス	100	〃
富士銀ビルテイング	100	〃		100		住友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富士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ダイヤモンドスタッフサービス	100		住キャリア開發	100	〃
			ダイヤモンド不動産	100		住サービス	100	〃
			ダイヤモンド不動産調査					
富士銀クレジット	5.0	信用保證				住友クレジットサービス	5.0	信用카드
富士銀ファクター	5.0	〃	ダイヤモンドコンスタム開發	100	소프트웨어	住銀アメックスサービス	5.0	金錢貸付
			ダイヤモンドコンピューターサービス	5.0	〃			
住宅ローン	5.0	住宅貸出				住銀リース	4.9	리스
富士銀投資顧問	5.0	投資諮問	ディーシーカード	5.0	信用카드			
						日本總合研究所	5.0	經濟研究所
富士銀キャピタル	5.0	經營相談	ダイヤモンドリース	5.0	리스			
						住友ビジネスコンサルテイング	5.0	經營諮問
富士總合研究所	5.0	經濟研究所	ダイヤモンドキャピタル	5.0	企業公開相談			
						住銀ファイナンス	5.0	抵當證券 팩토링
富士オペレーションサービス	5.0	計算受託						
			ダイヤモンド信用保證	5.0	住宅貸出保證			
富士ソフトウェアサービス	5.0	소프트웨어				東京總合信用	5.0	金錢債券貸
						日本總合信用	5.0	受 信用保證 集金代行業務
ユニオンクレジット	5.0	카드業務	ダイヤモンドファクター	5.0	팩토링			
富士銀クレジット	5.0	〃						
			ダイヤモンドビジネスコンサルティング	5.0	經營管理	住銀保證	5.0	信用保證
			ダイヤモンド抵當證券	5.0	抵當證券販賣·長期融資	住銀投資顧問銀	5.0	投資諮問
			コムネス	5.0	VAN業務			
			ダイヤモンド投資顧問	5.0	投資諮問			
			ダイヤモンドビジネスエンジニアリング	5.0	소프트웨어			

あさひ銀			東海銀			東京銀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子會社	지분율	업무형태
あさひ銀總合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東海總合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東銀ビジネスサービス	100	業務代行
あさひ銀厚生サービス	100	〃	東海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東銀オフィスサービス	100	〃
あさひ銀ビジネスサービス	100	〃	東海キャリアサービス	100	〃	東銀キャリア開發	100	〃
あさひ銀事務サービス	100	〃	東海モーゲッジサービス	100	〃			
あさひ銀サプライ	100	〃	東明	100	〃	東銀リース	5.0	리스
あさひ銀ビジネスエージェンシー	100	〃	東海ビルメンテナンス	100	〃			
あさひ銀キャリアサービス	100	〃				東銀ファクター	5.0	팩토링
あさひ銀ビル管理	100	〃	朝日東海ビル管理	33.3	빌딩管理			
あさひ銀ビルディング	100	〃				東銀投資顧問	5.0	投資諮問
			ミリオン信用保證	5.0	信用保證			
あさひ銀クレジット	5.0	信用保證				東銀リサーチインターナショナル	5.0	經營相談
あさひ銀保證	5.0	〃	セントラル抵當證券	5.0	抵當證券業務			
						オーバーシーズプロジェクトマネージメントコンサルタンツ	4.0	
あさひ銀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5.0	資格債權買取業務	セントラル投資顧問	5.0	投資諮問			
あさひ銀ファクター	5.0							
			セントラルキャピタル	5.0	創業投資	東銀システム開發	5.0	소프트웨어
共同抵當證券	5.0	抵當證券業務	丸万ファイナンス	5.0	〃	東京クレジットサービス	5.0	카드業務
昭和リース	5.0	리스	東海總合研究所	5.0	經營相談 經濟研究所			
あさひ銀リース	5.0			5.0				
あさひ銀投資顧問	5.0	投資諮問	東海バンキングソフトウェア	100	소프트웨어			
あさひ銀事業投資	5.0	創業投資	セントラルシステムズ	5.0	VAN 業務			
あさひ銀總合研究所	5.0	經營相談 經濟研究所	ミリオンカードサービス	5.0	카드業務			
	5.0							
			セントラルファクター	5.0	팩토링			
あさひ銀情報システム	5.0	計算受託						
あさひ銀總合システム	5.0							
あさひ銀システム開發	100	소프트웨어						
あさひ銀ソフトウェア	100							
あさひ銀クレジット	5.0	카드業務						
あさひ銀ユニオンクレジット	5.0							

註: 1) 富士·三菱銀行(1993년 5월말 현재), 東京銀行(1993년 7월말 현재).

資料: 各 銀行 營業報告書 參照.

- 100% 출자회사의 업무취급범위

  ○ 은행의 대리점 업무: 예금, 소비자금융 등 은행업무의 대리

  ○ 은행업무에 관계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관계은행을 위한 업무: 업무용부동산 관리, 직원복리후생시설 관리, 기타 은행업무대행 (집배금업무, 담보관리업무, 광고선전업무 등)

- 5%이하 출자회사의 업무취급범위

  ○ 은행의 부수업무: 신용보증, 팩토링, 신용카드, 저당증권업무 등

  ○ 은행의 주변업무: 창업투자, 리스, 주택금융, 경영상담, 투자자문, 계산수탁 등

- 일본은 1992년 6월 子會社설립을 통한 은행업·신탁업·증권업의 점진적, 단계적 상호진출 허용,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와 금융기관의 증권화관련상품 취급허용,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개혁법을 제정하여 關聯 大藏省 政省令과 함께 199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業種別 子會社의 업무범위, 업종간 방화벽 (fire walls) 설치 등에 관해서는 금융제도개혁 실시후의 상황, 시장의 상황, 증권회사 및 금융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법시행후 2-3년내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음.

〈表 Ⅳ-9〉 金融改革法상의 子會社 業務取扱範圍

A. 證券子會社

		공공채	보통사채	투자신탁	전환사채, 워런트채, 워 런 트	주 식, 주가지수·선물옵션
발행(인수, 모집등)		○	○	○	○	×
유 통	딜 링	○	○	○	×	×
	브로커	○	○	○	×	×

B. 信託子會社

금전신탁		금 전 이 외 신 탁	
대부신탁	×	유가증권신탁	○
연금신탁	×	금전채권신탁	○
합동신탁	×	동산신탁	○
특정금전신탁	×	부동산신탁	○
지정단위신탁	○		
증권투자신탁	○		

資料: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 1992.2.

〈表 Ⅳ-10〉 業種間 FIRE WALLS의 主要內容

주요 폐해방지조치	구체적인 내용
主去來銀行 規制	· 主受託銀行의 證券子會社는 社債의 인수주간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순자산 5천만엔의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때 모은행이 주수탁이 되는 경우, 과거 2년동안 3회중 2회이상 주수탁이 되거나 과거 2년동아 2회발행 모두 주수탁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동 규제를 적용
共同訪問 制限	· 고객의 요청에 기초한 경우를 제외한 모은행의 융자부문직원과 증권자회사의 인수부문직원이 발행회사의 재무담당자를 방문하는 등의 공동방문 금지
母金融機關과 證券子會社의 인사교류에 관한 規制 (no return rule)	· 증권자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은 모은행의 임원이 아니여야 하며, 離職후 약 2년동안 모은행의 증권담당 임원 및 증권관련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음 · 증권자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임원은 모은행으로부터 전적한 경우 이직후 약 2년동안 모은행의 증권담당 임원 및 증권관련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음 · 설립후 5년까지 본래직원(모은행에서 전적하여 연속 3년이상 증권자회사에 근무한 직원 포함)을 약 50%로 인상
점포등의 共有에 관한 規制	· 증권자회사의 본사는 모금융기관의 본사와 동일한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 · 컴퓨터, 딜링룸 등의 공유도 규제
기타	· 모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계된 증권자회사의 수입비율을 제한 · 증권자회사가 모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주간사가 되는 것을 제한 · 증권자회사의 모금융기관을 이용한 끼워넣기 판매 금지 · 모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증권자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 당해채무의 상황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공시를 증권자회사에 의무화 · 증권자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에 대해 모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행하는 것을 알리면서 증권자회사가 당해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 · 모금융기관의 거래에서 통상조건으로의 거래(arm's length rule)적용을 증권자회사에 의무화 · 증권자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모금융기관에 의한 판매를 제한

資料: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 1992.2.

- 新規設立 金融子會社 現況

〈 證券子會社 〉

ㅇ 제1진으로 일본흥업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가 작년 7월 2일 증권자회사를 설립하여 7월26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9월 16일 2개 신탁은행의 증권자회사가 설립되어 1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 이들 증권자회사들은 공공채·보통사채·금융채 등의 거래업무를 통해 채권딜링 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하고 있으며, 社債引受業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그러나 CB·WB 인수업무는 유통업무에 대한 제약때문에 幹事資格의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함.

. 개인투자자를 향한 retail 판매에 있어서는 계열증권의 협력을 구할 방침으로 있음 (興銀: 和光·新日本, 長銀: 第一 등).

. 금리저하국면에서 기대이상의 채권매매익을 시현함으로써 인건비·부동산관련비 등을 흡수하고도 경상이익을 거두고 있음.

ㅇ 도시은행 상위 6행은 금년 4월경에 증권자회사의 설립을 신청하고 7월경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으나, 거품경제의 붕괴후 증권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장성이 증권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신규진입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규제는 증권시장상황이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임.

會社名 (業務開始)	資本金 資本準備金	任員	從業員	主要取扱 業務
興銀證券 (93.7.26)	250億円 100	10人	128人	私債引受, 公共債等 dealing
長銀證券 (93.7.26)	150 50	7	78	私債引受, 公共債等 dealing 金融派生商品
農中證券 (93.7.26)	150 50	6	36	私債引受, 公共債等 dealing 投信販賣(금년가을 以後)
三菱信證券 (93.11.1)	150 50	6	29	私債引受, 公共債等 dealing
住信證券 (93.11.1)	150 50	8	30	私債引受, 公共債等 dealing의 一部

資料: さくら銀行

〈 信託銀行子會社 〉

○ 대형 증권회사 4사와 동경은행이 8월 24일 신탁은행자회사를 설립하여 10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 투신수탁은 계열투신위탁회사로부터의 수탁분이 신규설정액의 25%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은 어려울 전망임.

. 현재로는 투자신탁·fund trust를 중심으로 신탁기능을 이용한 新商品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 또한 野村는 外換딜링, 日興은 자금·外換딜링 등 은행업무에도 비중을 둘 방침임.

○ 신탁업무중 연금신탁·단순운용지정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등 수익성이 좋은 업무는 금지되고 있어 대형 도시은행들이 신탁은행자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會社名	資本金	任員	從業員	主要取扱業務
野村信託	300億円	7人	64人	投信受託, fund trust(특정금외신탁)
大和インタナショナル信託	200	6	70	投信受託, fund trust global custody (採來에 취급예정)
日興信託	200	8	40	投金·外換 dealing, 投信受託 fund trust
山一信託	200	5	51	投信受託, fund trust 및 그에 수반되는 外換
東京信託	100	5	16	fund trust, 金錢債權信託受託

資料: さくら銀行

V. 獨逸 兼業銀行의 經營

1. Universal Banking 現況

- 최근에 개정된 은행법 (제1조)에 은행(Kreditinstitute)은 "예금, 대출, 할인, 증권중개, 증권任置, 투자신탁(providing trust (safe custody) services and operating investment funds), 채권인수(factoring), 보증(providing financial guarantees), 지로업무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됨.

  ㅇ 따라서 법적 형태, 크기 조직 및 영업범위는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행의 대부분은 보통은행업무, 장기신용은행업무, 신탁업무, 증권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겸업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ㅇ 1960년대 말까지의 겸업은행 성장에 기여한 요인들

  . 개인들의 소득증가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대체로 충족된 후 보다 장기의 투자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신용에 대한 요구 증대

  . 1967년 이후의 금리의 완전한 자유화

  . 독일 기업들이 해외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독일 은행들도 국제금융업무에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불가피해짐.

- 은행업 영위조건: 은행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연방은행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ㅇ 적정한 자본금의 보유 (5백만 ECU (약 천만 마르크) 이상)

  ㅇ 인가신청인 또는 경영인은 개인적 신뢰성과 전문적 은행경영자격의 소유자일 것.

  ㅇ 실질적인 영업책임자가 2명이상이어야 함.

- 독일은행은 크게 겸업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되며 ([圖 V-1] 참조), 현재 독일은행의 75%이상이 겸업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완전한 겸업은행은 3대은행과 일부 대형지방은행에 국한됨.

  ㅇ 독일의 겸업은행은 342개의 민영상업은행(3대은행, 200개 지방은행, 80개 개인은행 및 60개 외은지점)과 740여개의 공적 저축은행, 그리고 3100개 정도의 신용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은행의 영업규모비중은 30:50:20 정도이며, 소유구조는 다르지만 최근의 경쟁심화로 이들 은행의 업무범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

[圖 V-1] 獨逸의 銀行制度[1](1991年末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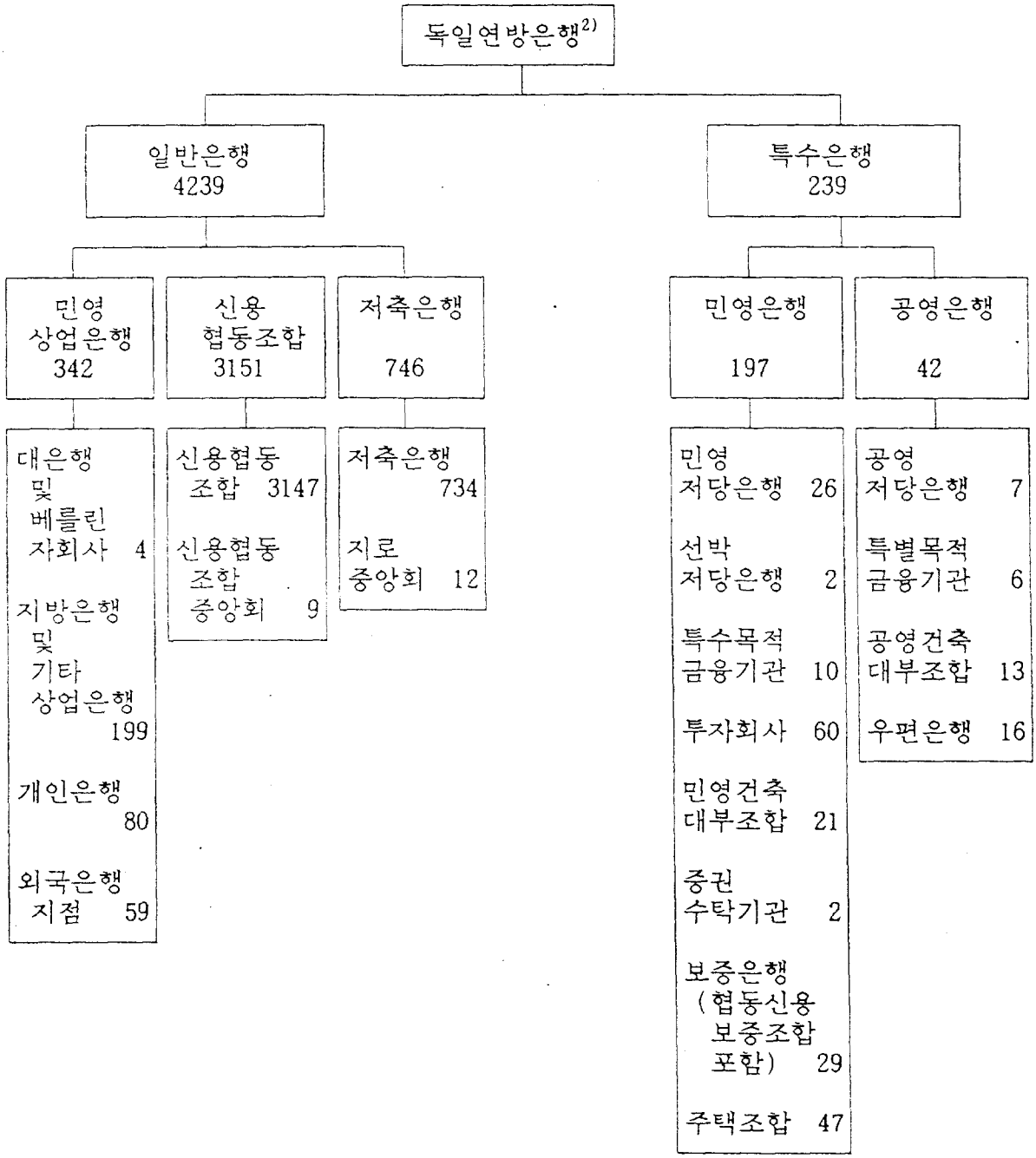

註: 1) 東獨 포함.
2) 11개의 주중앙은행 포함.
3) 수치는 기관수를 가리킴.

資料: 독일 연방은행

- 1950년대 후반의 제반규제완화조치와 '67년 금리자유화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수는 은행간 통합 또는 합병, 은행의 도산 등으로 인해 '60년의 13,000여개에서 '91년에는 4,453개로 계속 감소하여 온 반면, 은행의 점포수는 동기간중 16,768개에서 44,872개로 늘어남으로써 점포당 인구수는 1,864명에서 1,620으로 오히려 줄어듬.

〈表 V-1〉 獨逸의 銀行 및 店鋪數[1] 推移

연 도	은행수	지점수	총은행 점포수	인구수 (천명)	은행점포당 인구수
1960	13 259	16 768	30 027	55 958	1 864
1970	8 549	32 251	40 800	61 001	1 495
1980	5 355	39 311	44 666	61 658	1 380
1990	4 710	44 352	49 062	79 670	1 625
1991	4 453	44 872	49 325	80 000	1 620

註: 1) 1990년부터는 舊東獨地域機關 포함
資料: 독일 연방은행

- 독일은행들의 영업규모는 1991년말 현재 일반은행이 4조 2,146억마르크로서 전 금융기관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저축은행의 비중이 35.9%로서 민영상업은행의 25.8%, 신용협동조합의 15.0%보다 훨씬 높음. (〈表 V-2〉 참조)

- 최근에 들어 독일 금융기관들은 80년대부터 추진하여 온 金融綜合化(Allfinanz)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ㅇ 금융규제의 완화, 국가간 자본거래 증가 및 증권화라는 국제금융의 추세와 '90년 10월의 동서독 통일, '93년 1월의 EC 단일시장 실현 및 자금의 수요공급자의 행태변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금융기관들의 경쟁력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ㅇ 또한 低價의 안정적 자금조달상의 어려움과 기업 자금수요 감소에 따른 대기업금융상의 경쟁 격화 및 기존 도매금융시장에서의 이윤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감소와 시장점유도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소매금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겸업은행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공영·민영 주택저축은행, 공영·민영 저당은행, 투자신탁 등과의 종래의 협력·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참가비율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음. 그리고 이전에 특별한 협력, 자본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子會社 설립을 통해 금융종합화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민영상업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 팩토링, 리스, 부동산 거래업무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表 V-5> 참조), 단기금융업무 위주로 영업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장기금융업무에도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表 V-2> 獨逸의 銀行그룹現況 (1991年末 現在)

	은행수	지점수[1]	총은행 점포수	자 본 (10억 DM)	총자산 (10억 DM)	
1 일반은행	4 239	44 652	48 891	185.7	4214.6	<76.7>
민영상업은행	342	6 675	7 017	91.1	1415.8	<25.8>
-대은행[2]	4	3 423	3 427	34.3	508.0	<9.2>
-지방기타상업은행	199	2 903	3 102	49.1	767.3	<14.0>
-개인은행	80	312	392	3.6	67.6	< 1.2>
-외국은행지점	59	37	96	4.1	72.9	< 1.3>
저축은행	746	19 835	20 631	63.3	1973.0	<35.9>
-저축은행	734	19 487	20 221	43.0	1152.9	<21.0>
-지로중앙회	12	398	410	20.3	820.1	<14.9>
신용협동조합	3 151	18 092	21 243	31.3	825.3	<15.0>
-신용협동조합	3 147	18 059	21 206	24.1	629.3	<11.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33	37	7.2	196.5	< 3.6>
2. 특수은행	214	220	434	32.3	1282.8	<23.3>
부동산금융기관	35	70	105	15.9	654.0	<11.9>
-민영저당은행	28	60	88	10.7	487.5	<8.9>
-공영저당은행	7	10	17	5.2	166.4	<3.0>
특별목적금융기관	16	101	117	16.4	557.7	<10.1>
기타 금융기관	138	8	146	-	-	-
-투자회사	60	-	60	-	-	-
-증권수탁기관	2	6	8	0	(0.3)	-
-보증은행 등	29	-	29	-	-	-
-비영리주택조합	47	2	49	-	-	-
우편은행	(16)	-[3]	(16)	0	71.1	< 1.3>
건축대부조합	25	41	66	(8.4)	(178.1)	-
-민영건축대부조합	21	41	62	(5.6)	(123.5)	-
-공영건축대부조합	4[4]	-	4	(2.8)	(54.6)	-
총 금융기관수[5]	4 453	44 872	49 325	218.0	5 497.4	<100>

註: 1) 외국은행지점(1991년말현재 175개)은 제외됨.
2) 베를린 자회사 포함.
3) 1991년말 현재 우체국 및 그 分所數는 25 000개 정도임.
4) 공영은행의 건축대부조합 자회사 4개 지점 제외.
5) ( )안의 수치는 總機關數에서 제외됨.
6) < >안의 수치(단위%)는 構成比임.

資料: 독일 연방은행

ㅇ 한편, 3대은행과 대형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고객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형태의 경영자문업무(유동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기자금운용시스템, 대차대조표분석을 위한 software 제품, 은행간계정에 관한 정보, 다양한 자동이체서비스, 세계 각국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서비스 등)의 비중도 늘려가고 있음.

- 겸업은행제도의 장점(독일연방은행의 입장)

ㅇ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경영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가능

ㅇ 소매금융부문의 간접비용 절감을 통한 低價의 금융상품 서비스의 제공 가능

ㅇ 1개 은행에서의 모든 서비스 제공 (One stop shopping)을 통한 고객의 편리성 제고가 가능

ㅇ 다양한 부문의 수익을 평준화함으로써 은행경영의 안정화 도모 가능

- 겸업은행제도의 주된 단점

ㅇ 은행들이 주식보유, 감독이사회에서의 간여, 대리투표권 행사(proxy voting)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 참조).

ㅇ 대출업무와 증권업무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존재

- 독일에는 겸업은행뿐만 아니라 보다 좁은 범위의 금융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금융기관 전체 영업규모의 1/4 정도를 차지함.

ㅇ 저당은행과 건축대부조합(前者는 채권발행, 後者는 저당관련대출을 받고자하는 고객들로부터의 예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대출규모나 質면에서 前者가 後者보다 앞섬), 특별목적 금융기관, 우편은행(저축업무는 향후 민영화 예정), 주택저축회사, 증권결제은행 등.

ㅇ 영업규모가 50억마르크가 넘는 대형은행의 1/3 이상이 특수은행임.

2. 3大銀行의 經營

- 독일 3대은행인 Deutsche, Dresdner, Commerz 는 독일 전역에 걸쳐 3,423개의 지점을 가진 유일한 금융기관들로서 1991년말현재 子會社를 포함한 統合基準 總資産 합계가 1조 589억마르크, 점포수 4,699개, 종업원수는 15만명을 넘고 있음.

  ○ 3대은행이 은행부문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나, 저당은행과 자회사분을 합치면 거의 20%에 달함.

  ○ 지방에서는 3대은행의 지점이 다른 일반은행의 본·지점보다 적은게 일반적이며, 여타은행지점들과는 다른 고객들을 주대상으로 종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객분화현상이 존재함 (예: 3대은행의 경우 여타은행보다 당좌예금에 대한 수수료가 높음).

〈表 V-3〉 獨逸 3代銀行 現況 (統合基準, 1992年末 現在)

	총자산 (백만 DM)	자 본 (백만 DM, %)	직원수	점포수	고객수 (천명)	주주수[1]
Deutsche Bank	496,578	20,943 (6.9)	74,256	2,146	8,450	285,000
Dresdner Bank	329,544	11,095 (2.9)	45,834	1,555	5,922	260,000
Commerz Bank	232,732	9,408 (12.1)	30,156	998	3,537	210,000
총 계	1,058,852	41,446	150,246	4,699	17,909	755,000

註: 1) 자회사 不包含
2) ( )안의 수치는 Tier 1 Capital Ratio(%)임.
資料: 독일 연방은행

가. 株主構成

- 민영 독일은행들의 법적 설립형태는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합자회사(KG), 주식합자회사 (KGaH), 합명회사(OHG) 등 다양하며, 이중 주식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음.

- 3대은행주식은 국내외주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되고 있으며, 1950년경부터 은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대부분이 거래은행에 주식을 보관하는 bearer shares system 이 유지되고 있음.

  ○ 독일의 3대은행의 주주수는 21만명에서 28만명에 이르며, 전체주식의 상당부분을 은행직원이 보유하고 있음.

  ○ 은행이 별도로 주주명부관리를 하지 않아 일정지분율이상의 대주주를 파악하기 어려움.

. 기업법(the Company Act) 제20조에는 지분율이 25%를 초과할 때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 3대은행간에는 주식보유에 의한 소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나. 意思決定機構

- 3대은행의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은행의 경영자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됨.

- 독일은행들의 의사결정기구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執行理事會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와 監督理事會(The Supervisory Board)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理事會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執行理事會 (Vorstand): 은행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집행이사들(managing directors)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그중 1명이 CEO가 아닌 Spokesman (공식 명칭은 Chairman임)이 되어 대내외적인 임무를 수행함.

  ○ 주요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多數決보다는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監督理事會 (Aufsichtsrat): 20명 정도의 감독이사로 구성되며, 은행경영에 관한 내부적 감독을 수행함. 감독이사회는 단순히 주주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의 주주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모임(forum)의 의미를 지님.

  ○ 감독이사의 거의 절반은 은행직원들에 의해 노동자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감독이사의 대부분은 집행이사출신이며, 비금융기업의 현직집행이사도 있음.

  ○ 집행이사회의 은행경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은 모두 감독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또한 집행이사회는 주요한 신용공여에 관해서는 감독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외에 감독이사회는 결산보고 승인, 집행이사 선임등을 하며, 理事長(Chairman)만 常勤임.

  ○ 미국의 외부이사들(Nonexecutive Directors)은 Duty of Care 原則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경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독일 감독이사들은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만큼 감독이사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表 Ⅴ-4〉 獨逸 主要銀行의 理事會 構成(1992年末 基準)

(單位: 名)

	Deutsche			Dresdner		Commerz	
	Honorary Chairman	Board of Management	Supervisory Board	Board of Management	Supervisory Board	Board of Management	Supervisory Board
Honorary Chairman	1	-	-	1		-	1
Chairman	-	-	1	-	1	-	1
Spokesman	-	1	-	1	-	1	-
Deputy Chairman	-	-	1	-	1	-	1
Members	-	12	18	8	20	10	20
Deputy Members	-	-	-	2	-	2	-
합 계	1	13	20	12	22	13	23

註: Commerzbank는 1991년말 기준.

資料: 각 은행 Annual Report.

다. 業務多角化

- 은행자회사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3대은행들은 자회사 설립, 자본참여비율의 증대를 통해 보험회사, 주택저축은행, 저당은행, 투자신탁회사 등과의 협력·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國內 金融子會社 現況은 〈表 Ⅴ-5〉 참조)

  ○ 최근에 들어 대출업보다는 증권업의 수익성이 높아 증권업무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증권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며, 단지 해외에서만 자회사를 통함.
  . 총 수익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증권업에서 발생

  ○ 또한 경영자문회사의 인수, 外勤職員의 增員을 통해 투자자문업무를 확대하는 등, 자산관리경영, 투자상담, 투자기금저축업무를 늘리고 있음.

- 은행자회사의 업무취급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대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금융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비금융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

〈表 V 5〉 獨逸 金融子會社 現況(1992年 12月 31日 現在)

(單位: %)

Deutsche Bank			Dresdner Bank			Commerz Bank		
자회사	지분율	업무형태	자회사	지분율	업무형태	자회사	지분율	업무형태
Deutsche Bank Lubeck	93.0	상업은행 업무	Bankhaus Reuschel & Co Munchen	50	은행업무	RHEINHYP Rheinische Hypothekenbank	97.2	은행업무
Deutsche Bank Saar	69.2		Deutsch Sudamerikanische Bank	100		Berliner Commerzbank	100	
Deutsche Centralbodenkredit	93.6	부동산 담보부 대출	Hardy & Co Privatbankiers	100		Commerz Credit Bank	65	
Frnkfruter Hypothekenbank	94.3		Oldenburgische Landsbank	62		Deutsche Schiffsbank	40	
Lubecker Hypothekenbank	100		Dresner Bauspar	100		Leonberger Bausparkasse	39.9	
Schiffshypothekenbank zu Lubeck	100		Deutsche Hypothekenbank	96	부동산 담보부 대출	DBV Holding	48.3	
Deutsche Asset Management	100	투자은행 증권투자업	Hypothekenbank	85		ADIG Allgemeine Deutsche Investment-Gesellschaft	37.1	자산관리
Deutsche Gescheilschaft für Fonsverwaltung	100		Norddeutche Hypotheken- und Wechselbank	94		Commerzbank Investment Management	100	
Deutsche Gescheilschaft für Wertpapiersparen	93		Deutscher Investment Trust Gesellschaft für Wertpapieranlagen	100	투자업	Commerz Immobilien	100	
Deutsche Grundbesitz-Anlagegesellschaft	60		Dresdnerbank Investment Management Kapitalanlage-gesellschaft	100		Deutsche Grundbesitz-Anlagegesellschaft	30	
Deutsche Grundbesitz-Investment gesellschaft	60		DEGI Deutsche Gesellschaft für Immobilienfonds	65		Deutsche Grundbesitz-Investmentgeschellschaft	30	
Deutsche Vermogensbildungs-gesellschaft	100		Beteiligungsgesellschaft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100	증권투자 경영자문 중개업	Commerz und Industrie-Leasing	100	리 스
Grunelius KG Privatbankiers	82.9		Unternehmensbeteiligungs-gesellschaft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100		Deutsche Immobilien Leasing	50	
ALD AutoLeasing D	51	할부금융 리 스	DMC Management Consult	100		Commerz Beteiligungs-gesellschaft	100	지주회사
Comco Datenanlagen	52		DOMC Ost-West Consult	100		Commerz Unternehmens beteiligungs	50	
DB Export Leasing	100		Dresner international Advisors	100		Wirtschaftspartner Beteiligungsgesellschaft	20.9	
Deutsche Immobilien Leasing	100		Dresner Vermogensberatungs-gesellschaft	100		Commerz Finanz Management	96.0	경영자문
EFGEE Gesellshaft für Einkaufs-Finanzierung	100		Dr. Lubke	100		PMC Personal Manangement Consult	100	
GEFA Gesellshaft für Absatzfinanzierung	100					Karl Baumgartner+Partner Consulting	35.1	
GEFA Leasing	100					MIPA Muller Verwaltungs	31.3	
Deutsche Bank Bauscar	98	전산·통신 등 특수업무						
Deutsche Gesellshaft für Netswerkdienste	100							
DPE Deutsche Projektentwicklungs-Gesellshaft für Grundvermögen	50							
Bonndata Gesellshaft für Datenverarbeitung	51							
Deutscher Herold Allgemeine Versicherungs	65.3	보험업						
Deutscher Herold Lebensversicherungs	65.3							
Lebensversicherungs der Deutschen Bank	100							
Roland Berger & Parter Holding	75.1	경영자문						
Bonnfinanz Aktiengesellschaft für Vermogensberatung und Vermittlung	65.3							
DB Morgan Grefell	100							
DB Rsearch Gesellschaft für Wirtchafts und Finanzanalyse	100							
Deutsche Geschellschaft für Mittelstandsberatung	100							
Deutsche Immobilien gegesellschaft der Deutschen Bank	100							
Vertriebsgesellschaft der Deutschen Bank für Privatkunden	100							

資料: 각 은행 Annual Report 참조.

〈表 V-6〉 3大銀行의 金融綜合化 强化 現況

	金 融 綜 合 化 强 化 現 況
Deutsche Bank	- 자회사인 "도이치銀行生命保險會社" 설립(1989년 9월) - 개인은행 Grunelius & Co., Frankfurt 를 매수 對個人金融去來 개척 - 선박저당은행 Schiffshypothekenbank zu Luebeck AG, Hamburg 매수 - 투자고문회사의 지분 확대 실시
Dresdner Bank	- 동행이 歐州 최대 보험회사인 Allianz의 주식 10%를, Allianz는 동행 주식의 23%를 상호보유하여 금융상품의 연결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금융·보험의 종합화 추진, 즉, Dresdner Bank는 Allianz고객망을 이용하여 소매 금융 강화
Commerz Bank	- 주택대출금융회사(Leonberger Bausparkasse)의 주식 40% 취득: Commerz Bank는 위 기업에 주택대출예금의 고객주선을, 위 기업은 同 銀行의 금융상품 판매 - 보험회사(DBV+Parther Versicherung)의 주식 50%를 출자하여 보험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 - 대형 부동산회사인 뮤인터내셔날의 주식 25% 취득 - 국내외 부동산 Project의 공동개발 추진 - Merrill Lynch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펀드(The One Germany Fund) 개발

資料: 野村總合研究所, 財界觀測, 1992.8.

라. 銀行과 企業間의 關係

- 독일 겸업은행들은 직접적으로 非金融企業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반대로 非金融企業이 겸업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음. (後者의 경우는 거의 없음).

  ㅇ 실제로 3대은행들은 많은 기업들에 대해 10 - 25% 범위내에서 지분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독일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은행이 이를 인수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해 온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ㅇ 은행의 대출 및 자본참가의 합계가 은행자본의 18배이내이어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규정이외에 은행의 비금융기업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다른 법은 없음. 단 개별은행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 개별은행이 타기업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동 주식을 처분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개별은행의 지분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해당기업에 대한 개별은행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

ㅇ 은행의 기업주식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만 국한되나, 독일기업중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기업들의 국내과세소득비중은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함.

ㅇ 3대은행이 은행보유 상장기업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그중 어느 은행도 100대 기업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13개 기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은행들은 주식의 직접소유와 함께 고객이 맡긴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음.

ㅇ 독일은행들이 대기업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발행주식의 5%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분을 포함하면 동 지분은 40%에 가까움.

ㅇ 그러나 은행들은 매 15개월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권한을 새로이 위임받아야 하며, 고객이 은행에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함.

- 독일 은행들은 기업의 주식 보유와 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외에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임원을 파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은행 임원들이 다른 독일 기업들의 감독이사회에서 400석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점위원회(Monopoly Commission)의 보고서(1979)에 따르면 독일은행들은 100대기업의 2/3에 대해 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은 대부분의 경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또한 한 은행 또는 여러 은행이 특정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기업의 모든 사업을 主銀行 (lead lender)을 통해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대신,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사업확장에 필요한 고정 및 운전자본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당좌계정형태의 신용으로 제공받음.

ㅇ 독일기업들은 주거래은행(Hausbank)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기간의 수익목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장기적 목표아래 새로운 제품과 공정의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음.

- 독일은행들이 기업들을 과다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논의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이 문제를 다룬 각종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겸업주의 제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ㅇ 은행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독점적 가격담합을 할 가능성에 근거하여 Gessler 보고서(1979.5)는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을 투자기업 잠본금의 25% + 1株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86년의 독점위원회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산업자본지분을 5%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독점적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음.

  ㅇ 독일 經濟部 (the Economic Ministry)는 카르텔法 102조에 근거하여 은행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함.

  ㅇ Gessler 보고서는 은행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 해당기업이 대출을 보장받거나 발행주식의 소화를 위해 그 은행을 선호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은행이 기업을 과다하게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은행들은 감독위원회의 참가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영업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은행과 기업간의 대리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Harm (1992) 참조)

- 겸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최근에 들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대기업의 Euro 債 主幹事로 특정 大銀行이 아닌 다수의 은행이 선정되는 등 大銀行에 대한 충성도가 저하되고 있음.

  ㅇ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도 거래은행이외의 은행으로 주간사를 다양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최근에 들어서는 특정기업이 주거래은행(Hausbank)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서 나아가 일정한 企業群이 특정의 銀行群과 대출, 주식보유, 감독이사 파견등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는 network banking 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Ⅵ. 英國 主要銀行의 經營

1. 英國의 兼業銀行現況

- 영국의 은행은 '79년 은행법 제정당시 預金受取機關(Licensed Institution)과 公認銀行(Recognized Bank)으로 구분하여 감독의 정도를 달리 하던 것을 '87년의 신은행법에서는 認可機關(Authorized Institution)으로 일원화하였음.

  ㅇ 은행업 인가기준은 1) 理事 등 經營陣이 적합한 인물일 것* (the fit and proper persons test 통과 要), 2) 업무를 신중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 3) 純資産(납입자본금-적립금)이 1백만 파운드 이상일 것 4) 영업은 최소 2인 이상에 의해 관리할 것 등임.

  * 해당 인물의 정직성, 그 지위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의 건전성, 그러한 의무를 수행할 근면성, 그리고 그가 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그 기관의 예금자 또는 잠재적 예금자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

- 영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업금융, 투자금융, 주택금융, 보험, 기금운용 및 증권거래 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음.

  ㅇ 이러한 관행은 법적 규제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경쟁제한적인 관행 및 시장구조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업무제한 등의 결과로 보임.

  ㅇ 감독당국도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기능적 구분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해 옴.

- 그러나 '7,80년대의 세계적인 금융자유화로 경쟁제한적인 관행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각종 금융기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짐.

-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각 기관들이 업무다각화를 추진함에 따라 異種 金融機關의 업무영역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짐.

  ㅇ 업무다각화의 추진요인으로는 심화된 경쟁하에서의 수익성 유지, 업무분산에 따른 위험 축소, 범위의 경제 추구, 부문간의 상호보조 (cross-subsidies) 제거, 해당업종의 높은 수익성 등을 들 수 있음.

[圖 VI-1] 英國의 銀行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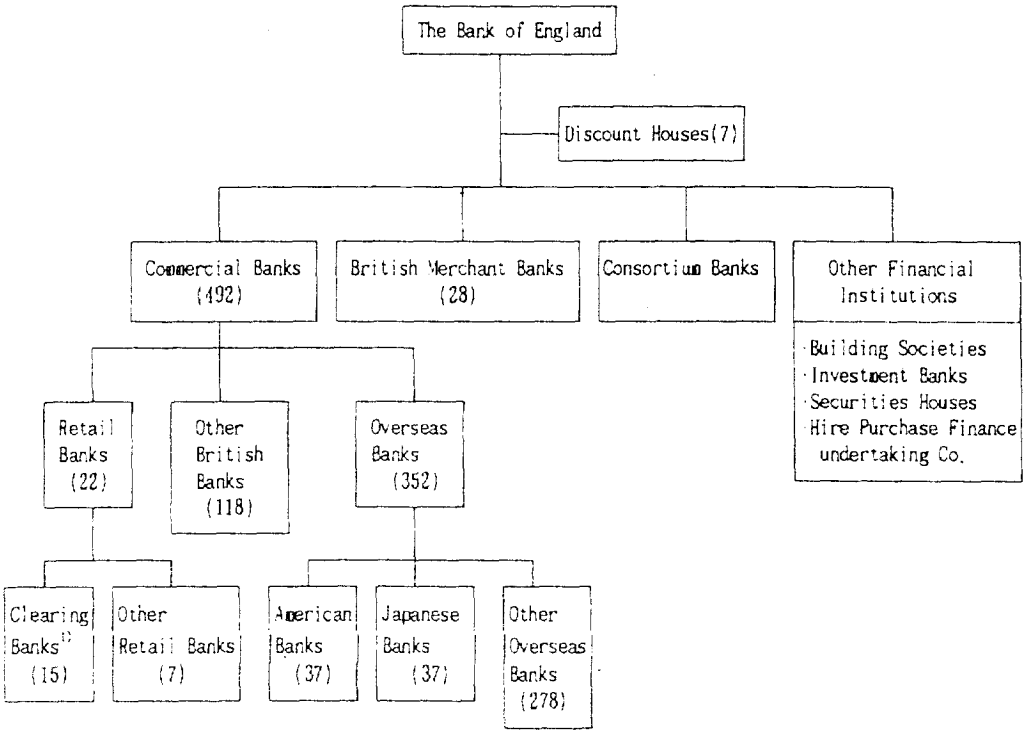

註: 1) London 어음교환소 가맹은행 8, 스코틀랜드계 가맹은행 3, 북아이레계 가맹은행 4
2) ( )안의 숫자는 92년말 현재 기관수임.

資料: 영란은행.

- ㅇ 은행과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간에 이자지급에 대한 課稅 및 資金調達源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금융부문에서 금융기관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짐.

- ㅇ 은행들은 건축조합의 영역이었던 저당대출(mortgage lending)에 참여하는 한편, 자회사를 통해 증권중개, CP 발행, 기타 투자금융업무에 진출함.

- ㅇ 1986년의 Building Societies Act 제정으로 건축조합이 무담보대출(unsecured loans, 1억파운드가 넘는 주거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조합 자산의 10%까지 가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의 고유영역이었던 부수 금융서비스(overdraft facilities, full current-account facilities 등) 까지 취급하게 됨.

- 영국에서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은 완전한 兼業主義를 표방하는 독일과 종래 미국에서 유지되어 온 專業主義를 합친 형태(hybrid)이며, 최근에 들어 은행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져 옴.

o '86년 10월의 Big Bang에 따라 증권매매 위탁수수료의 자유화, 증권거래소 회원의 개방, jobber·broker를 구분하던 單一資格制度(single capacity system)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자, 영국은행들은 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 축소, 금융증권화 추세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증권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함.

* Financial Services Act(1986)상의 투자관련업무: 투자의 취급, 알선, 관리, 상담, 설립, 운영, 청산

* 투자관련업무의 대상품목: 주식·社債(보증채 포함)·공공채 및 이의 예탁증서, 투자신탁, 옵션, 선물, 저축성 장기보험 등

o 카르텔의 폐지와 금융기관간 경쟁의 심화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기관들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합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합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 Big Bang 이전의 증권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은 자기자본 기준과 유통망에 대한 접근(access to distribution channels)이었는데, 영국의 주요은행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금융자유화 조치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됨 (<表 Ⅵ-1> 참조).

. 은행들은 증권거래소 회원사를 매수하여 증권 유통업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여 증권업무에 진출함.

- 그러나 런던 자본시장에서의 over capacity와 이에 따른 경쟁격화, 증권시장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상당수의 증권자회사들이 처음 몇년간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일부는 증권업에서 철수하기도 함.

o 또한 막대한 창업비와 은행업보다 높은 인건비, 증권전문인력의 부족, 증권업에 대한 감독강화 등도 증권업무 영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권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재 영국 은행법은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투자에 대한 별다른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음. 단, 특정 항목이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상당한비중을 차지할 경우 공식적인 한도는 없지만 사례별로 당국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음 (case-by-case limit).

o 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기자본의 적정성이나 거액대출에 관한 사항외에는 없음. 다만 은행의 자회사들은 '83년의 EC Consolidated Supervision Directive에 의해 모은행과 통합기준에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

〈表 VI-1〉 Big Bang 以後의 英國銀行들의 兼業化 現況

Banks/group	stock exchange capitalisation (£ million)	Main purchases or partners in Londo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UK clearing banks																												
Barclays	3570	de Zoete & Bevan(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Wedd Durlacher Mordaunt(j)																										
Lloyds	2236	Barclays Merchant Bank(m)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Black Horse Agencies(e)																										
Midland	1291	Lloyds Merchant Bank(m)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amuel Montagu(m)																										
National Westminster	3737	W. Greenwell(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Fielding, Newson-Smith(s)																										
		Country Bank(m)																										
		Bisgood Bishop(j)																										
UK merchant banks																												
Barings	---	Wilson & Watford(j)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trauss Turnbull(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Hambros	381	Mann & Co(e)																										
		Bairstow Eves(s)																										
Hill Samuedl	332	Wood Mackenzie(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Kleinwort Benson	479	Grieveson Grant(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Chlarlesworth & Co(j)																										
Mercantile House	233	Laing & Cruickshank(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Alexanders Discount(d)																								X		
Morgan Grenfell	664	Pember & Boyle(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Pinchin Denny(j)																	X							X		
N.M. Rothschild	---	Smith Bros(j)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chroders	160	Helbert Wagg, Anderson, Bryce Villiers(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G. Warburg (Mercury International)	399	Akroyd & Smithers(j)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Rowe & Pitman(s)																										
		Mullens(s)																										

Key:

A UK equities market making
B International equities market making
C Gilts primary dealing
D Futures, options and swaps
E Eurobond market making
F Eurobond underwriting
G Eurocommercial paper
H US treasuries market making
I Equity issues
J Retail stockbroking
K Retail banking
L Wholesale banking
N Foreign exchange
O Mergers and Acquisitions
P Commodities
Q Bullion
R Consumer finance
S Unit trusts
T Fund management
U Private client investment
V Estate agents
W Mortgages(sterling)
X Commercial property
Y Venture capital
Z Insurance

Notes:

(c) commercial bank
(d) discount house
(e) estate agent
(j) jobber
(m) merchant bank
(s) stocker

資料: Gardener and Molyneux(1988, table 2.3)

- 영국의 대형은행들중 상당수는 외국은행들과 모든 면에서 경쟁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兼業銀行(universal banks)보다는 세계를 지향하는 유럽은행(European Banks with Global Reach)으로서 양적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토대로 각자의 비교우위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ㅇ 일례로 Barclays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 대규모 지점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Lloyds는 脚註去來의 先頭走者로 부상하고 있음.

- 금융기관별 기관수와 총자산 및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表 Ⅵ-2〉에 나타나 있는데, '90년 6월말 현재 소매은행(Retail banks)이 자산(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42.4%)이며, 런던이 국제금융중심지인 관계로 외국은행의 비중이 48.6%(21.9%)로 상당히 높은 것이 특기할 만함.

- 業態別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

  ㅇ 전반적인 은행업무는 은행법(1987년)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영란은행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

    . 은행법의 제정과 은행감독위원회 (the Board of Banking Supervision)의 설치로 종전의 非公式的 窓口指導에 의한 감독이 보고서 제출 등의 법령에 의한 감독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감독당국과 은행 경영자들간의 빈번한 면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

〈表 Ⅵ-2〉 英國의 金融그룹 現況

	기관수[1]	총자산(10억 £)[2]		총예금(10억 £)[2]	
1. 상업은행	168	525.8	(36.3)	357.9	(53.3)
소매은행	22	409.2	(28.2)	284.8	(42.4)
종합금융회사	28	53.4	(3.7)	31.2	(4.6)
기타상업은행	118	63.2	(4.4)	41.9	(6.2)
2. 외국은행	352	704.2	(48.6)	147.2	(21.9)
미국은행	37	113.7	(7.8)	20.1	(3.0)
일본은행	37	250.5	(17.3)	36.1	(5.4)
기타해외은행	278	340.0	(23.4)	91.0	(13.6)
3. 기타금융기관	137	219.9	(15.2)	165.9	(24.7)
할인상사	7	15.9	(1.1)	15.1	(2.3)
건축조합	130[3]	204.0	(14.1)	150.8	(22.5)
총 계	657	1,449.9	(100)	671.0	(100)

註: 1) 1993년 2월 현재
2) 1990년 6월 현재
3) 1989년말 현재
4) ()안 수치는 구성비임.

資料: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각호.

○ 투자관련업무에 관한 감독은 金融서비스法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을 근거로 설치된 自律規制機構들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이 소관 업무별로 담당하며, 이들은 투자자보호에 관한 궁극적 책임을 지는 證券投資委員會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TSA(The Securities Association), AFBD(Association of Futures Brokers and Dealers), IMRO(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 LAUTRO (Life Assurance and Unit Trust Regulatory Organization), FIMBR(Financial Intermediaries, Managers and 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

○ 건축조합들은 건축조합법(Building Societies Act, 1986) 에 의해 설치된 建築組合委員會(Building Societies Commission)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

2. 英國 4大銀行의 經營

- 4대은행은 1992년말 현재 영국 銀行 總資産의 29.6%, 예금의 약 40%, 자본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8,500여개의 지점을 통해 상업금융 및 투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80년대 말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부진, 부동산가격의 폭락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로 4대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으나, 최근에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며, Barclays도 올해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여타업무 진출에 있어 가장 신중한 접근방법을 취한 Lloyds 은행의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Midland는 HSBC Holdings에 인수됨으로써 자산규모에 있어 영국 제1의 은행으로 부상하였으며, 규모확대에 대응한 새로운 영업전략을 모색중임.

〈表 VI-3〉 英國의 4代銀行 現況(統合基準, 1992年末 現在)

	총자산 (백만£)	자 본 (백만£)	직원수[1]	지점수	주주수
Barclays	149,118	1,610	48,300	2,272	152,369
NatWest	143,261	1,647	85,900	2,600	123,761
Midland	61,354	797	43,564	2,160	-
Lloyds	61,004	1,270	63,715	1,500	108,390
총 계	414,737	5,324	241,479	8,532	-

註: 1) 영국내 고용된 인원임.
資料: 각 행 Annual Report.

〈表 VI-4〉 英國 4大銀行의 損益 現況

(單位: £m, %)

		영업이익 (A)	우발손실 (B)	(A) (B)	법인세차감전 순손익	ROA[1]	ROE[1]
Barclays	1990	1,932	(1,233)	699	902	0.4	8
	1991	2,033	(1,547)	486	533	0.2	5
	1992	2,407	(2,534)	(127)	(242)	(0.2)	(5)
NatWest	1990	1,662	(1,153)	509	504	0.2	3.4
	1991	2,027	(1,875)	152	110	0.0	0.7
	1992	2,432	(1,903)	529	405	0.2	3.5
Midland	1990	743	(703)	40	11	0.0	0.4
	1991	948	(903)	45	36	0.1	1.4
	1992	960	(676)	284	178	0.3	6.7
Lloyds	1990	1,365	(778)	587	591	0.67	12.6
	1991	1,522	(918)	604	645	0.79	14.5
	1992	1,535	(765)	770	801	0.97	16.9

註: 1) Midland는 稅前收益率, 여타은행은 稅後收益率임.
2) ( )내 수치는 손실을 가리킴.

資料: 각 행 Annual Report.

가. 株主構成

- 은행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영란은행에 사후 통보하여야 하며, 은행을 매수(발행주식의 15%이상 취득)하거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50% 및 75%를 초과할 때에는 영란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은행법 21, 37조).

  ○ 영란은행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上記 株式買入 申請을 거부할 수 있음 (22조).

  ○ 또한 旣存大株主가 은행의 건전경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주식을 매각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24,26조).

- 4대은행의 주식은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음.

  ○ 지분율이 3%가 넘는 대주주는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은행별로는 이러한 대주주가 없거나 있더라도 1-2인에 불과함.

〈表 Ⅵ-5〉 英國 主要銀行의 所有構造 現況

(單位: 名, %)

구 분 \ 은행명		Barclays	NatWest	Midland
개 인 투자가	주주수	130,206(85.45)	103,235(83.42)	95,898(93.40)
	소유주식수	221,6백만(13.78)	211,158,690(12.82)	117,594,023(14.99)
보험회사	주주수	621(0.41)	409(0.33)	408(0.40)
	소유주식수	140.9백만(8.76)	133,841,262(8.13)	58,410,435(7.44)
수탁회사 증권회사 등	주주수	12,991(8.53)	7,698(6.22)	5,185(5.05)
	소유주식수	1,020.8백만 (63.44)	1,048,847, 534 (63.68)	447,320,141 (56.99)
연금기금	주주수	74(0.05)	88(0.07)	59(0.06)
	소유주식수	45.7백만(2.84)	86,058,428(5.23)	20,967,357(2.67)
병 원 지방자치 단체 등	주주수	---	642(0.52)	275(0.27)
	소유주식수	---	36,998,218(2.25)	6,378,888(0.81)
기타회사	주주수	3,394(2.22)	693(0.56)	---
	소유주식수	157.1백만(9.76)	19,917,231(1.21)	---
은행 및 투자신탁 회사 등	주주수	5,083(3.34)	10,996(8.88)	318(0.31)
	소유주식수	22.9백만(1.42)	110,109,142(6.68)	16,394,255(2.09)
합 계	주주수	152,369(100.00)	123,761(100.00)	102,663(100.00)
	소유주식수	1,609.0백만 (100.00)	1,646,930,505 (100.00)	784,909,378 (100.00)

註: 1) ( )내의 수치는 구성비임.
2) Barclay, NatWest는 1992년 12월 31일 현재, Midland는 1991년 12월말 현재 수치임

資料: 각 행 내부자료

나. 意思決定機構

- 주요 의사결정은 CEO와 이사회가 담당하는데, CEO를 포함하는 7-8명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s)가 내린 결정들을 이사회의 동의하는 과정을 거침.

  ○ 일반적으로 CEO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데, Barclays의 경우와 같이 외부이사로 구성되는 4-5인의 은행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기도 함. 차기 CEO는 대체로 사전에 이미 부각되어 이사회의 선임과정은 형식적인게 대부분임.

  ○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은행경영에 대한 株主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압력단체(Pressure Group)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최고 경영진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理事會에는 집행이사들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10명내외의 外部理事(Nonexecutive Directors)가 존재하며, 前職 官僚, 企業任員, 海外專門家들이 선임됨.

- 은행은 이사, 경영지배자 또는 경영자의 선임 또는 해임사실을 영란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은행법 36조).

〈表 VI-6〉 主要 英國銀行의 理事會 構成(1992年末 基準)

(單位: 名)

	Barclays	NatWest	Midland	Lloyds
Chairman	1	1	1	1
Deputy Chairman	2	3	1	2
Vice-Chairman	2	-	-	1
Directors	14	16	12	15
(Executive Directors)	(3)	(6)	(2)	(5)
(Nonexecutive Directors)	(11)	(10)	(10)	(10)
총 계	19	20	14	19

資料: 각 은행 Annual Report.

다. 業務多角化

- 은행간 금리협정이 폐지되고('71년 9월, 건축조합금리협정 폐지는 '83년 10월) 금융혁신과 함께 대체적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간 또는 異種金融機關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은 예금부수업무로부터의 수수료 등 非利子收入을 늘리는 동시에 脚註去來(off-balance-sheet instruments)를 개발하여 利子收入減少에 대처함.

  ○ 4대은행 모두 總收入중에서 은행업관련서비스와 증권업무로부터의 非利子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5-8%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表 VI-7〉 英國 主要銀行의 純利子收入 및 非利子收入 推移

(單位: £m, %, 統合基準)

	Barclays			NatWest			Midland			Lloyds		
	純 利子收入	非利子收入	合計	純 利子收入	非利子收入	合計	純 利子收入	非利子收入	合計	純 利子收入	非利子收入	合計
1989	3,420	2,127	5,547	3,501	1,857	5,358	1,850	1,332	3,182	2,205	1,448	3,653
	(61.7)	(38.3)	(100)	(65.3)	(34.7)	(100)	(58.1)	(41.9)	(100)	(60.4)	(39.6)	(100)
1990	3,489	2,236	5,725	3,603	2,024	5,627	1,643	1,495	3,138	2,279	1,545	3,824
	(60.9)	(39.1)	(100)	(64.0)	(36.0)	(100)	(52.4)	(47.6)	(100)	(59.6)	(40.4)	(100)
1991	3,620	2,699	6,319	3,688	2,549	6,237	1,757	1,575	3,332	2,353	1,627	3,980
	(57.3)	(42.7)	(100)	(59.1)	(40.9)	(100)	(52.7)	(47.3)	(100)	(59.1)	(40.9)	(100)
1992	3,733	3,016	6,749	3,957	2,931	6,888	1,712	1,567	3,279	2,226	1,767	3,993
	(55.3)	(44.7)	(100)	(57.4)	(42.6)	(100)	(52.2)	(47.8)	(100)	(55.7)	(44.3)	(100)

資料: 각 행 Annual Report.

- 또한 종래의 단기금융업무 중심에서 주택금융, 중장기대출, 소비자금융, 부동산, 신탁,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업무, 단기금융시장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증권업의 경우에는 '86년의 Big Bang 이후 Barclays와 NatWest는 각각 Barclays de Zoete Wedd (BZW)와 County Bank를 새로이 매수하여 거의 모든 투자금융업무에 진출하여 영업을 지속한 반면, Lloyds는 자회사를 통해 일부업무에 진출하였다가 1년만에 철수하였으며, Midland는 Samuel Montagu를 통해 前者의 두 은행보다 제한된 범위의 투자금융업무를 수행함.

  ○ 증권업에 대한 진출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초반에는 '87년의 증권파동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同部門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BZW의 稅前利益은 '90년의 108백만 파운드에서 '92년에는 242백만 파운드로 늘어났으며, NatWest Markets Division의 업무이익은 '91년 326백만 파운드에서 '92년에는 380백만 파운드로 늘어남.

- 이상의 업무이외에 4대 은행은 모두 子會社 또는 孫會社를 통해 보험중개 및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의 전국적인 지점망을 통하여 계열회사 보험상품 및 보험연계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ㅇ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간의 소유관계(ownership linkage)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음. 단, 保險會社法(1982)상 보험대상에 대한 지불능력(solvency cover) 산정시의 특정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있음.

  ㅇ 또한 은행이 10% 이상의 보험회사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에 알리도록 권유하고 있음.

라. 銀行과 企業間의 關係

-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지분참가를 제약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는 없으며, 일부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는 同 企業에 대한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가 대부분임.

  ㅇ 감독당국이 건전경영감독상의 이유로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주식을 상당량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은행주식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株主가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영국도 독일과 유사한 주거래은행제도 (House Bank System)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업에 은행임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전국적으로 20,000여개의 은행점포 (4대은행 8,500여개)가 預貸顧客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행들은 고객과의 관계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은행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거래은행을 바꾸는 등 기업고객들의 loyalty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에 대해 일반적 은행서비스와 함께 주로 당좌대월(overdraft)의 형태로 운전자본을 공급하며, 장기신용을 공급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작음:

  ㅇ 단독 혹은 다른 은행들(외국은행 포함)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다국적기업들에

structured lending을 제공하고 있음.

- 대형은행들의 총대출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약 1/4 정도에 불과하며, 직접금융시장에서도 대기업증권에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아 대형은행들이 대기업 위주의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 은행측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대출수요의 감소에다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증권시장에서 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서의 우량고객을 늘려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는 '87년 신은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거액여신을 중앙은행의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으나, 신은행법에서는 外銀支店을 제외한 은행으로 하여금 자기자본(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은 영란은행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여신은 영란은행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있음 (38조).

〈表 VI 8〉 英國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1992年 12月 31日 現在)

(單位 : %)

Barclays		NatWest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	지분율
BZW Holdings Ltd	100	NatWest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Ltd	100
├ BZW Portfolio Management	20	└ NatWest Stockbrokers Ltd	100
├ BZW Asset Management	100	NatWest Insurance Services Ltd	100
│ └ BZW Investment Management	100	NatWest Life Assurance Ltd	100
├ Thamesway Investment Services	100	NatWest Unit Trust Managers Ltd	100
├ Bzw Money Market Services	100	NatWest Capital Market Ltd	100
└ Bzw Ltd	100	NatWest Securities Ltd	100
├ Bzw Futures Ltd	100	└ NatWest Wood Mackenzie & Co Ltd	100
├ Barclays Development Capital Ltd	100	Country NatWest Ltd	100
└ BZW Securities Ltd	100	└ NWM Property Advisory Ltd	100
├ BZW Research Ltd	100	Country NatWest Investment Management Ltd	100
├ BZW Gilts Ltd	100	NatWest Ventures (Group) Ltd	100
└ Dezoete & Bevan Ltd	100	└ NatWest Ltd	100
BZW Portfolio Management	100	NatWest Financial Products PLC	100
Barclays Finanacial Services	100	NatWest GILTS LTD	100
├ Barclays Bank Trust Co	100	Coutts & Co Group	100
├ Barclays Life Assurance Co	100	└ Coutts & Co	100
├ 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	100	Lombard North Central plc	100
└ Barclays Unicorn Ltd	100	└ Lombard Bank Ltd	100
Barclays Stockholders Ltd	100	Ulster Bank Bank Ltd	100
Barclays GTS(Holdings) Ltd	100	├ Lombard & Ulster Ltd	100
└ Barclays Metals	100	└ Ulster Investment Bank Ltd	100

Lloyds		Midland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	지분율
Lloyds Abbeys Life(Holdings) Plc	100	Greenwell Montagu	100
└ Black Horse Financial Serv Group Ltd	100	Milland Bank Trust Co Ltd	100
├ Black Horse Life Assurance Co Ltd	100	Milland Stockbrokers	100
├ Lloyds Bank Unit Trust Managers Ltd	100	Milland Private Equity Ltd	100
└ Black Horse Financial Services Ltd	100	Midland Bank Insurance Services Ltd	100
├ Lloyds Bowmaker Fin Ltd	100	Midland Unit Trusts Ltd	100
└ Lloyds Bowmaker Ltd	100	Greenwell Montagu Stckbrokers	100
└ Lloyds Bowmaker Assurance Ltd	100	Midland Life	72.5
├ Abbey Life Ass Co Ltd	100	Forward Trust Group Ltd	100
├ Ambassador Life Assurance Co Ltd	100	├ Forward Trust Ltd	100
└ Abbey Life Pension & Annities Ltd	100	└ Forward Trust Ltd	100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Holdings) Ltd	100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Life & Pensions) Ltd	100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Direct) Ltd	100		
└ Abbey Unit Trust Managers Ltd	100		
Abbey Life Investment Serv Ltd	100		
Lloyds Bank Futures Ltd	100		
Lloyds Bank(BLSA) Ltd	100		
Lloyds Private Banking Ltd	100		
Lloyds Bank Stockbrokers Ltd	100		
└ Chambers & Remington	100		
Lloyds Development Capital Ltd	100		
Lloyds Investment Managers Ltd	100		
├ Lloyds Bank Fund Management Ltd	100		
└ Lloyds Investment Management Int	100		
LMBS(Holdings) Ltd	100		
└ LMB Services Ltd	100		

資料: 영란은행 내부자료.

Ⅶ. 金融專業企業그룹 育成에 관한 政策的 示唆點

1. 金融專業企業그룹 育成의 必要性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금융자본은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미국의 금융자본은 대형 은행持株會社를 중심으로 신용공여관계를 매개로 하여 산업자본과 상호공조체제를 유지 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형은행의 주식은 기관투자가의 상호보유에 의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지분율 5%이상의 주주는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소수임.

    . 이는 미국의 산업자본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본조달을 은행차입보다는 직접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

  ㅇ 일본의 금융자본은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식의 상호보유와 인적결합에 의해 산업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형 도시은행의 주식은 지분율 5%이하의 기관투자가 주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분산되어 있음.

  ㅇ 독일의 3대은행은 겸업은행으로서 증권 및 신탁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非金融企業에 대한 투자 및 임원파견을 통해 대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주식은 국내외주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되고 있음.

  ㅇ 영국의 대형은행들은 86년의 Big Bang 이후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子會社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나 임원파견은 거의 없고, 주식분포에 있어서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3%이하가 대부분임.

- 따라서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소유주의 책임경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전업기업그룹의 육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와 산업자본의 속성이 외국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엄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附 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부분은 계열 대주주 혹은 지분참가자로 각종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음.

  ㅇ 은행의 경우 동일한 대주주나 기업집단이 동시에 여러 시중은행의 대주주로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개별적으로는 지분비율이 소유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지만,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주주나 기업집단이 담합하여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o 실제로 대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일부 지방은행들이 대주주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이러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o 더구나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향후 정부의 은행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약화될 경우 이러한 개연성은 보다 커질 것임.

- 은행의 경영이 실질적인 주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 대해 동일인 지분 한도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의 은행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나,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의 출현이 바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음.

o 은행에 대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대기업들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경우 이들이 은행 경영진으로 하여금 금융자율화의 소기의 목적인 금융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음.

o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대리인 통제효과가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당분간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들의 자발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편·체질개선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o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해 신탁자금을 동원하여 고금리로 대출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음.

o 인원축소·비용절감 등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은행감독원의 강력한 유도에 수동적으로 응하는데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여기서 금융자율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조치들과 함께 은행의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을 줄이는 대신,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자본과의 관련성이 없는 최대 주주의 동일지분한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서의 금융전업기업(그룹)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임.

-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이 요청된다는 論議의 근거로 다음의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음.

1)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은행소유주의 실질적 경영권 행사를 통해 효율적 책임경영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임.

○ 기존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자발적·적극적인 경영합리화로 대체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책임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점차 중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 고객의 금융수요가 중대됨과 동시에 다양화됨에 따라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개별 금융상품들을 여러 형태로 복합시킨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됨.

○ 고객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新種 金融商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속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분발이 요구됨.

○ 금융전업은행은 업무영역규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非銀行子會社가 제공하는 상품과 은행상품을 연계시킴으로써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영구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임.

3) 국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고, 소속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실증분석들을 보면 ,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병이 비용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김인기·김장희(1991), 좌승희(1991), 정익준(1993), 양원근(1993)]

. 단, 비용절감효과의 상당부분은 합병을 통한 인력감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합병되는 두 은행 직원들의 人的 融和가 순조롭지 못해 인사관리가 어려워지고 잉여인력이 발생하며 급여수준도 높은 은행쪽으로 조정되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 합병 후 상당기간 동안 경비효율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굴지의 은행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축한 정보처리망과 막대한 경영정보, 기존업무를 통해 축적된 신용평가능력 및 금융기법, 이와 연계된 전문인력 등 광범위한 생산요소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금융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비용의 보완성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자유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預貸마진의 축소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貸出利子收入이외의 각종 수수료 수입 증대를 목표로 부수·겸영업무의 확대나 子會社를 통한 신규업무 진출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은행 규모의 확대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4)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수익흐름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수익선을 다변화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문의 수익증감을 다른 收益源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금리상승기에는 은행업이, 그리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증권업이 보다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업종의 수익전망도 달라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익선을 다변화하여 수익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요구됨.

2.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導入方向에 대한 示唆點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금융기관지배를 방지하면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육성대상이 되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은 은행, 증권회사, 혹은 보험회사가 母會社가 되어 異種 金融機關들을 子會社 형태로 소유하며,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금융업이나 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기업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 預貸市場을 지키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금융전업기업 혹은 기업그룹의 형성은 국제금융업무에서도 외국기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임.

ㅇ 따라서 금융전업기업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의 완화와 함께 합병·전환·비금융기관 매각시의 각종 조세 부담 경감, 增資의 우선적 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육성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1) 은행,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기존의 금융그룹중에서 일부를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방안

2) 금융업과 非金融業을 겸영하고 있는 일반 기업집단이 非金融業種 企業을 처분하여 금융전업기업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3) 신규로 산업자본과의 연계가 없는 금융자본가에게 은행 혹은 증권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을 허용하는 방안

-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은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보다는 동일인 지분한도가 8%이내로 규제되고 있는 은행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것임.

- 은행산업의 경우 예금 및 자산집중도가 외국의 수치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수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신규은행의 신설을 통해 전업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기존은행중에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전업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도 機關數의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신규 금융자본가나 산업자본이 대형 시중은행을 매수하여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부실채권규모가 작으며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선호할 것이나, 이들 은행의 기존 산업자본 大株主의 지분을 축소하는 문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 은행에 대해 상당히 높은 持分率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이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을 적은 자본으로 매수하여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들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이 다소 낮아 지배권 확보가 보다 쉬운 장점은 있지만 이들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證券子會社를 신규로 매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안게 될 것임.

〈表 Ⅶ-1〉 銀行産業의 市場集中度 國際比較

(單位: %)

	한국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
예금[1]											
CR 3	29.3		19.0	19.1	21.6	45.5	41.6	24.3	83.9	59.0	45.3
CR 5	48.2			30.5	30.3	65.2	68.5	38.8	-	87.5	58.6
자산[2]											
CR 3	30.9	17.8	18.7	24.8	53.4	43.4	25.8	38.2	94.2	51.9	72.3
CR 5	48.2	26.1	30.8	36.4	71.5	64.0	38.9	56.1	96.7	80.9	87.5

註: 1) 1988년 통계, 유럽국가 자료는 Gardner-Molyneux, "Changes in Western European Banking" p33, Table 3.2에서 인용.
2) The Banker, "Top 1,000 Banks"(July 1992)의 국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1000대은행에 포함된 은행만을 범위로 함).

資料: 김동원(1992), The Banker (1992.7)

- 다음, 자본금이 1,000억원이 넘는 9대 증권회사들의 대부분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있어, 증권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이들 산업자본이 동일계열 非金融企業들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요구됨.

- 증권사를 모회사로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은행을 子會社로 매수하여야 하나, 대규모 시중은행을 子會社로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ㅇ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母會社가 되는 경우 銀行子會社를 보유하지 않고서는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낮은 증권회사의 자본금규모나 영업현황을 볼 때 증권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銀行을 子會社로 보유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자본조달 능력상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ㅇ 더구나 이들 증권사가 금융그룹 형성을 위해 은행을 子會社로 두면서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영업기반면에서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비교적 확고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까운 장래에 우리 증권사들의 경쟁력이나 자본시장 현황이 이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圖 Ⅶ-1] 主要 證券會社의 資本金 및 大株主 1人[1] 持分率 現況
(1993年 9月 10日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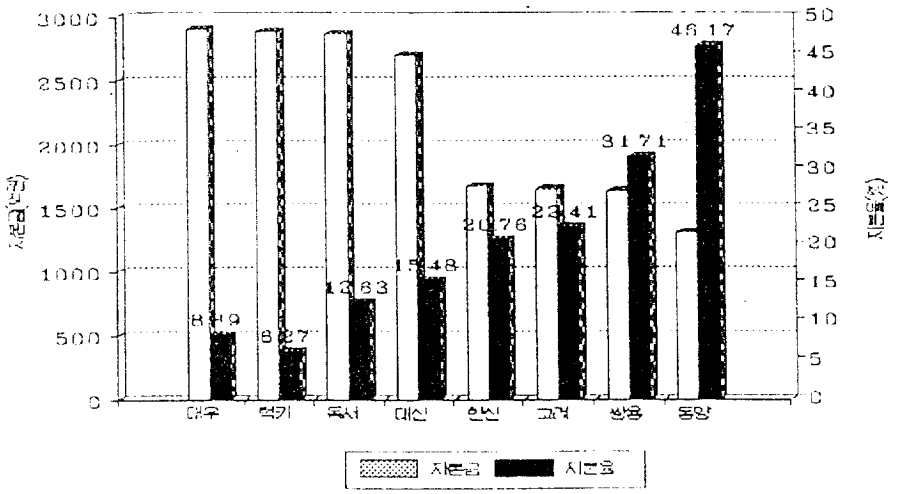

註: 1) 주주 1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자의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집단.
資料: 증권거래소 매매심사부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전업기업그룹의 모회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ㅇ 증권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기업문화가 다른 은행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최근에 들어 은행과 보험사간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완전한 결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兩者의 결합은 은행이 보험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둘째로 産業資本이 非金融企業을 處分하여 金融專業企業그룹을 形成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가능규모면에서 증권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형그룹이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유인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이들 그룹이 실물시장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금융전업기업그룹 형성을 희망할런지는 불분명함.

  ㅇ 또한 이들 산업자본이 계열회사를 매각할 경우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이 이를 매수하여야 할 것이나, 그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기존 과점시장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마지막으로 신규 자본가가 시중은행이나 대형 증권회사 주식의 20-30% 이상을 매수하여 금융전업기업 혹은 금융그룹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000 - 5,000억원의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은행업의 장기전망이나 부실채권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금융업에 투입할 자본가가 존재할 것인지 불확실함.

  ㅇ 그러한 금융자본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본가에게 금융기관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을 매수하여 금융전업기업 혹은 기업그룹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아울러 금융자본가의 금융그룹 소유자 (혹은 지배자)로서의 적격성이나 금융기관 경영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금융전업기업그룹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 상황에서 기존 금융기관을 모회사로 하거나 산업자본이 대형 시중은행을 매수하여 수년이내에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 증권, 보험을 통틀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기관들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기관조차도 금융전업기업으로 지정된 후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을 낮추면서 가까운 기간내에 收益性을 토대로 子會社를 통해 다른 業種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낮은 은행중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일부 은행들은 자본금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 조속한 시일내에 대규모의 增資를 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당국의 增資許容이 경영실적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기관이 적정한 규모의 增資를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자본과의 연계가 적은 금융기관(들)이 增資나 合併 등을 통해 금융전업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금융전업기업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銀行의 增資를 우선적으로 허용함.

○ 현행 합병·전환법을 보완하여 금융기관간의 자발적인 합병·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합병·전환시의 세제상 지원책을 강화함.

-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사전에 지정한 후 이들 기관에 대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영업규모와 경영실적, 향후의 성장전망, 해당기관의 공공성 유지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금융전업기업(은행·증권사·보험사)이 해당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후에 업무영역규제 완화를 통해 子會社(혹은 持株會社)方式에 의한 他業種 진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2단계 육성방안을 고려해 봄직함.

- 이상의 방안들은 금융전업기업그룹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주요 선진국 금융그룹들의 모은행 대주주 지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주주의 지분율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金融專業企業그룹 育成案 자체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우선 우리의 금융환경이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기능활성화만으로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이러한 논의를 거쳐 금융전업기업그룹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 지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의 소유지분규제완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은행제도의 재편성이라는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일례로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유지·강화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건전경영감독에 국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현상유지를 위해 增資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은행에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은행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외국의 대형 금융그룹들이 持分率이 거의 100%인 子會社를 통해 非銀行業務에 진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子會社(은행법상 10%이상의 출자회사)의 수가 많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의 銀行子會社들이 은행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은행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은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直視할 필요가 있음.

3. 金融專業企業그룹 所屬銀行의 同一人 所有持分限度

- 금융전업기업그룹의 모회사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8%이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가에 관해 다음의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음.

제1안: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15%로 완화

장점: 금융전업기업그룹 형성을 위한 자금조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전업은행과 전업기업이 아닌 은행간의 경쟁상의 불형평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단점: 최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산업자본 포함)이 담합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전업기업으로서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제2안: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25%로 완화

장점: 최대주주이외의 산업자본 대주주들이 담합하여 의사결정에 현실적 혹은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어짐으로써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할 것임.

단점: . 최대주주가 금융전업은행의 지분을 25%까지 매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음.

.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배권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기업성을 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대됨.

.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양한 非銀行 금융기관을 子會社로 두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3안: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0% 혹은 그 이상으로 완화

장점: . 최대주주가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됨으로써 자율적 경영권의 행사를 통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업종의 非銀行業務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함.

단점: .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클 것임.

. 최대주주의 전횡에 의한 경영부실화나 공공성의 저하 가능성이 가장 큼.

제4안: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완전히 폐지

장점: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지분율을 선택할 수 있음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금융전업기업이 지나치게 기업성을 추구하거나 고수익·고위험 추구에 따른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다른 대안에 비해 클 수 있음.

- 동일인 소유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대상 금융기관들의 大株主 지분율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권 소재, 주주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Leech (1987)는 금융기관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大株主의 持分率뿐만 아니라 대주주이외의 지분분포도 고려해야 한다고 봄.

  ㅇ 주식소유분포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한 개인 대주주에게 집중된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들과 담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주주의 의도대로 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Florence(1961)에 의하면 은행이 개인 혹은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최대주주가 20%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2) 상위 20대 주주가 30%의 투표권을 가지며, 3) 앞의 1) 또는 2)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주가 기업체이거나 또는 개인인 경우 친족관계 등 개인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4) 이사회나 또는 이사들이 한 집단으로서 5% 이상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Corrigan (1987)은 지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으나, 지분율이 5%미만이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 외국의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은행발행주식의 5 - 15%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表 Ⅶ-2> 참조]

〈表 Ⅶ-2〉 主要國의 銀行所有에 관한 規制內容

국 명	소 유 규 제 내 용
미 국	은행지주회사가 특정은행의 의결권부주식을 5%이상 소유 또는 지배하려고 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10%이상의 은행지분변동은 해당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은행기업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의 25%초과 은행지분참여는 금지됨.
독 일	은행주식 또는 의결권의 10%이상을 취득한 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취득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연방은행감독청은 은행의 건전경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취득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음.
일 본	은행주식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으나, 공정거래법상 자본금 100억엔이상 또는 순자산액 300억엔이상인 비금융회사는 그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은행 등의 동일인 지분은 5%이내에서 적절히 분산되어 있음.
영 국	영란은행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 및 고결성(fitness and respectability)을 심사함. 상당주주(5~15%)가 되면 영란은행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 영란은행은 경영지배자가 은행의 건전경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경영지배자에 대한 거부통보를 할 수 있으며 영란은행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은 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여야 함.
캐 나 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원칙적으로 기발행공모주의 10%이내임. 대주주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Schedule Ⅱ)은 창립후 10년 이내에 10%한도가 준수되도록 주식소유를 분산하여야 함.
대 만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는 발행주식의 5%(특수관계인을 합하여서는 15%)이내로 제한되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탈리아	독금법에 의해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15%로 제한됨. 또한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를 초과하는 지분을 추가취득하거나,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주식매입을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 리 스	은행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스 웨 덴	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한정됨. 또한 10%, 20%, 40%, 50%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노르웨이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는 10%이내로 제한됨.
네덜란드	은행에 대해 5%를 초과하는 결의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대리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터 키	은행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주식거래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호 주	은행에 대한 10% 초과 지분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총독의 승인이 각각 필요함.
뉴질랜드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을 비은행소유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즉 소유주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출과 소유주의 은행 이사회에서의 대표권 등이 일정범위내로 제한됨.
아일랜드	은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장관의 승인도 함께 받아야 함.

4. 金融專業그룹所屬 非銀行子會社의 遂行可能業務

- 은행법(제27조 ①)상에는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 10%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회사를 은행의 子會社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ㅇ 또한 신탁계정을 통해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신탁업법 제15조 ②).

- 현재 銀行子會社의 업무취급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의 子會社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특정 금융기관의 경영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positive system 형식의 업무규제로 인해 주요 금융기관간의 상호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子會社 방식에 의해 타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에도 子會社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銀行子會社를 통한 여타업무의 겸영에 따른 은행경영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6차 은행법 개정시 (1991. 12) 은행과 子會社간에 일부 차단장치를 규정함.

  ㅇ 은행의 子會社관련 대출취급 제한 (은행법 제27조 ①)

    . 子會社에 대한 일정한도(금통위가 정함) 초과여신 금지
    . 子會社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및 子會社 주식취득을 위한 대출 금지
    . 子會社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지 (단,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

  ㅇ 은행과 子會社간의 인적 교류 제한 (은행법 제28조 ②)

    . 은행 임직원의 당해은행 子會社 임직원 겸직 금지 (단,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

-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에 따라 다양한 非銀行業務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경우 은행법상의 子會社 규정이외에 금융전업기업그룹 子會社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表 Ⅶ-3〉 國內 主要 金融機關의 子會社 保有 現況

구분	은행												증권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신탁	외환	신한	국민	산업	기업	주택	장기신용	대신	동서	동양	고려
은행	○	○	○	○	○	○	○	○	○	○	○	○				
증권	○		○	○			○		○			○	○	○	○	○
보험							○						○		○	○
단자			○				○								○	
종금						○			○							
투신	○	○	○	○	○											
리스	○	○	○	○	○	○	○	○	○	○	○	○				
카드	△	△	△	△	△	○		○				○				
신용금고	○	○			○		○	○		○	○					
개발금융								○	○	○			○			
부자자문	○	○	○	○		○					○	○	○	○	○	○
창업투자			○									○		○	○	
전산시스템	○	○	○	○	○		○	○		○					○	
선물중개			○												○	
팩토링										○						
채권관리		○														
경제연구소				○			○	○			○		○	○		○
신용평가									○							

○ : 출자지분이 10% 이상인 子會社
△ : 출자지분이 10% 이하의 단순 지분참여 회사

- 子會社의 업무범위, 母會社와 子會社간의 정보교환, 人的 物的 交流 규제기준 제정 필요

- 母會社와 子會社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전파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fire walls) 장치 구축

- 子會社에 대한 定義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은행법(제27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子會社로 정의하며, 은행이 타회사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關係會社로 정의함.

○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있거나, 최대주주이면서 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자기회사 자본금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회사를 支配會社로 규정함.

- 非銀行業務 進出方式 比較

○ 新경제 計劃상에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을 은행·증권·보험 등 3대 금융기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子會社 설립 등의 형식으로 겸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子會社 方式〉

- 이미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 방식에 의해 타업종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이 방식에 의해 육성하는데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母會社와 子會社간의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여하히 축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持株會社 方式〉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持株會社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음.

  *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나,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은행의 비금융기업 주식 보유가 허용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은행持株會社 설립 유인은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持株會社소속 기업들이 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모회사의 통일적인 지배하에서 자원을 최대한으로 공유할 수 있고, 持株會社로서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본을 보다 쉽게 조달하거나 금융그룹형성에 소요되는 자본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직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진출하거나 혹은 부진한 업무로부터 퇴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업종간 상호진출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持株會社 설립을 허용하기 보다는 子會社方式으로 非銀行業務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신규업무에 진출하는데 조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를 보다 빠른 속도로 수용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持株會社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상호소유 방식〉

- 금융기관간에 의결권부 주식을 상호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허용함으로써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임.

-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의 추가적인 자본유입없이도 금융전업기업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인없는 은행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상호소유에 대한 제한

  ㅇ 상법(제342조의 2)은 母會社가 子會社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子會社는 母會社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증권거래법(제1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은 증권사가 매매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상호지분이 1%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법인이 주식을 상호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表 Ⅶ-4〉 業種進出方式比較

방 식	장 점	단 점
- 상호진입방식		
o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금융기관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서로 진출하여 업무영역확대	o 상호진출비용 절약 가능 o 현행제도 연속성 유지로 큰 변화나 위험 회피 가능 o 다른 방식과 병행 가능 o 점진적 진출로 당사자들의 저항	o 부분적 개선으로 전체 발전 방향과의 조화문제 야기 o 각 업종간 이해조정문제 심화 o 이용자 편리 향상 기대 곤란 o 국제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결여 가능성
- 완전겸업방식		
o 각 금융기관에서 모든 종류의 금융업무 취급	o 범위의 경제이익, 신규 진입 용이로 경쟁촉진, 고객의 편의 증대에 기여 o 경영의 효율화(자금조달·운용의 일원화) o 다양한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	o 은행경영의 건전성 저해 가능성 증대 o 이익상충, 독과점 폐해 문제 우려
- 업종별자회사방식		
o 각 업종별 업무분야 규제는 현행대로 지속하되 각 금융기관에서 업종별로 자회사 설립	o 상품개발과 경쟁촉진으로 이용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우월 o 제도의 연속성으로 불확실성 위험 회피 가능 o 이익상충, 고객보호면에서 완전겸업방식보다 양호	o 일반관리부문 중복 o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회사의 추가설립 또는 폐쇄 곤란 o 지방은행이나 여타 기관에 불리하여 형평성에 문제 o 국제적 적합성 열위
- 포괄자회사방식		
o 각 업종별 업무분야 규제는 현행대로 지속하되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금융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	o 완전겸업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모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신뢰유지 가능	o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체계 o 특례법 제정에 따른 금융법 체계 복잡
- 지주회사방식		
o 각 업종별 업무분야 규제를 현행대로 지속하되 각 금융기관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등 지주회사에서 타업종 자회사를 설립	o 자회사방식보다 이익상충방지, 건전성 유지 및 예금자보호 면에서 양호 o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제공가능	o 금융재벌 형성에 따른 사회적 마찰 o 독과점 폐해 가능성 증대 o 자본력이 약한 금융기관은 지주회사설립 곤란
- 특별법 방식		
o 전업기관이 도매금융분야에서의 겸업은행을 특별법에 의거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	o 도매금융업무에서 대담한 업무규제완화 가능 o 이해상충문제가 적음 o 국제적 적합성 우수	o 도·소매 금융업무의 정확한 구분 곤란 o 이익상충 및 경영의 건전성 확보곤란 o 금융법 체계의 복잡화

5. 金融專業企業그룹 形成時 豫想되는 問題點과 對應方向

- 금융전업 금융기관의 등장은 해당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과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음.

- 3~4개의 금융전업기업그룹이 형성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集中度가 현 수준보다 다소 상승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 시장에서의 금융기관수나 현재의 시장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독과점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시장집중도의 상승에 따른 경쟁상의 불형평,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은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시정해 나가도록 함.

- 금융전업기업그룹은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지만, 금융그룹이 일단 형성되고 난 후 산업자본과의 비공식적 담합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을.

  ㅇ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기존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과의 사후 신용공여 약속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능력의 부족으로 대기업에 대한 신용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음.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전업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함.

    · 금융전업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전업은행과 담합하여 우회적으로 산업자본에 대한 여신을 공여하는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

  ㅇ 참고로 주요국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미국: 특정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금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 단, 뉴욕州 은행의 경우 환어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자기자본의 25%, 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35%까지로 제한함.

    일본: 은행법 제13조와 대장성 政令 제4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광의의 자기자본(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충당금중 대장대신이 정하는 것의 합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독일: 여신총액이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은 지체없이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승낙 또는 제공된 금액이 50,000DM이하인 경우는 그 금액이 책임자기자본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개별 거액여신은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거액여신의 총액은 금융기관 책임자기자본의 8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금융전업기업그룹이 초기의 자본투자를 단기간내에 회수하기 위해 고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ㅇ 금융전업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여 해당기관의 株價가 상승하거나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시장전반의 수익성이 약화될 경우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고 형성된 금융전업기업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ㅇ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금융전업기업의 내부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내부의 위험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經營公示義務를 확대하는 등의 건전경영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금융전업기업그룹내 한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그룹내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될 위험(contagion risks)을 무시할 수 없음.

  ㅇ 또한 은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公的 安全網이 금융그룹소속 비은행子會社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여 비은행子會社들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분참가를 제외한 금융전업기업그룹소속 기관들의 상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금융그룹으로 하여금 통합기준에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업종간 폐해차단장치인 방화벽(fire walls)을 구축하고 이것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그룹이 동 분야로 진출할 경우 금융전업기업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거나 위험도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임.

  ㅇ 해당업종의 감독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감독기관간에 금융전업 기업그룹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서로 다른 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존재함.

  ㅇ 내부자거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임.

  ㅇ 고객의 私的 情報를 유용하거나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그룹 소속회사들간에 Chinese Walls를 구축하도록 함.

  ㅇ 아울러 금융전업기업그룹이 금융의 겸업화를 가속화시킬 경우의 위험증대에 대비하여 금융고객보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參考文獻>

金東源, 「우리나라 銀行의 所有構造와 經營權 創出」, 『金融自律化와 銀行·企業間의 關係』, 韓國經濟研究院, 1993. 5., pp.23～38.

————, 「은행산업의 진입규제정책」, 한국금융연구원, 1992.10.

김인기·김장희, 「韓國 銀行産業의 規模와 範圍의 經濟性 研究」,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1.11.

양원근, 「우리나라 銀行의 合併에 관한 연구」, 『金融動向: 分析과 展望』, 한국금융연구원, 1993. 6., pp.1～27.

이우관, 「金融市場의 監視機能과 銀行-企業의 새로운 관계」, 한국경제연구원, 1993.

전홍택, 최장봉, 「開放化時代의 은행산업」, 『金融經濟研究』, 금융경제연구소, 1990. 6., pp.27～89.

정익준, 「銀行業의 大型化와 효율성」,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3.5., pp.20～42.

좌승희, 「金融의 專業 및 兼業化 이론」,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1년 봄, pp.167～187.

高橋豊治, 「銀行業における規模の經濟性について: 計測手法の展望」, 『一橋研究』 第10號 第4號, 1986.

谷田庄三, 『現代日本の銀行資本』, シネルヴァ書房, 1978.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六大企業集團』, 東洋經濟新報社, 1992.

堀内昭義, 「日本의 金融構造와 企業經營의 成果」, 『金融自律化와 銀行·企業間의 關係』, 韓國經濟研究院, 1993. 5., pp.1～13.

馬淵紀壽, 『アメリカの 銀行持株會社』, 東洋經濟新報社, 1987.

粕谷宗久, 「Economies of Scopeの理論と銀行業への適用」, 『金融研究』 第5卷 第3號, 1986.

松井和夫, 『米國金融資本の支配構造』, 文眞堂, 1986.

首藤恵, 「銀行業のScale and Scope Economies」, 『ファイナンス研究』 第4號, 1985.

Boyd, John H., and S.L. Graham, "The Profitability and Risk Effects of Allowing Bank Holding Companies to Merge with Other Financial Firms : A Simulation Study,"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2, Spring 1988, pp.3~20.

———, and R.Shawn Hewitt, "Bank holding company mergers with nonbank financial firms: Effects on the risk of fail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7, 1993, pp.43~63.

Corrigan, Gerald E., "The Banking-Commerce Controversy Revisited,"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Spring 1991.

Fischer, Gerald C., *The Modern Bank Holding Company : Development, Regulation, and Performance,* Temple University Press, PA, 1986.

Florence, Sergent, *Ownership Control and Success of Large Companies,* Sweet and Maxwell, London, 1961.

Gilligan, T.W., and M.L. Smirlock, "An Empirical Study of Joint Production and Scale Economies in Commercial Bank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8, 1984, pp.67~77.

———, and W. Marshall,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Multi-Product Banking Fir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3, 1984, pp.393~405.

Harm, C,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 Banks and Large German Firm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900,* May 1992.

Heggestad, A., "Riskiness of Investments in Nonbank Activities by Bank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27, Spring 1975, pp.219~23.

Jessee, M.A., "An Analysis of Risk-Taking Behavior in Bank Holding Compan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976.

———, and Steeven A. Seelig, *Bank Holding Companies and The Public Interest,* Lexington Books, Lexignton, MA, 1977.

Johnson, Hazel J., *The Banking Keiretsu,* Probus Publishing Company, Cambridge, England, 1993.

Koguchi, Kazuhiko, "Financial Conglomeration," in OECD, *Financial Conglomerates* (Paris, 1993), pp.7~62.

Kolari, J., and A.Z. Zardkoohi, *Bank Costs, Structure, and Performance,* Lexington, Mass : D.C. Heath, 1987.

Kotz, David M., *Bank Control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A, 1978.

Leech, Denni, "Ownership Concentration and the Theory of the Firm: A Simple Game-Theoretic Approach,"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87.

Litan, R.E., "Evaluating and Controlling the Risks of Financial Product Deregulation," *Yale Journal on Regulation* 3, Fall 1995, pp.1~52.

Mester, L.J., "A Multiproduct Cost Study of Savings and Loans," *Journal of Finance* 42, June 1987, pp.423~445.

Murray, J.D., and R.W. White,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in Multiproduct Financial Institution : a Study of British Columbia Credit Unions," *Journal of Finance* 38, 1983, pp.887~902.

Swary, I, and B. Topf, *Global Financial Deregulation : Commercial Banking at the Crossroads,*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Center, 1992.

〈附 錄〉

〈30代 大規模 企業集團의 出資金融機關에 대한 持分 現況〉

(單位: 億원, %)

그룹명	금융기관명	계열	상장	자본금	그룹의 지분 내역	주거래은행
현대	강원은행		o	682	현대중공업(13.1) 현대해상화재보험(7.8)	외환 제일 조흥
	국제종합금융		o	230	현대중공업(10.1) 현대건설(10.1)	
	현대증권	o	o	1117	현대자동차(14.3) 현대중공업(3.1) 현대정공(1.1)	
	현대화재해상보험		o	300	정몽준(21.7) 현대중공업(10.2) 정몽규(7.3)	
	현대투자자문		x	50	현대증권(65.0) 현대해상화재(10.0) 국제종합금융(10.0)	
	신한은행			5160	현대증권(3.2)	
	제일은행			6500	현대(3.6)	
	한일은행	x	o	6600	현대(2.2)	
	서울신탁은행			6500	아산사회복지재단(1.6)	
	대구은행			1650	현대증권(1.1)	
삼성	삼성생명보험		x	930	신세계(14.5) 제일제당(11.5) 이건희(10.0) 삼성미술문화재단(5)5)	한일 제일
	삼성증권		o	500	삼성생명(10.0) 제일모직(3.2)	
	안국화재해상보험		o	128	손복남(12.3) 손경식(1.9)	
	삼성신용카드	o	x	800	삼성전기(27.4) 삼성전자(52.6)	
	삼성경제연구소		x	20	삼성전자(30.0)	
	삼성투자자문		x	50	삼성생명(100)	
	장기신용은행			1720	삼성생명(7.0)	
	상업은행			6500	삼성생명(5.6) 안국화재(1.9)	
	조흥은행			6500	삼성생명(5.6)	
	신한은행			5160	삼성생명(1.06)	
	제일은행			6500	삼성생명(5.3)	
	한일은행			6600	삼성생명(5.0)	
	서울신탁은행			6500	삼성생명(3.4)	
	하나은행	x	o	816	삼성(4.9)	
	한미은행			1200	삼성(5.3)	
	대구은행			1650	삼성(7.8)	
	경기은행			1502	삼성생명(1.0)	
	동양투자금융			450	삼성생명(8.8)	
	한일증권			725	삼성생명(9.5)	
	대한재보험			240	삼성생명(2.9)	
대우	대우증권	o	o	2907	대우전자(6.3)	제일
	대우경제연구소		x	35	대우증권(71.4)	
	대우투자자문		x	50	대우증권(99.9)	
	한미은행			1200	대우(5.6)	
	신한은행	x	o	5160	대우증권(3.6)	
	강원은행			682	대우증권(1.3)	
	대한교육보험			686	대우(24.0)	
럭키 금성	럭키증권		o	2880	럭키(6.5) 럭키개발(5.5)	제일 조흥 농협
	럭키화재해상보험		o	217	구본무(長男)외1(10.1)	
	부민상호신용금고		x	20	부산투자금융(19.5)	
	부산투자금융	o	o	150	럭키(9.0) 럭키금성상사(8.2)	
	LG신용카드		x	558	럭키개발(8.6)	
	럭키금성경제연구소		x	30	럭키투자자문(99.9)	
	럭키투자자문		x	50	럭키증권(99.9)	
	신한은행			5160	럭키증권(2.6)	
	제일은행	x	o	6500	럭키금성(3.9)	
	한일은행			6600	럭키금성(3.4)	
	보람은행			1104	럭키금성(9.6)	
선경	선경증권		o	930	최종현(15.2)	상업
	선경경제연구소	o	x	6	선경증권(99.9)	
	선경투자자문		x	50	선경증권(100)	
	경기은행	o	o	1502	선경(4.2)	
한진	동양화재해상보험		o	165	조중훈(9.1) 조정호(4.2)	한일 한일
	한불종합금융	o	x	308	한진(31.9)	
	한진투자증권		o	720	조양호외(41.0) 한일개발(5.6) 대한항공(5.5) 한국공항(1.4)	
	한일은행			6600	한진(1.0)	
	하나은행	x	o	816	한진(1.8)	
	경기은행			1502	한진(7.7)	

그룹명	금융기관명	계열	상장	자본금	그룹의 지분 내역	주거래은행
쌍용	고려화재해상보험	o	o	134	김석원(롯男)(13.7)	한일
	쌍용투자증권		o	1129	쌍용양회공업(24.9) 쌍용중공업(1.4) 쌍용엔지니어링(0.2)	조흥
	쌍용정보통신		x	15	쌍용중공(98.0)	
	쌍용투자금융		x	50	쌍용중공(99.9)	
	한불종합금융	x	x	308	쌍용(1.9)	
	조흥은행		o	6500	쌍용(2.1)	
	강원은행		o	682	쌍용투자증권(1.4)	
기아	아신창업투자금융	o	x	100	아세아자동차(25.0)	
	기아경제연구소		x	10	아세아자동차(50.0) 기아정기(20.0)	
한국화약	삼희투자금융	o	o	300	김승연(3.5)	한일
	제일증권		o	845	김승영(11.3) 경인여너지(4.6) 한국화학(4.3)	조흥
	제일화재해상보험		o	46	김영희(롯女)(14.2) 이동곤(사위)(4.3)	
	제일경제연구소		x	5	경인여너지(100)	
	제일투자자문		x	50	제일증권(99.9)	
	충청은행	x	o	930	제일증권(10.8)	
롯데	부산은행	o	o	1210	롯데(25.6) 신격호(5.5) 롯데제과(5.4) 삼남상학회(7.7)	
	부산리스		x	250	부산은행(34.6)	
	부은상호신용금고		x	56	부산은행(92.7)	
	제일투자금융	x	o	500	신격호(1.0) 삼남장학회(2.1)	
금호	박주투자금융	x	o	100	금호(6.6) 박주고속(4.3) 금호석유화학(3.8)	조흥
	박주은행			1430	금호(8.7)	
대림	서울증권	o	o	906	대림산업외(24.6) 이부용(次男)(6.1) 이준용(롯男)(1.3)	한일
	대림상호신용금고		x	70		
	한일은행	x	o	5600	대림(4.2)	
두산	두산창업투자	o	x	50	두산기계(20.0)	
	보람은행	x	o	1104	두산(8.9)	
동아건설	동아생명보험	o	x	60	최원석(52.8) 공영토건(16.7) 동아종합개발(12.2)동문국제운송(5.0) 대한통운여행사(4.5)	
	동아증권		o	500	최원석(11.9) 최은정(妹)(4.8) 공산학원(18.5)	상업
	서울신탁은행	x	o	6500	동아건설(1.5)	
	전북은행		o	1023	동아생명보험(1.1)	
한일	부국증권	o	o	541	김중건(次男)(13.1) 김중광(三男) 경남모직(7.2)	한일
	신라상호신용금고		x	15	한일투자금융(51.0)	부산
	한일투자금융		o	150	한일합섬(30.2)	
호성	경남은행	x	o	1150	호성(8.3)	
동국제강	신중앙상호신용금고	o	x	90	중앙투자금융(96.1)	제일
	중앙투자금융		o	400	동국산업(13.4)	
	서울신탁은행	x	o	6500	동국제강(1.5)	
	부산은행			1210	동국제강(3.9)	
한라	한라창업투자	o	x	100	정몽헌(12.0)	
동양	동양버너리르 생명보험	o	x	120	동양시멘트(51.0)	상업
	동양선물		x	22	동양시멘트(51.0) 동양투자금융(10.0)	한일
	동양증권		o	1202	동양시멘트(24.9)	
	동양창업투자		x	200	동양시멘트(100)	
	동양투자금융		o	450	동양시멘트(15.5)	
	동양투자자문		x	50	동양증권(99.9)	
	대우증권	x	o	2907	동양투자금융(5.0)	
코오롱	보람은행	x	o	1104	코오롱(8.9)	
	대구은행			1650	코오롱(3.5)	

그룹명	금융기관명	계열	상장	자본금	그룹의 지분 내역	주거래은행
진로	우신투자자문	o	x	20	진로(53.0)	
	우신상호신용금고					
동부	동부상호신용금고		x	100	동부증권(29.2)	
	동부에르네 생명보험		x	200		
	동부창업투자	o	x	50	동부제강(100.0)	
	동부증권		o	500	동부제강(9.8) 한국자동차보험(8.0) 김준기(6.2)	
	한국자동차보험		o	200	동부화학(6.2) 김준기(15.8) 김남호(長男) (14.0)	
극동건설	극동상호신용금고		x	65		
	동서증권	o	o	2872	극동건설(7.7)	
	동서창업투자		x	50	동서증권(60.0)	
	동서경제연구소		x	20	동서증권(99.5)	한일
	동서투자자문		x	50	동서증권(99.0)	
벽산	벽산창업투자	o	x	50		
	벽산상호신용금고			3	벽산개발(45.0)	
미원	대한투자금융	o	o	450	미원식품(10.9) 미원(7.1)	
	대한창업투자		x	200	대한투자금융(65.0)	

註: 1)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지급보증제한대상으로 함(1993년 4월 1일 기준).
2)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삼미, 고합, 우성건설, 해태 그룹은 금융자회사가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가 없음.

資料: 1) 매일경제신문사, 『주간매경』, 1991. 7 ~ 10.
2) 대신경제연구소, 『상장회사투자가이드('93년 봄)』, 1993. 4.
3) 한국일보 9면, 1993. 4. 1.